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966-01

인권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제1권 연구결과보고서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966-01

인권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 제1권 연구결과보고서 -

제출문

국가인권위원회 귀하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연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12. 15.

연구수행기관 (사)인권정책연구소 (주)에듀니티랩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주식회사 에듀니티랩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김은희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교육실장

공동연구원 이명희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실장

김지우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배희은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최성윤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정인식 | 충남 인권교육 활동가모임 부플 활동가

이기택 | 주식회사 에듀니티랩 대표

백헌탁 | 주식회사 에듀니티랩 이사

임성희 | 주식회사 에듀니티랩 부설연구소 소장

한종선 | 주식회사 에듀니티랩 차장

김태선 | 주식회사 에듀니티랩 과장

반성현 | 주식회사 에듀니티랩 대리

연구보조원 강미선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사무국장

유지민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요약문

1. 연구 개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창립 이후 인권교육 과정 운영을 지속해서 확장해 왔음. 국가기관으로서 한국 사회 인권교육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더 적합한 인권교육 모델을 제시하여 본연의 인권증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한편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실행하는 인권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인권교육 실행을 지원해야 하는 책임까지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
- 이러한 제반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하드웨어 차원에서 인권교육원 설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하드웨어에 장착될 소프트웨어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체계적 개발에 대한 준비 역시 시급하고도 중요함.
-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과 목적 아래 인권교육원에서 운영할 프로그램과 기본교재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최종 산출물을 제시함.

1. 교육과정 운영 중장기 로드맵(1종)
2.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1종)
3. 프레임워크 기반 메타데이터 설계
4. 50종 모듈에 대한 교수설계
5. 기본 교재(4개 과정 50종 모듈)
6. 기초 데이터베이스 개발(1식)

2. 교육과정 운영 중장기 로드맵과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관련 자료 분석과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하여 인권 사회 실현을 위한 인권전문가 양성기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권교육 협력 지원기관, 인권교육 전문화를 위한 인권교육 연구기관이라는 인권교육원의 세 가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함.
- 또한 교육체계의 경우 기존의 공공/학교/시민의 인권교육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 인권 상황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국가 수준, 지역 수준, 기관/단체 수준의 체계로 재편하여 인권교육 주류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함.
- 이러한 인권교육원의 역할 기능과 교육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체계를 완성함.

요약문



※ 초록색 묶음 박스는 이 연구에서 과정개발이 진행된 부분 표시

인권교육원 운영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3. 프레임워크 기반 메타데이터 설계

-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인권교육원 개원 1차 연도에 필수적으로 운영할 12개 주요 과정을 선정하고 해당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함.
- 12개 과정별로 주요 교과목과 교과목을 구성하는 60분 내외 분량의 모듈을 구성함.
- 공통 모듈을 포함해 12개 과정에 대한 157개의 모듈이 개발되었고, 각각의 모듈은 해당 모듈의 교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개발하여 그 결과물을 이 연구보고서 제2권으로 편찬함.

요약문

| 1년차 운영 기본교육과정 목록안 |

1년 차 운영 기본 교육과정 목록안

- <인권직무자 역량강화 과정>
 - 지방정부
 - 인권기구 관계자(센터, 조사관, 인권위원 등)
 - 지자체 인권전담 공무원(교육, 정책 등)
 - 대학인권센터
 - 「기업과 인권」 업무자
- <인권리더십 과정>
 - 지방의회 의원
 -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 <교육가 역량강화 과정>
 - 사회복지 부문
 - 장애인 분야
 - 노인 분야
 - 아동 분야
 - 경찰 분야
 - 군 분야

4. 50종 모듈에 대한 교수설계

- 교육과정이 개발된 12개 과정 중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기업과 인권」 업무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장애인 분야),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노인 분야) 총 4개 과정의 공통 및 과정별 기본과목 모듈 45개 및 문화예술체험 활동 모듈 5개까지 총 50종 모듈에 대한 교수 설계를 진행함.

| 모듈 50종 목록 |

연번	구분	분야/주제	주제, 활동 및 과정명
공통			
1	공통 모듈1	인권의 이해	인권의 개념과 구조
2			‘모든 사람’과 인권의 역사
3			인권의 특성 - 인권은 나눌 수 있나
4			누가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가
5			국제 인권보장체계에는 무엇이 있나
6			국내 인권기구에는 무엇이 있나
7			지방정부 인권보장체계 이해
8			인권적 권리구제의 의미와 역할

요약문

연번	구분	분야/주제	주제, 활동 및 과정명
9			인권찾기 1 : 판단기준으로서의 인권 알기
10	공동 모듈2	문화 예술 체험 활동	영화로 참여하는 인권교육
11			도서로 참여하는 인권교육
12			당사자와 대화하는 인권교육
13			연극으로 참여하는 인권교육
14			놀이와 게임을 활용한 인권교육
인권직무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15	대학인 권센터 담당자 인권 역량 강화 과정		대학(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역할
16			인권기구로서 대학인권센터의 역할 모색
17			대학에서의 인권조사 절차의 이해
18			대학에서의 인권조사 방법의 이해
19			인권구제 사례 분석 및 실습
20			대학 인권 교육·홍보·증진사업 사례 공유
21			대학 인권 연구 및 제도·정책 사례 공유
22	「기업과 인권」 업무 담당자 인권 역량 강화 과정		「기업과 인권」의 등장 배경과 개념
2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이해하기
24			「기업과 인권」 사례 속 인권 찾기
25			인권실사의 이해
26			인권영향평가 실무역량 키우기
27			우리 기관 인권 이슈 찾기
28			우리 기관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적용
29			「기업과 인권」 사례 공유
30			「기업과 인권」에 대한 Q & A
31	사회 복지 공무원 인권 역량 강화 과정	공통	사회복지의 인권적 의미
32			사회복지와 지방정부
33			사회복지 관련 사회권의 쟁점
34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
35		장애인 분야	시민권과 장애인의 지위
36			장애 패러다임의 전환
37			인권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변화
38			장애인 인권 쟁점토론(모둠토론)

요약문

연번	구분	분야/주제	주제, 활동 및 과정명	
39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40			사례로 보는 장애인권리협약 1	
41			사례로 보는 장애인권리협약 2	
42			내 업무에 장애인권리협약 적용하기	
43		노인 분야		노년기 인권의 이해
44				노인인권 보장의 원칙
45				노인인권 보장의 선사례
46				노인인권 쟁점토의
47				돌봄권의 의미
48				노인 돌봄의 문제와 대안
49	노인 돌봄정책의 방향성			
50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로 노인인권 보장 업무 점검하기			

5. 기본 교재(4개 과정 50종 모듈)

- 앞의 50종의 모듈 선정 시 전체 공통 콘텐츠 및 활동과 주요 과정별 고유 모듈을 추출하여 1~2종의 기본교재를 편찬하는 것이 본래 과업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원 운영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래 4개 과정과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의 이해와 문화예술체험 활동 모듈을 포함하여 총 50종에 대한 교육 내용을 기본교재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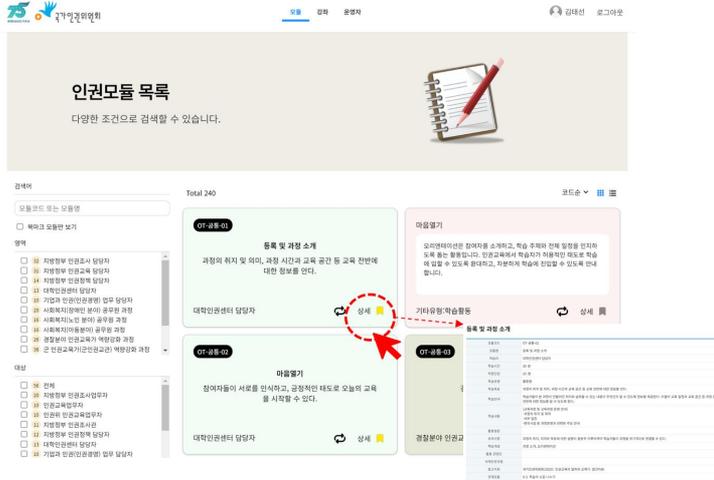
-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기업과 인권」 업무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장애인 분야
-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노인 분야

6. 기초 데이터베이스 개발(1식)

-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권교육 과정 모듈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권교육 활동에 필요한 기초 데이

요약문

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권교육 정보시스템 구현의 토대를 제공함.



| 교과목(모듈) 상세 화면 |

-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는 메타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모델링을 조합하여 체계적인 설계 기반으로 개발됨.
-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교육 데이터 및 강좌 관리(회원가입-인권 모듈 데이터-교육과정 만들기-운영)가 가능한 인권교육 정보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신발적으로 관리되었던 인권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의 기반을 마련함.

I

연구의 조사 개요

1

1. 연구·조사 개요	2
가. 연구의 배경과 의미	2
나. 연구의 필요성	4
다.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가. 연구의 범위와 내용	6
나. 연구의 방법	26

II

국내 인권교육 문헌 및 해외 사례

31

1. 국내 인권교육 문헌 조사	32
가. 국내 선행연구 분석	32
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콘텐츠 목록 조사	39
2. 국제 인권교육 기준	41
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41
나. 아시아·태평양 인권정보센터	42
다.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46

3. 해외 주요기관의 인권교육 과정 및 콘텐츠 48

- 가. 독일국가인권연구소 인권교육 48
- 나. 유럽평의회 인권교육 52
- 다. 유럽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 및 연구센터 인권교육 57
- 라. 스웨덴 라울발렌베리연구소 인권교육 62
- 마. 덴마크인권연구소 인권교육 65
- 바. 캐나다 에퀴타스 인권교육 68

III

연구조사 결과

71

1. 연구진행 프로세스 및 운영체계 72

- 가. 연구의 주요 프로세스 72
- 나. 연구조사 운영 체계 73

2. 기존 교육과정 점검 결과 77

- 가. 국가인권위원회 개설 과정 목록 분류 77
- 나. 주요 12개 과정 운영 현황과 의미 80

3.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설계를 위한 조사 134

- 가. 조사 개요 134
- 나. 전문가 자문단 회의 결과 135
- 다. 면접조사 결과 140
- 라. 현장참여조사 결과 148

4.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검증을 위한 조사 157

- 가. 조사 개요 157
- 나. 전문가 자문단 자문 주요 내용 157
- 다. 연구심의단 적합성조사 주요 내용 166
- 라. 교육내용 구성(메타데이터) 반영사항 179

IV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운영 중장기 로드맵 191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의 역할과 기능 192

- 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전과 인권교육원 운영 192
- 나. 인권교육원 역할과 기능 점검 193
- 다. 인권교육원 역할 기능 모델안 제시 195
- 라. 기타 199

2. 모듈형 교육과정 체계의 완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202

- 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개선 방향 202
- 나. 인권교육원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205
- 다. 과정 및 모듈 개발 로드맵 216

| 부록 | 국내 공공기관 교육원의 교육과정 체계 220

| 첨부 | 253

| 참고문헌 | 263

표 목차

〈표 1〉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본 구조	8
〈표 2〉 해외 주요인권(교육) 관련기관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사례	9
〈표 3〉 선정된 1년 차 공통 콘텐츠 및 활동과정 목록	10
〈표 4〉 메타데이터별 주요 사항	11
〈표 5〉 메타데이터 구성 예시	11
〈표 6〉 모듈 50종 목록	13
〈표 7〉 적합성 조사 개요	28
〈표 8〉 심층면접조사 개요	29
〈표 9〉 면접조사 개요	29
〈표 10〉 자문회의 및 간담회 조사 개요	30
〈표 11〉 교육대상별 콘텐츠 현황	39
〈표 12〉 주제분야별 콘텐츠 현황	40
〈표 13〉 12개 대상별 과정 도출 근거	47
〈표 14〉 참고자료 HELP 과정 목록	54
〈표 15〉 참고자료 과정 개괄	56
〈표 16〉 교육과정 구분 및 과정 특징	77
〈표 17〉 분야별 교육 대상	77
〈표 18〉 과정 개요 신구대조의 예시	79
〈표 19〉 2023년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과목 내역	82
〈표 20〉 2023년 지자체 인권조사 업무자 역량 강화 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87
〈표 21〉 2023년 지자체 인권조사 업무자 역량 강화 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91
〈표 22〉 지역인권기구 인권위원 인권리더십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94
〈표 23〉 지방의회 의원 인권리더십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97
〈표 24〉 「사회복지사업법」 인권교육 관련 주요 내용	100
〈표 25〉 사회복지 개별법률 내 인권교육 관련 규정	100

〈표 26〉 사회복지 인권역량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103
〈표 27〉 사회복지 인권리더십 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104
〈표 28〉 사회복지 인권교육가 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104
〈표 29〉 사회복지 인권역량 과정	105
〈표 30〉 사회복지 인권리더십 과정	105
〈표 31〉 사회복지 인권교육가 과정	106
〈표 32〉 군 인권교관 심화과정 교과 편성표-2023년	110
〈표 33〉 위촉강사 역량강화 교과 편성표-2023년	110
〈표 34〉 경찰 인권역량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114
〈표 35〉 경찰 내부 인권강사 인권역량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114
〈표 36〉 2023년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 과정 교과 편성안	122
〈표 37〉 공공기관 「기업과 인권」 담당 인권역량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129
〈표 38〉 공공기관 인권경영담당 인권감수성과정 주요 교과편성안	129
〈표 39〉 공공기관 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130
〈표 40〉 언론 인권감수성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132
〈표 41〉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설계를 위한 조사 개요	134
〈표 42〉 1년 차 운영 기본교육과정 목록안	136
〈표 43〉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검증을 위한 조사 개요	157
〈표 44〉 인권교육원 역할과 기능 점검을 위한 관계자 인터뷰 주요내용	193
〈표 4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202
〈표 46〉 기본교육의 교육 과정	224
〈표 47〉 기본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225
〈표 48〉 기본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계획	226
〈표 49〉 공직리더십 교육의 교육 과정	227
〈표 50〉 기본교육의 과정별 교육대상	228
〈표 51〉 국정비전·공직가치교육의 교육 과정	229
〈표 52〉 국정비전·공직가치교육의 과정별 교육대상	229

〈 표 53 〉 국정비전·공직가치교육의 과정별 교육계획	230
〈 표 54 〉 글로벌교육의 교육과정	230
〈 표 55 〉 글로벌교육의 과정별 교육대상	231
〈 표 56 〉 글로벌교육의 과정별 교육계획	232
〈 표 57 〉 보좌직원과정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234
〈 표 58 〉 전문교육의 일반과정과 심화과정	235
〈 표 59 〉 연수교육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교육계획	240

그림 목차

[그림 1]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05- 현재)	3
[그림 2]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설계 프로세스	7
[그림 3] 예시 특정직무군에 대한 프레임워크 및 교육체계	8
[그림 4] 예시 해외 과정을 참조한 모듈 구성 사례	9
[그림 5] 기초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조	16
[그림 6] 기초 데이터베이스 설계 플로우	17
[그림 7] 회원가입 화면	17
[그림 8] 교과목(모듈)리스트 화면	18
[그림 9] 교과목(모듈) 상세 화면	18
[그림 10] 교과목(모듈) 검색 기능	19
[그림 11] 교과목(모듈) 북마크 기능	20
[그림 12] 교육과정 만들기	21
[그림 13] 교육과정 만들기 PDF 출력 및 저장	21
[그림 14] 운영-회원관리 1	22
[그림 15] 운영-권한관리 2	22
[그림 16] 운영-모듈관리	23
[그림 17] 모듈형 교육과정의 구성체계	24
[그림 18]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연구(2016. 2006)	32
[그림 19] 인권의 이해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 요소	43
[그림 20] 독일국가인권연구소 모듈 기반 인권교육 학습자료	50
[그림 21] 설계·개발연구의 주요 흐름	72
[그림 22] 연구·조사 운영체계도	74
[그림 23] 국민권익위원회_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보호 방안	125
[그림 24] 지자체 인권조사관 학교과정 활동 흐름과 주요 내용	150
[그림 25] 인권교육원 역할과 기능 모델	195

[그림 26] 인권교육원 운영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205
[그림 27] 인권교육원 운영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207
[그림 28] 인권교육원 운영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_교육과정 구성체계	208
[그림 29] 인권교육원 운영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_교과영역과 교육구조 구성체계	210
[그림 30] 인권교육 내용 구성 기본 구조	211
[그림 31] 기본교재 5종 샘플 표지	217

I

연구의 조사
개요

I | 연구의 조사 개요

1 연구·조사 개요

가. 연구의 배경과 의미

1)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2011)의 가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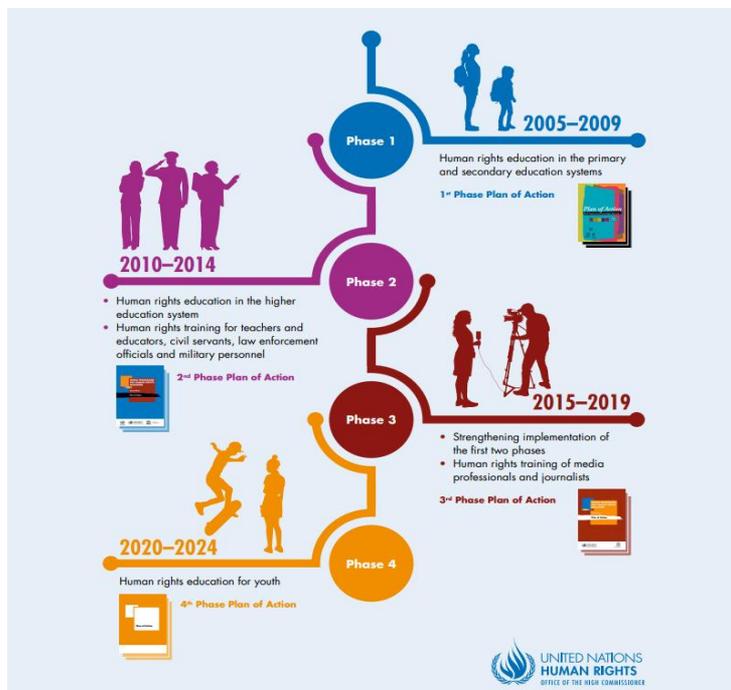
- 유엔 총회는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을 채택함.
- 이 선언은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학교 교육 기관을 포함한 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제도, 법령 등에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내용을 반영하라는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재천명함.
- 이 선언을 통해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인권협약 등 국제규범에 규정된 대로 사회의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교육은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모든 국가가 사람들의 인권교육 및 훈련에 대한 책무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
- 이 선언의 가치는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World Program on Human Rights Education)의 이행을 포함하여 국가는 정책의 입안, 집행 등의 전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교육과 학습의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국가단위에서 마련할 것을 권고한 2005년 세계정상회의(2005 World Summit)의 결과를 모든 국가에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인권교육 및 훈련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기여한 데 있음.

2)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의 이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이하 행동계획)은 국제적 수준에서부터 개별 국가의 지역 구석구석까지 협력과 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권교육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넓히고, 구체적인 실천의 틀을 제공하여 행동계획 이행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각 차수는 분절된 과제가 아니라 연속선상의 단계로 이행되고 있음.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

로그램 행동계획(2005-2009)에서의 실천 과제는 초·중등교육의 학교 시스템 내에 인권교육을 통합, 적용하는 것임.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단계의 중점 실천 과제는 고등교육을 위한 인권교육과 주요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 수행 주체로서 교사 및 교육자, 공무원, 법 집행관, 군인 등과 시민을 위한 인권 훈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임.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 제1차와 제2차 행동계획의 이행을 강화하고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 대상 인권훈련을 추가하여 실천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20-2024)은 인권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꾀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단계별 교육 목표와 교육활동 원칙하에 행동계획은 현재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차수 마다 행동계획의 중점 영역과 전략이 구체화하고 확장되면서 국가별 이행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그림 1]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05 - 현재)¹⁾

1)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education/training/infographic-wphre.pdf>

3)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화 가속화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모두 인권기본조례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는 공통으로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 공기업을 중심으로 인권 체계 운영이 의무화되면서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역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책정됨.
- 초·중등교육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교육청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확산하는 가운데, 2022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대학 내 인권교육 확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짐.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경우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이 포함될 뿐 아니라 개별법상 관계자에 대한 인권 관련 교육을 의무화함.
- 이외 경찰과 군도 내부 규정에 의하여 인권교육을 자체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

나. 연구의 필요성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한 국가 인권교육의 방향성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교육 방향성에 대해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22)를 통해 경찰 인권교육의 체계적 정비 및 전문성 강화를 피력하고, 주제 영역으로는 성소수자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또한 인권교육 제도화 및 체계구축과 관련하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부터 시민, 학교 교원, 공무원, 군 장병 인권교육 확대와 내실화를 권고하였고 이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시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단위에서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내실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인권교육의 의무화, 형식적 내용, 내용의 반복, 집단교육과 일회성 교육 등으로 인해 인권교육에 대한 피로도 증가로 인한 회의감이 발생하고 있었음.
- 이에 인권교육 제도화와 체계 마련을 권고하면서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의무화된 인권교육의 해소를 위해 질적 성장을 위한 종합적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있음. 구체적인 과제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의 제도화와 인권교육 전문인력 및 콘텐츠 내실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권교육의 질 향상, 학습자의 교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

는 모델 개발을 제안함(국가인권위원회, 2022).

2) 인권교육원 운영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정비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할 인권교육원 개원이 2025년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인권교육원의 출발은 지금의 한국 사회가 당면한 인권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의 인권교육으로 진전하는 중요한 계기이므로 인권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의 콘텐츠, 프로그램 등의 정비가 시급하고 중요함.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에 운영하던 인권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을 점검하여 인권교육원의 비전, 교육목표와 방향성에 따라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인권교육 확장에 사용될 콘텐츠 개발 필요

- 인권교육 현장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 관점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인권 콘텐츠 및 학습자에게 유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특히 사회 전반에서의 인권교육 제도화의 성과와 함께 마련된 제도를 제대로 채울 콘텐츠와 인권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교육 역량의 부족이라는 한계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개원할 인권교육원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인권교육원의 전 교육 과정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사회 각 영역의 인권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인권교육 기본교재 개발이 필요함.

다. 연구의 목적

1) 인권교육원의 중장기 교육과정 운영 방향 도출

- 인권교육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비전과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교육 제도화의 발전 정도에 따른 다음 단계로의 진입과 각 영역과 분야에서 갖는 인권교육의 요구와 필요를 점검하여 앞으로 대한민국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인권교육을 선도할 인권교육원의 중장기 교육과정 운영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임.
- 이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 운영체제의 주요 맥락과 교육의 현장성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도출하는 것임.

2) 인권교육원에 적용 가능한 모듈형 교육 콘텐츠 개발

- 인권교육원 개원 후 전 교육과정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권의 개념과 구조, 원칙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의 내실화와 학습자에게 유용하고 교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듈형 교육 콘텐츠의 개발
-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낸 인권교육 제도화의 성과와 함께 마련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인권교육의 확장을 위해 사회 각 영역과 분야의 인권교육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인권교육 기본교재의 개발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최종산출물 1 - 교육과정 운영 중장기 로드맵(1종)

가) 국내외 인권교육 상황 분석-수요 분석

-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제1차~4차)에서 제시하는 인권교육의 흐름과 한국 사회 인권 및 인권교육 제도화 지형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3년간 인권교육 과정 운영계획과 운영 결과 및 최근 한국 사회 인권교육의 제도화 자료 등을 통한 인권교육 지형 분석

※ 발주기관이 모듈 구체화 우선순위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지방정부 인권업무 담당자(인권교육, 인권정책, 인권조사 구분), 교육청 인권업무 담당자(인권교육, 인권정책, 인권조사 구분),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수석교사), 초·중·고 인권강사와 사회과 교사, 사회복지시설장, 대학인권센터 직원, 사회복지 공무원, 경찰, 군 및 「기업과 인권」 관련한 분야 등을 포함해 논의를 진행하였음(특히 1년 차 과정 선정 시).

나)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한 국가적 인권교육의 제도화

- 현 인권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인 가이드라인의 부재에 대한 심각성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의 목표와 수단,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방식, 교육 담당자 양성과 배치, 인권교육 체계 수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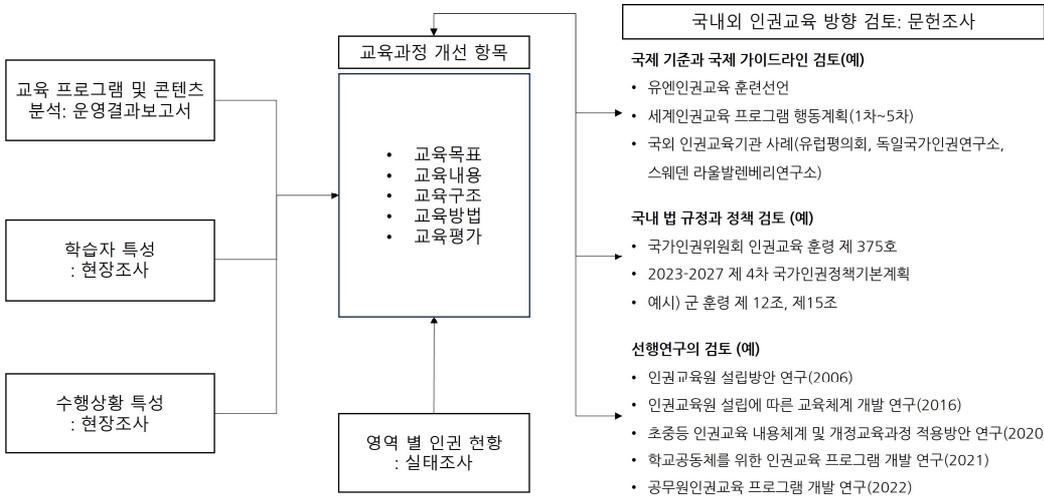
기초 가이드라인 수립과 주요 커리큘럼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필요함.

- 모듈 구체화의 우선순위 판단은 범용성 높은 주제, 직무유형별 공통 주제, 시급성, 인권교육 상황 등 본 과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세분화하여 중장기(5개년) 거버넌스²⁾ 및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함.

2) 최종산출물 2 -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1종)

가)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설계

- 시범운영을 통한 적합성 평가 등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번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1년 차 교육과정을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설계하며 1년 차 교육과정은 앞의 로드맵 설계 과정을 통해 도출함.



[그림 2]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설계 프로세스

- 추출된 개별 모듈 및 모듈 간 상호 관계(프레임워크)가 객관적 설득력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 문헌(국내외)을 광범위하게 분석-종합하고, 전문가(교육학, 교육공학, 인권 분야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검증 단계를 진행함.
- 각 모듈은 정기적인 내용 점검을 통해 폐기, 수정, 추가, 세분화 등 지속해서 변화되므로, 이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프레임워크 설계가 필수적임.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김은희 외, 2022)에서 제시한 직무자 인권교육 설계

2) 정책, 예산, 집행

의 기본구조를 참조하여 향후 인권교육원의 직무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설계 구조를 확정짓는 논의 과정을 진행함.

<표 1>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본 구조

구분	인권의 이론		인권의 실제
과목	인권의 이해	직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	인권의 적용과 훈련
목적	인권의 개념과 구조 이해	직무의 사회적 역할을 인권적으로 이해	인권적 분석과 대안 모색 역량 훈련
교수학습전략	지식과 사고의 틀 구성	책임과 권한 부여	실습을 통한 내재화
내용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과 구조 인권의 특성 인권의 역사 인권보장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의 인권적 해석 직무의 인권적 역할 직무 관련 인권 규범 직무 관련 인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 분석 문화콘텐츠 활용 인권영향평가 인권보장의 환류체계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김은희 외, 2022)



[그림 3] | 예시 | 특정직무군에 대한 프레임워크 및 교육체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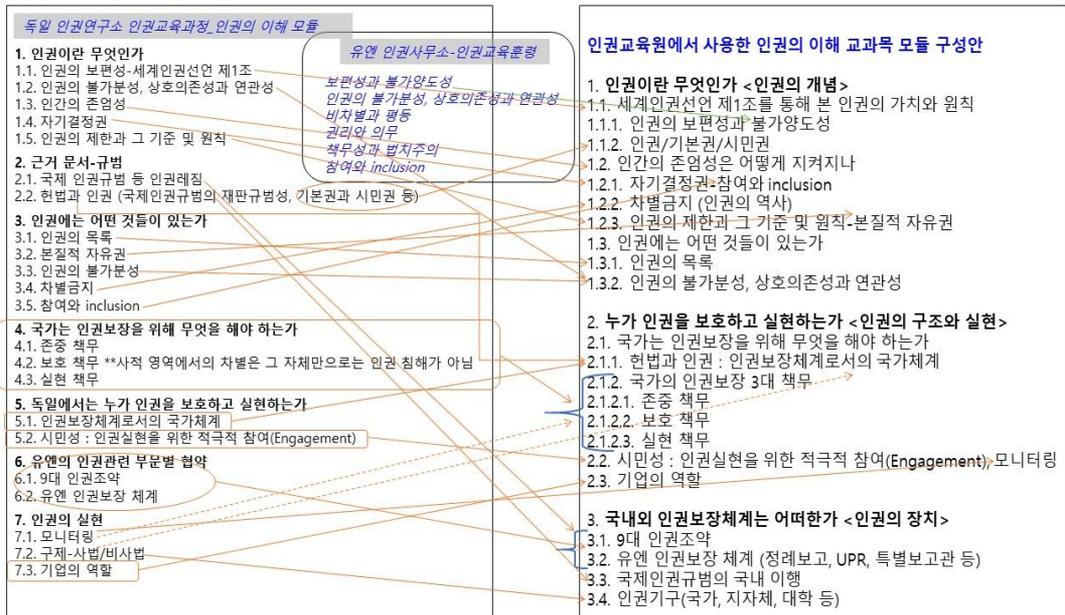
나) 해외 인권교육 프로그램 검증과 활용

- 국외 인권교육 기관 사례를 검토하여 인권교육원 프로그램 설계에 참조함.

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교육체계를 참고하여 특정 집단의 프레임워크를 예시화함.

〈표 2〉 해외 주요인권(교육) 관련기관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사례

해외 인권(교육)기관	교육과정/교육자료/교육프로그램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법률 전문가를 위한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for Legal Professionals, HELP) 온라인 인권교육 플랫폼 운영
독일국가인권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DIMR)	모듈기반 '청소년과 성인 인권교육을 위한 학습자료'(Materialien für die Bildungsarbeit mit Jugendlichen und Erwachsenen)
스웨덴 라울발레베리 인권과 인도주의법 연구소(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RWI)	리더십 과정 운영
유럽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과 연구센터(Europäisches Trainings- und Forschungszentrum für Menschenrechte und Demokratie, ETC)	공공분야 직무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캐나다 에퀴타스(equitas)	'인권옹호자 교육자 중심의 글로벌 범위의 인권교육'
덴마크국가인권연구소(Institute for Menneskerettigheder,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DIHR)	국가인권기구 직무자 과정 운영



[그림 4] | 예시 | 해외 과정을 참조한 모듈 구성 사례

3) 최종산출물 3 - 프레임워크 기반 메타데이터 설계(1년 차 과정)

가) 1년 차 공통 콘텐츠 및 활동과 과정 목록 선정

- 최근 3년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분석, 국내외 인권교육 상황 분석, 자문회의 등을 진행하고 발주부서와 다음과 같은 1년 차 과정을 확정하여 개발하였음.

〈표 3〉 선정된 1년 차 공통 콘텐츠 및 활동과정 목록

I. 공통	
1	인권의 이해
2	문화예술체험 활동
II. 인권직무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1	지방정부 인권조사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2	지방정부 인권교육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3	지방정부 인권정책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4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5	「기업과 인권」 업무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6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장애인 분야
7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노인 분야
8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아동 분야
III. 인권교육가 역량강화 과정	
1	군 인권교육가(군인권교관) 역량강화 과정
2	경찰분야 인권교육가 역량강화 과정
IV. 인권리더십 과정	
1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
2	지방의회 의원 인권리더십 과정

나) 설계 분야 등 확정과 교과목-모듈-메타데이터 개발

- 확정된 분야 과정을 교과목-모듈로 개발, 모듈별 메타데이터로 구성함.

〈표 4〉 메타데이터별 주요 사항

연번	구성요소	내용
1	모듈 코드	모듈의 고유번호
2	모듈명	모듈의 제목 또는 주제
3	학습자	학습 대상의 구분
4	학습 시간	학습 시간, 분단위
5	적정 인원	적정 인원
6	학습 방법	강의, 토의 및 발표, 사례 분석, 문화콘텐츠 등 주요 학습 방법
7	학습 목표	구체적인 학습목표 진술
8	학습 안내	학습의 주안점과 학습의 방향을 제시
9	학습 내용	주요 학습 내용을 명세화하여 제시
10	활용 질문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질문 제시
11	유의 사항	강의 및 모듈 운영 시 유의할 사항
12	핵심 개념	모듈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인권 개념을 키워드로 제시
13	활용 콘텐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영화, 사이버강의, 유튜브 등 목록 제공
14	국제인권규범	관련 국제인권규범 및 문서 등 제시
15	참고자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 교안, 단행본 등을 제시
16	연계 모듈	유사성, 연계성이 높은 모듈 제시

〈표 5〉 메타데이터 구성 예시

연번	구성요소	내용
1	모듈 코드	
2	모듈명	누가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가
3	학습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통 <input type="checkbox"/> 직무별 대상:
4	학습 시간	60분
5	적정 인원	25명
6	학습 유형	강의형
7	학습 목표	인권보장의무자로서의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성 역할을 이해한다.
8	학습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가적 권리인 인권에 있어 궁극적인 실행의무자로서의 국가 체계와 국가(와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3대 책무를 이해한다. •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를 통하여 인권 실현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인식한다. • 「기업과 인권」(BHR)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이해한다.

연번	구성요소	내용
9	학습 내용	(1) 인권 실현의 책임과 역할 : 국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역할 이해 (2) 인권보장체계로서의 국가체계 : 헌법 제10조 -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3대 책무 : 존중-보호(예방적/사후구제적)-실현 - 법치주의와 인권(본질적 자유권, 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 인권실현을 위한 시민의 역할 : 능동적 시민성(Engagement), 민주주의와 인권 (4) 인권실현을 위한 기업의 책임 - 기업("함께 빵을 나누다")의 개념 확인
10	활용 질문	·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일까? · 총간소음으로 인한 인권적 피해에 있어 인권침해자는 누구일까? · '국민의 법치의식이 부족해 문제다'라는 말은 왜 문제일까? · 법보다 인권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무엇이라 답해야 할까? · 기업은 이윤 추구를 본질로 한다는 것은 진실일까, 아닐까?
11	유의 사항	· 인권의 구조에 기반해 인권보장 의무의 방향이 국가체제로 향한다는 것과 국가체계가 인권보장에 맞도록 구성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시민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 두 관점의 연계와 균형이 각 내용마다 잘 표현되도록 한다.
12	핵심 개념	인권의 구조, 인권의 작동, 법치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기업과 인권, 3대 책무
13	활용 콘텐츠	영상 EBS 지식채널e <헌법 제 1조(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14	국제 인권규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UNGPs)
15	참고자료	· 조효제(2018). 인권을 찾아서: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병남(2022). 경영은 사람이다. 경기도: 김영사. · 샌드라 프레드먼(2009). 인권의 대전환(Human Rights Transformed). 조효제 저/조효제 역. 서울: 교양인.
16	연계 모듈	시스템 검색 기능으로 제공

4) 최종산출물 4 - 50종의 모듈에 대한 교수설계

가) 모듈에 대한 교육 내용 구성

- 연구 수행 과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모듈형 교육과정(50종)을 선정하여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내용 구체화 정도는 분량상으로는 한 모듈당 5-10쪽 내외(약 1시간 분량), 내용상으로는 제시된 핵심적인 인권적 관점과 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숙지하면 바로 교안 구성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결과물은 인권교육 기획자와 강의자가 바로 인권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특히 기획자는 과정 설계 시 강사에게 교육 내용 구성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여 전체 과정이 목표하는 인권교육 내용 체계의 최소한을 담보하게 하며, 향후 평가 지표 구성과 연계하여 학습의 효과성 확인에 도움이 되고자 함.

나) 모듈형 교육과정 분야 선정

- 인권교육원 1차 연도에 진행할 과정의 내용 중 전체에 공통으로 들어갈 모듈(예: 인권의 이해-개념과 구조, 인권의 역사, 차별과 인권 등)에 대해서는 범용성이 높기도 하고, 해당 모듈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후 진행될 교육 내용의 체계가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함.
- 다음 단계로는, 현재 발주처가 제시한 기준상 1차 연도에 진행할 과정 중 다수가 직무자 인권교육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직무 유형별 공통되는 모듈에 대한 내용 구체화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한 선정이 필요함. 예를 들어 많은 분야에서 인권기구와 인권조사의 역할 등 인권제도에 대한 혼란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 사회 인권 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인권교육의 시급성이 있는 분야로 판단함.
- 이외 해당 분야 인권교육 상황(자체 역량 정도 등)과 의지 등에 비추어 활용도가 높은 분야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발주처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50종을 선정함.

〈표 6〉 모듈 50종 목록

연번	구분	분야/주제	주제, 활동 및 과정명
공통			
1	공통 모듈1	인권의 이해	인권의 개념과 구조
2			'모든 사람'과 인권의 역사
3			인권의 특성 - 인권은 나눌 수 있나
4			누가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가
5			국제 인권보장체계에는 무엇이 있나
6			국내 인권기구에는 무엇이 있나
7			지방정부 인권보장체계 이해

연번	구분	분야/주제	주제, 활동 및 과정명
8	공동 모듈2	문화 예술 체험 활동	인권적 권리구제의 의미와 역할
9			인권찾기 1 : 판단기준으로서의 인권 알기
10			영화로 참여하는 인권교육
11			도서로 참여하는 인권교육
12			당사자와 대화하는 인권교육
13			연극으로 참여하는 인권교육
14			놀이와 게임을 활용한 인권교육
인권직무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15	대학인 권센터 담당자	인권 역량 강화 과정	대학(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역할
16			인권기구로서 대학인권센터의 역할 모색
17			대학에서의 인권조사 절차의 이해
18			대학에서의 인권조사 방법의 이해
19			인권구제 사례 분석 및 실습
20			대학 인권 교육·홍보·증진사업 사례 공유
21			대학 인권 연구 및 제도·정책 사례 공유
22	「기업과 인권」 업무 담당자	인권 역량 강화 과정	「기업과 인권」의 등장 배경과 개념
2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이해하기
24			「기업과 인권」 사례 속 인권 찾기
25			인권실사의 이해
26			인권영향평가 실무역량 키우기
27			우리 기관 인권 이슈 찾기
28			우리 기관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적용
29			「기업과 인권」 사례 공유
30			「기업과 인권」에 대한 Q & A
31	사회 복지 공무원	공동	사회복지의 인권적 의미
32			사회복지와 지방정부
33			사회복지 관련 사회권의 쟁점
34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
35		장애인 분야	시민권과 장애인의 지위
36			장애 패러다임의 전환
37			인권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변화

연번	구분	분야/주제	주제, 활동 및 과정명
38			장애인 인권 쟁점토론(모둠토론)
39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40			사례로 보는 장애인권리협약 1
41			사례로 보는 장애인권리협약 2
42			내 업무에 장애인권리협약 적용하기
43		노인 분야	노년기 인권의 이해
44			노인 인권 보장의 원칙
45			노인 인권 보장의 선사례
46			노인 인권 쟁점토의
47			돌봄권의 의미
48		노인 돌봄의 문제와 대안	
49		노인 돌봄정책의 방향성	
50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로 노인 인권 보장 업무 점검하기	

5) 최종산출물 5 - 기본 교재(4개 과정 50종 모듈)

가) 기본 교재 편찬 방향

- 앞의 50종의 모듈 선정 시 전체 공통 콘텐츠 및 활동과 주요 과정별 고유 모듈을 추출하여 1~2종의 기본교재를 편찬하는 것이 본래 과업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래 4개 과정의 50종 모듈의 내용을 기본 교재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기업과 인권」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장애인 분야
-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노인 분야

나) 기본 교재 주요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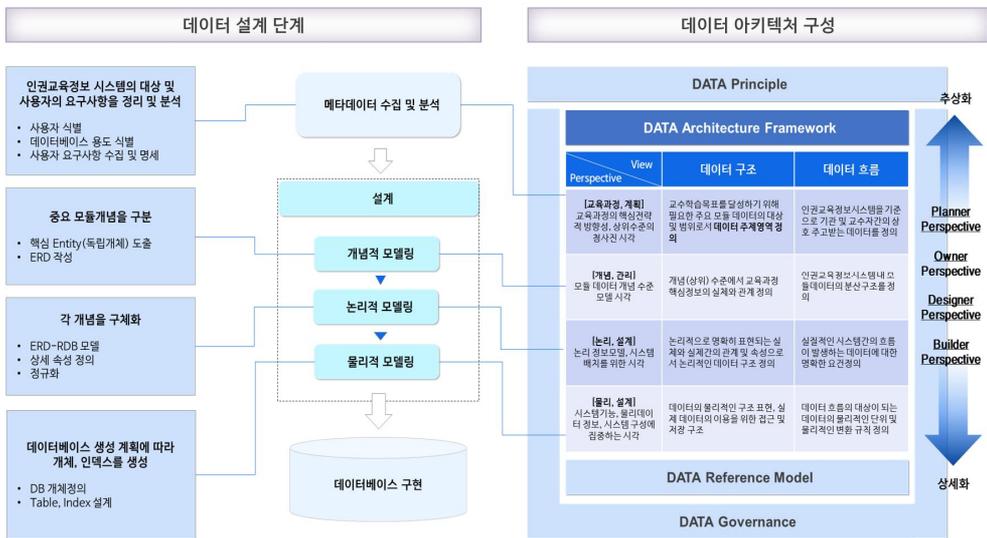
- 기본 교재는 학습 안내, 학습 목표를 시작으로 본문은 학습 내용, 사례토론, 필수 개념 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용질문, 유의 사항, 읽을 거리, 참고문헌 등 학습에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6) 최종산출물 6 - 인권교육 기초 데이터베이스 개발(1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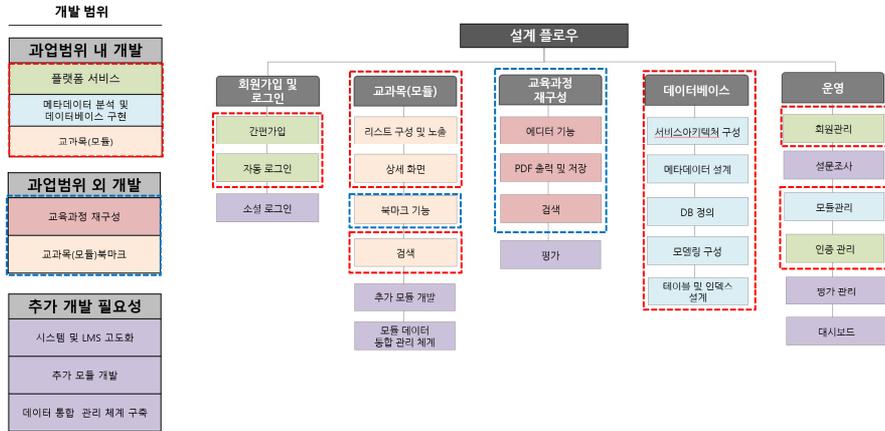
가) 인권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 본 과업을 통해 도출된 인권교육과정 모듈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권교육 활동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권교육 정보시스템 구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음.
-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는 메타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모델링을 조합하여 체계적인 설계 기반으로 개발됨.



[그림 5] 기초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조

-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교육 데이터 및 강좌 관리(회원가입-인권 모듈 데이터-교육과정 만들기-운영)가 가능한 인권교육 정보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산발적으로 관리되었던 인권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의 기반이 마련됨.



[그림 6] 기초 데이터베이스 설계 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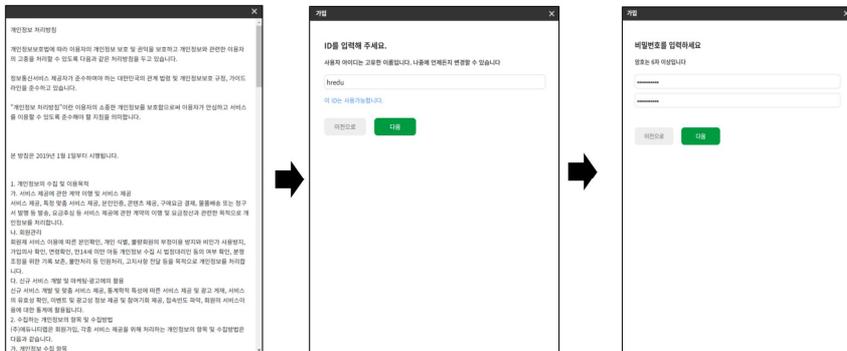
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정보시스템

● 설치형 플랫폼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리 및 보안 이슈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설치형 플랫폼으로 제공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가입 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 프레임 구성
- 현재는 기본적인 개인정보(ID/PW)로만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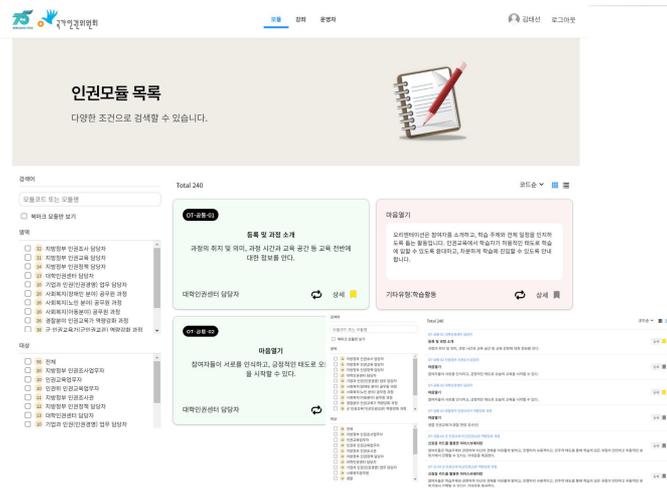
[그림 7] 회원가입 화면

● 교과목(모듈)리스트

- 본 과업에서는 총 150개의 모듈데이터가 주제별, 직무별, 과정별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며, 특히 50개의 모듈은 실질적 활동 내용까지 탑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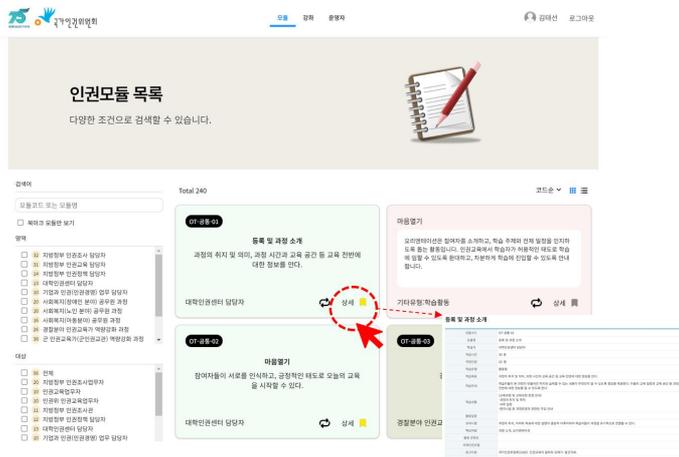
- 모듈데이터는 Grid System(그리드 시스템) 및 Table 형태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UI&UX 편의성을 높이도록 구성함.
- 카드의 색깔은 직무 데이터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여 가독성을 높임.



[그림 8] 교과목(모듈)리스트 화면

● 교과목(모듈) 상세화면

- 모듈데이터의 상세화면을 클릭하면 해당 모듈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세 내용에는 학습유형, 학습목표, 학습안내, 학습내용, 활용 질문 등이 보여짐.



[그림 9] 교과목(모듈) 상세 화면

● 교과목(모듈) 검색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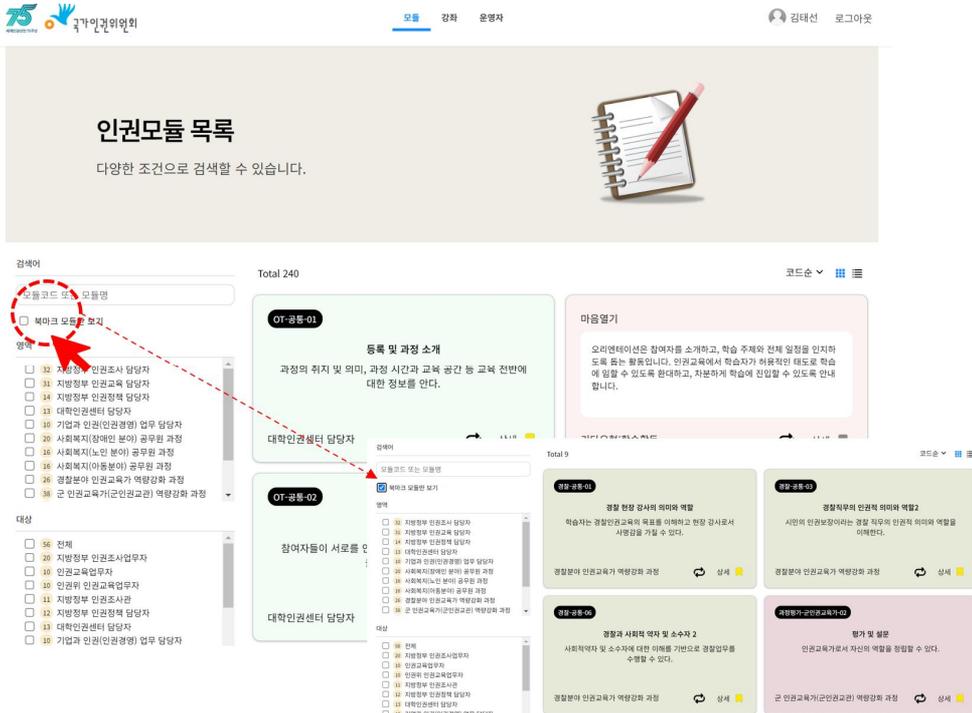
- 사용자는 검색을 통해 주제별로 모듈을 모아서 확인할 수 있음.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라이크 검색기능을 구성하여 일부 단어만 입력하여도 해당 단어가 포함된 모듈데이터의 결과값이 보여지게 됨.
- 영역, 대상, 교육방법, 규범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분류하여 사용자는 해당 데이터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0] 교과목(모듈) 검색 기능

● 교과목(모듈) 북마크 기능(과업 외 개별)

- 각 모듈 데이터마다 북마크 기능이 설정되어 있으며, 북마크 추가 및 해제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관심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관리 할 수 있음.
- 이러한 개별 모듈데이터의 북마크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My Archive(개인 아카이브)가 강화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그림 11] 교과목(모듈) 복마크 기능

● 교육과정 만들기(과업 외 개발)

- 사용자가 모듈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인권강의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교육 과정 만들기 기능을 추가함.
- 교육과정 설계는 에디터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하고, 검색을 통해 빠르게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구조임.
- 사용자가 구성한 교육과정 작성이 완료되면 웹 PDF 기능을 통해 PDF로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여러 모듈데이터를 병합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에도 각 모듈데이터마다 PDF 출력 및 저장 기능이 수록되어 있어 상세한 학습을 통한 교육구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
- 향후 추가적 개발을 통해 인권교육 강사들 간의 교육과정이 공유된다면 인권교육의 다양성과 교육 효과성이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함.

[그림 12] 교육과정 만들기

포인트 PDF 저장하려면 프린트방향을 PDF로 하시면 됩니다.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기초과정

김태선 © 2023-12-12

과정명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기초과정					
과정소개	인간기구로서 대학인권센터의 역할을 모색하여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안보체계의 대학인권센터의 역할을 생략해볼 수 있다					
교육목표	인간기구로서 학내와 지역사회에서 대학인권센터의 역할을 이해하고 업무의 방향을 정리한다.					
교육대상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교육구조						
교육시간						
교육인원	40 명					
교육방법	교육원 직접 운영					
운영형태						
교육과정						
	구분	번호	교과목	시간	순번	모듈수
	1강	1	오리엔테이션	1		0
	2강	2	인권의 이해 1	2	2-1	2
	3강	3	인권의 적용과 문헌	2	2-2	2
	4강	4	토론학습	2	3-1, 3-2	1
운영시 고려할 점	담당자만 모집					

교육과정 모듈 구성

일자	번호	번호	교과목	시간	순번	모듈	모듈상세
1	1강	1	오리엔테이션	2	2-1	인권의 개념과 구조	상세
		2	인간기구로서 대학인권센터의 역할 모색		상세		
2	3강	3	인권의 적용과 문헌	2	3-1	대학에서의 인권조사 절차의 이해	상세
					3-2	'모든 사람'과 인권의 역사	상세
3	4강	4	토론학습	2	4-1	워크숍 형태 인권교육 진행: 논의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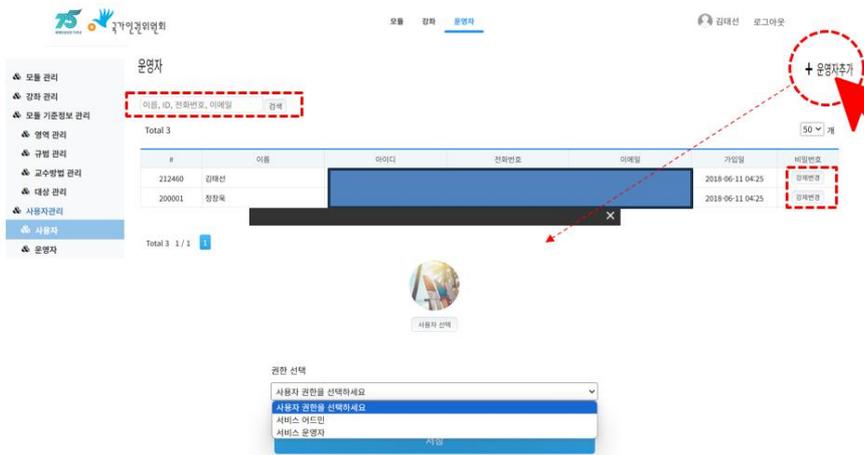
[그림 13] 교육과정 만들기 PDF 출력 및 저장

● 운영-회원관리 및 권한관리

- 운영자에게는 회원조회, 비밀번호 변경 등 회원관리를 위한 권한과 기능을 제공함.
- 사용자의 이름, ID, 전화번호, 이메일을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사용자 가입 목록은 페이지 단위로 나타냄.
-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운영자는 손쉽게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빠른 CS관리 대처가 가능함.
- 또한 운영자는 서비스 관리를 위해 가입한 회원 중 운영자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 관리 기능이 있음.
- 권한 관리는 어드민, 매니저, 큐레이터 등 권한에 따른 기능 설정도 가능하도록 설계 구조를 기획하였음.



[그림 14] 운영-회원관리 1



[그림 15] 운영-권한관리 2

● 운영-모듈 관리

- 운영자는 등록된 모듈 데이터의 내용들을 직접 수정 및 등록 관리 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듈 데이터가 사용된 레슨 등 각 모듈 데이터의 활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모듈 데이터의 영역, 규범, 교수방법, 대상의 데이터를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여 최적의 인권 교육 데이터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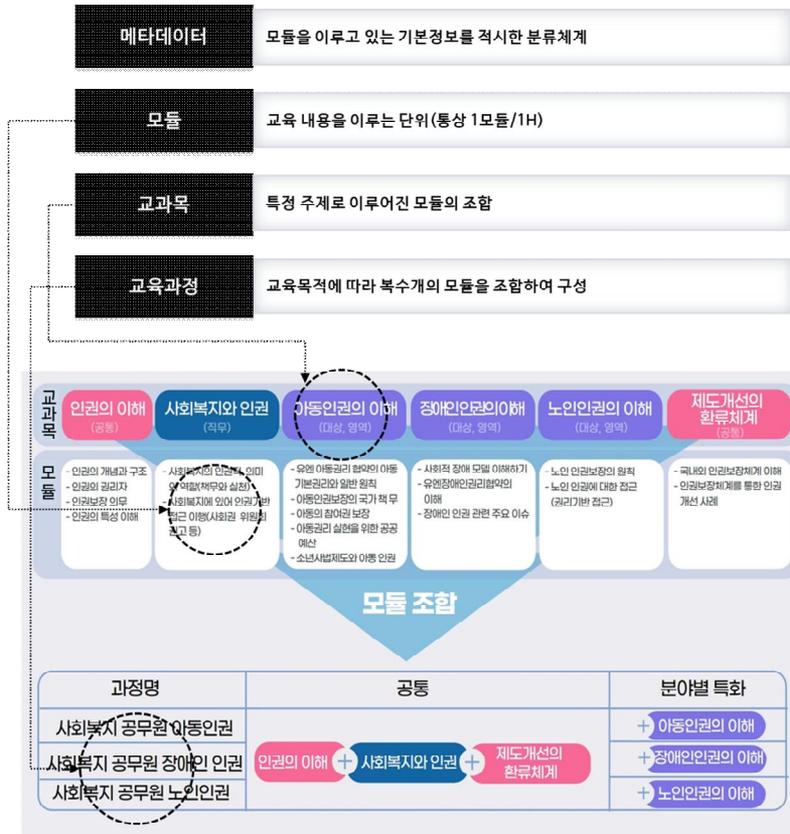


[그림 16] 운영-모듈관리

다) 기초데이터 베이스 구성

● 데이터베이스 구조화

- 흩어져 있는 인권정보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모듈 생성 및 관리정책을 적용하였으며, 인권 교육 활동에 필요한 메타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권교육 정보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모듈을 기초데이터베이스로 하여 교육과정 등 추가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재사용성을 극대화함.



[그림 17] 모듈형 교육과정의 구성체계

라) 결론 및 제언

● 웹 기반 플랫폼 확장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정보시스템은 1대의 PC에서 1명의 운영자만이 교육과정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구조임.
- 기초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유연한 재생산, 확장성을 고려하여 수평적으로 설계함.
- 과업범위인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본 모듈데이터 관리 도구는 데이터의 기초적인 관리만 가능하여 활용성에 그 한계가 명확하여, 추가개발을 통해 인권 콘텐츠의 재구성, 재생산 할 수 있는 모듈까지 개발을 확장 하였음.
- 하지만 인권 콘텐츠의 최소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 모듈의 필요성과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의 개발, 콘텐츠의 활용성을 크게 높여줄 AI크롤러의 부재는 아쉬운 과제로 남아

있음.

- 로컬기반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의 특성상 향후 콘텐츠의 이원화가 불가피하여, 온라인 기반으로 통합시 무결성 유지에 이슈발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향후 플랫폼의 확장성, 인권 교육과정 데이터 통합,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 기반 플랫폼으로의 확장성이 시급히 추진 되어야 함.

● 모듈 데이터 및 교육과정 데이터 추가 업데이트

- 현재 개발된 모듈 데이터는 인권교육의 대부분의 과정에서 활용되어 사용할 수 있으나 본 플랫폼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듈데이터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한 하위 모듈의 확장성이 필요함.
- 또한 사용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개발 되어야 하며, 평가 시스템(별점 평가 시스템 등) 개발을 통해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교육과정을 상위 배치함으로써 인권 교육과정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 및 플랫폼 사용성 강화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전문가 교육은 현 1세대식 지식 전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음. 이에 양방향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나.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 연구

가) 유엔 등 국제인권기준이 추구하는 인권교육의 개념, 원칙, 대상, 방법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제시하는 인권교육 기본 콘텐츠로서 인권의 이해 교육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예의 핵심 개념과 원칙을 확인함. 예, 보편성과 양도불가능성,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평등과 비차별, 권리와 의무(국가의 책무성, 국가의 존중, 보호, 실현의 3대 책무)
- 아시아-태평양 인권정보센터(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의 동북아 인권교육 교육안으로 개발된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Northeast Asian School Systems: Resource Material」을 분석하여 인권교육에서 가장 기초인 ‘인권의 이해’ 모듈의 인권 원칙과 권리 장의 구성과 주요 내용 설계에 참고함.
-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05~2024)의 각 단계별 추진계획과 특징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주요 12개 대상과 교육과정을 추출하는 데 참고함. 단계별 추진계획의 예→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05~2009) : 초등 및 중등교육 체계 내 인권교육 통합,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과 공무원법집행관, 군인의 인권훈련,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 : 언론인 및 미디어 전문가를 위한 인권교육 증진,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20~2024) : 인권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역량 강화

나) 국내 공적 인권교육 기관의 인권교육(과정, 콘텐츠 등) 사례

- 국내에 있는 주요 공공기관의 교육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회의정연수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콘텐츠, 교육과정 등을 분석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설립 후 교육과정 운영 로드맵을 설계하는 데 참고함.

다) 국외 교육기관의 인권교육(과정, 콘텐츠 등) 사례

- 아래와 같은 국외 주요 기관의 인권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과정별, 모듈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참고함.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법률 전문가를 위한 인권교육’(Human Rights

- Education for Legal Professionals, HELP) 온라인 인권교육 플랫폼 운영
- 독일국가인권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DIMR)의 모듈기반 ‘청소년과 성인 인권교육을 위한 학습자료’(Materialien für die Bildungsarbeit mit Jugendlichen und Erwachsenen)
- 스웨덴 라울발렌베리 인권과 인도주의법 연구소(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RWI)의 ‘리더십 과정’ 운영
- 유럽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과 연구센터(Europäisches Trainings- und Forschungszentrum für Menschenrechte und Demokratie, ETC)의 ‘공공분야 직무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 캐나다 에퀴타스(Equitas)의 ‘인권옹호자 교육자 중심 글로벌 범위의 인권교육’
- 덴마크국가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DIHR)의 ‘국가인권기구 직무자 과정’ 운영

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발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발한 인권교육 콘텐츠(국가인권위원회 제작)는 제안요청서 불임으로 첨부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콘텐츠 개발 목록의 최근 5년(2018~2023년) 동안 개발된 인권교육 콘텐츠를 살펴보고, 그중 참고 강의를 제외한 인권교육 사이버 콘텐츠와 교재를 주요 교육 대상(학습자)별, 콘텐츠별로 분류하여 정리함. 주요 교육 대상별 분류는 「사이버 교육 콘텐츠 FACT BOOK」(국가인권위원회, 2021a)을 따름⁴⁾.
- 국가인권위원회 개설 기존 교육과정을 과정별 교육 대상(학습자), 교육과정의 구성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본 연구의 교육과정 및 운영 방향 설계에 참조하고 쟁점이 되는 논의점은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함.

2) 정성적 연구

- 본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연구이므로 경험적 연구에서는 현재 인권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규칙성의 발견을 위한 정량적 조사보다는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자(활동가), 학습자, 기획운영자, 인권교육전문가 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맥락과 한계 그리고 개선점 등의 파악을 위한 정성적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함.

4) 공공영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영역은 각급 학교, 시민영역은 공공 및 학교 영역을 제외한 영역을 의미함.

가) 적합성조사 - 설문조사

- 인권교육 참여자 및 교육기획자·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과정별 교육목표 및 모듈 메타데이터 구성의 적합성 조사를 연인원 300명으로 실시함.
- 외부 전문가 그룹의 과정별 교육목표 적합성 점검은 12개 과정에 대한 총 48개 점검 결과를 인권교육원 교육과정의 목표에 연계하여 반영함.
- 과정별 모듈 메타데이터 구성 적합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점검은 총 157개 모듈의 메타데이터에 대해 중복 점검을 포함하여 375개 그리고 인권교육 전문가 그룹의 점검은 중복 점검을 포함하여 349개 점검으로 진행함.

<표 7> 적합성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가 그룹, 분야별 전문가 그룹, 인권교육 전문가 그룹 · 연인원 300명
조사기간	· 2023년 11월 15일(수) ~ 12월 10일(일)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별 교육목표 적합성 점검 · 설계한 교육 모듈 및 메타데이터 내용의 적합성 및 개선 보완 사항에 대한 파악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의 타당성 - 메타데이터의 내용이 적절한가(개념의 오류, 논리적 오류 등) · 유용성 - 메타데이터 내용이 모듈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가(모듈의 목표와의 연계성 등) · 현장성 - 메타데이터의 내용이 현장성을 담고 있는가(학습자 현장 반영, 인권 현장 연계 등) · 개선 방향 및 기타 의견 등
조사방법	· 본 연구진에서 설계한 설문 문항을 웹 기반 플랫폼에 탑재하여 조사 진행
설문유형과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설문지 · 연구진 회의를 통해 조사의 내용과 설문 초안 설계 · 인권교육 전문가의 자문 → 최종 설문 문항 완성

나) (심층)면접조사 및 자문단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전현직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한국 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의 역할, 교육원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조사 결과를 본 연구의 로드맵과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함.
- 대학인권센터, 「기업과 인권」 관련 업무 담당자, 관련 교육기획자 및 운영자, 경찰 분야 교육자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 교육과정 및 내용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결과를 과정 및 모듈 설계에 반영함.

- 인권교육 활동가·전문가 자문단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개발 방향성 및 12개 분야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설계 내용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본 연구의 프레임개발,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설계에 반영함.

(1) 심층면접조사(FGI)

〈표 8〉 심층면접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및 규모	· 국가인권위원회 전현직 교육관계자, 4명
조사기간	· 2023년 9월 14일(목)
조사 목적	· 한국사회에서 인권교육원의 역할, 교육원의 중장기로드맵 마련과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조사 내용	· 인권교육원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 · 인권교육원의 역할 · 인권교육원의 역량 강화 대상(학습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의 협업 파트너 · 인권센터 및 대학인권센터의 상 · 선수과정 운영 등
조사방법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심층면접조사(FGI)로 진행
설문유형과 설계	· 반구조화된 설문지 · 연구진 회의를 통해 조사의 내용과 설문 초안 설계 · 인권교육 전문가의 자문 → 최종 설문 문항 완성

(2) 면접조사

〈표 9〉 면접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및 규모	· 대학인권센터, 「기업과 인권」 관련 업무 담당자, 경찰분야 교육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분야 교육기획자 및 운영자, 12명
조사기간	· 대학인권센터 관련 - 2023.10.5.(목) - 11.9(수) · 「기업과 인권」 관련 - 2023. 10. 21.(토) - 11. 1.(수) · 경찰 인권교육 관련 - 2023.10.19.(목)
조사 목적	· 대학인권센터, 「기업과 인권」, 경찰 분야 교육과정 및 내용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조사 내용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인권센터 교육과정 및 운영 현황 파악 · 대학인권센터 실태 파악 · 대학인권센터 과정 및 교육 내용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교육과정 및 운영 현황 파악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인권」 실태 파악 · 「기업과 인권」 과정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 경찰 인권교육 현황 · 경찰 내부 강사를 위한 인권교육 과정에 필요한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면접조사
설문유형과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설문지 · 연구진 회의를 통해 조사의 내용과 설문 초안 설계 · 인권교육 전문가의 자문 → 최종 설문 문항 완성

(3) 자문회의 및 간담회

〈표 10〉 자문회의 및 간담회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전문가 자문단, 연인원 8명 · 본 연구 담당 인권교육 기획자 간담회, 연인원 6명
조사기간	· 2023.8.14.(월) - 11.20.(월)
조사 목적	·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개발 방향성, 12개 분야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설계 내용 점검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설계의 필요성과 목적 점검 ·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개발 방향성 · 교육과정 분야 선정 · 교육내용 구성에 있어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적 권리구제의 역할과 범위 - 인권기구의 정체성과 역할 - 인권교육에서 사례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 · 12개 분야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설계 내용 점검
조사방법	· 대면 회의 및 간담회, 서면자문
설문유형과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설문지 · 연구진 회의를 통해 조사의 내용과 설문 초안 설계 · 인권교육 전문가의 자문 → 최종 설문 문항 완성

II

국내 인권교육 문헌 및 해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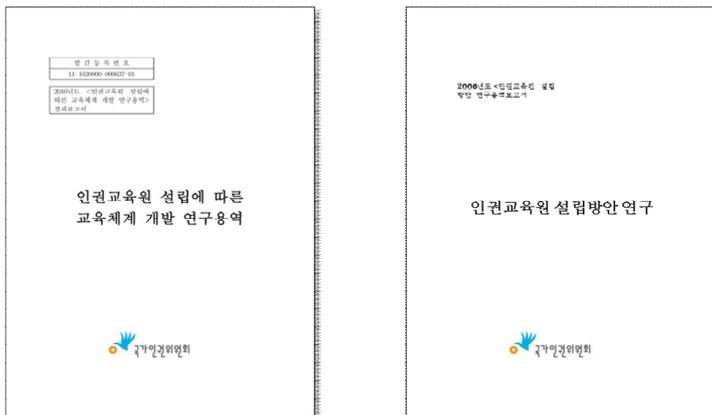
II | 국내 인권교육 문헌 및 해외 사례

1 국내 인권교육 문헌 조사

가. 국내 선행연구 분석

1) 인권교육원 운영과 교육체계 관련 연구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립된 후 사회 전반의 인권교육이 확산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음.
- 그중에서 발주기관의 인권교육원 관련 선행연구로서 「인권교육원 설립방안 연구」(하미승 외, 2006), 「인권교육원 설립에 따른 교육체계 개발 연구용역」(노석준 외, 2016)과 인권교육 내용체계와 관련하여 「초·중등 인권교육 내용체계 및 개정교육과정 적용방안연구」(구정화 외, 2020)를 살펴봄.



[그림 18]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연구(2016, 2006)

가) 인권교육원 설립방안 연구(하미승 외, 200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해당 연구는 국내의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 국내 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 주요 기관의 인권교육 사례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국내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2) 연구 내용

- 해당 연구는 인권교육원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인권교육원의 필요성, 설립 목적, 방향과 원칙, 운영 방안 등의 도출을 연구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음.
- 인권교육원의 설립 목적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인권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지식과 감수성을 증진하여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임. 교육원의 설립 방향은 크게 6개의 지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권교육 전반을 계획, 조정, 지원하는 상시적 인권교육기관 지향, 인권교육의 광범위한 확대 실시를 통한 인권교육 수요자의 요구 및 욕구 충족, 인권교육 관련 조사연구와 그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전문 인력 양성, 인권교육 지원 및 실행 체계 마련, 인권교육 실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 점검을 포괄함.
- 해당 연구가 제안한 인권교육원의 역할은 교육 실행기관으로서 학교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촉진 지원하고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등을 직접 교육하는 것임. 또한 인권교육원이 인권교육 담당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운영의 주체로서 해야 할 역할과 국내 인권교육 관련 연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및 각급 인권교육 대상자에 대한 연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함.
- 교육 관련 세부 내용으로는 국가 인권교육 우선적 목표집단의 대상별 인권교육을 영역(인권교육 전문강사 공공영역 인권교육, 학교 인권교육, 시민사회 인권교육), 인권교육 대상 집단(잠재적 인권교육 전문가층, 법 집행기구 종사자 및 군 관리자, 공무원 연수담당자, 교육 관련 결정권자, 공교육 담당자, 사회 인권취약 집단 및 관련 기관 종사자)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 대상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교육 주제별로는 대주제에 따른 하위주제들을 구체적으로 분류 제시함.

(3) 연구의 의의 및 본 연구와의 연계성

- 해당 연구는 국가 인권교육의 우선적인 대상으로서 목표집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인권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 현장 수요 기반 인권교육기관의 설립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인권교육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현시점의 인권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
- ‘인권교육원 설립방안 연구’는 본 연구 과제와 직접 관련된 선행연구이나, 연구한 시기가

17년 이상이나 지나 현시점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참고하기에 한계가 있어 본 연구과제와 관련해 부분적으로 참조함.

나) 인권교육원 설립에 따른 교육체계 개발 연구용역(노석준 외, 201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해당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인권교육의 지원과 실행을 위한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원 설립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인권교육원의 중장기적 비전, 사명 및 역할, 인권교육의 목적 및 목표,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임.
- 전술한 인권교육원의 비전, 사명, 인권교육의 목적 및 목표에 기반한 교육체계 개발이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에 해당함.

(2) 연구 내용

- 해당 연구는 인권교육의 의무화 관련 법률 등의 제도적 현황, 정부 주요 부처 유사 교육기관 설립 현황, 국제사회 인권교육 현황,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인권교육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여 인권교육원 교육 운영 종합계획안, 인권교육원의 역할 등을 제언하고 있음.
- 인권교육원 설립에 따른 교육체계 개발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는 인권교육원의 비전, 미션, 인권교육의 목적 및 목표, 그에 따른 세부 추진 전략들을 수립함. 추진 전략으로 인권교육과정 구축, 인권 전문가 양성, 인권교육 성과 환류, 인권교육 협력 허브 구축, 미래 인권교육환경(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교육자료, 문헌 등의 발간자료를 검토하여 인권교육원의 교육과정별 교과 편성(안)을 기술함. 교과 편성(안)의 인권이해 과정은 인권이해 일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인권감수성 과정의 교과군은 인권감수성 이해, 함양, 실천으로 기획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교과목 및 내용을 제안함. 한편 인권 전문과정 주요 교과군은 공통과 분야별로 분류하여 각각 인권행정, 인권해석, 인권상담, 인권윤리, 인권책무성, 인권실천역량 개발로 기획하고 그에 따른 교과목 및 내용을 제안하고 있음.

(3) 연구의 의의 및 본 연구와의 연계성

- 이 연구 역시 시기적으로 오래되어 현황 자료로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인권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기초현황의 범주와 대상별 요구조사에 대한 체계 구성을 참고하였음.

- 또한 교육과정별 편성 등 인권교육 교육체계와 교육 방향에 대한 연구는 학습 대상, 기관의 현장 조사 기반이 아닌 문헌연구로만 이루어져 있어 본 연구와 연계할 수 있는 타당한 연구 자료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런 한계로 현황조사 자료의 범주를 활용하고, 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는 새롭게 진행함.

다)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구정화 외, 2020)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을 위한 내용을 체계화하여 교육과정을 제시한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을 둘러싼 인권상황은 물론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 등도 많이 변화되었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 변화된 여건에 따른 새로운 인권교육 내용 체계안을 살펴보고 새로운 인권교육의 콘텐츠 마련을 위한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임.
- 또한 교육부가 2025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논의의 기반이 될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내용

- 해당 연구는 첫째, 국내외의 기존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분석함. 구체적인 연구내용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 인권교육 및 국내외 인권 관련 단체에서 제안한 인권교육의 내용체계에 대한 분석, 인권교육 내용 체계 관련 선행 연구 및 재구성에 관한 논의 분석, 유엔 등 국제 사회와 국제규범 등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원칙을 국내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 포함됨.
- 둘째,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체계의 재구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기관의 인권교육 내용 범위 제시 및 교육 조직, 학교 현장의 특성 반영을 위한 교육의 세부 영역 및 내용 구성, 초·중등학교의 학교 및 학급별 인권교육 내용 체계 수립 등을 해당 연구의 내용에 포괄함.
- 셋째, 2025년 교육부가 진행할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인권교육 내용 적용 방안과 관련해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별 인권교육 내용의 세부적인 분석 및 평가, 교과별 내용 구성 시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 내용 체계의 적용 방안, 향후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인권교육 내용 체계의 적용 방안, 전 교과에 맞는 인권교육 내용 구성 및 적용 방안 등이 제시됨.

(3) 연구의 의의 및 본 연구와의 연계성

- 이 연구는 학교 분야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2003년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내용 체계화에 따른 교육과정 연구(문용린 외, 2003), 2005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종태 외, 2005)에 이어 비교적 최근에 수행되었으며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학교 단위의 내용 체계와 교육목표와 내용이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유의미한 자료이나, 인권교육원의 학습 대상에게 필수적인 인권적 직무의 이해 등이 제외되어있고, 인권 문제 접근이 학생 수준을 따르다 보니 인권교육원의 교육 대상의 수준과 교육 요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 방향과 체계는 참고하되 학습 수준과 학습요소는 새롭게 구성함.

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가)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김은희 외, 202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공무원 인권교육의 설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먼저 인권교육이 무엇이고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정리한 연구임. 국내외 주요 인권교육 문서들을 검토하여 인권교육의 목표 및 의미와 역할은 물론 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 주요 내용과 방법을 프로그램 형태로 제안하고 있음.
- 특히, 국가의 행위자로서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의 책임이 자신의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교육목표와 내용으로 체계화하여 제안하였음. 이는 개인적 품성의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모든 사람이 아닌 개인의 권익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금지 가이드라인 수준의 인식개선 교육에 머물러있는 현 인권교육의 개선 방향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는 연구임.

(2) 연구 내용

- 해당 연구는 첫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형성적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문헌조사, 서면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적합성 평가 등으로 진행되었음.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과 학습 내용을 파악한 후 공무원 인권교육의 방향과 교육구조, 교육평가를 위한 원칙 등을 제시하였음.
- 둘째, 공무원 인권교육에서 필요한 학습자와 학습자 요구, 사회와 직무에서 요구, 분야별 인

권 주제의 중요성, 적합성 등 직무의 사회적 의미와 인권역량을 연결한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였음. 이는 인권교육의 영역을 인권의 이해, 인권보장 규범과 제도,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목적과 목표, 교육과정과 교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 셋째, 본 연구에서 주로 설정하고 있는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장애인, 아동, 노인). 경찰공무원, 군인 공무원이며,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인권교육 기본 프로그램과 인권 교육 활동가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제안하고 있음.

(3) 연구의 의의 및 본 연구와의 연계성

- 이 연구는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육 대상과 목표, 내용 체계 등을 정리하고, 체계적인 교수설계와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연구임. 또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인권교육 콘텐츠가 무엇이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환경 특성을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과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주요한 선행연구임.
- 본 연구의 주요 과업인 모듈화와 교재개발을 위하여 이 연구의 주요한 결과물을 검토하였으며, 공공영역에서 인권교육의 목적과 방향 등을 공유하고 있음. 또한 이 연구가 프로그램 단위의 교수설계를 보여준다면,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구체적인 콘텐츠를 실제로 제안함으로써 학습자와 교수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김병주 외, 202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학교 구성원의 인권문해력,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연합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진행하였음. 학생, 교사, 교장, 교감 등 학교 구성원 전반을 위한 인권교육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실제화하는 것으로 국내의 인권교육 전문가, 활동가, 현장 교사들 60명 이상이 개발에 참여하였음.
- 특히, 인권교육을 학교 구성원별로 대상별, 활동별, 영역별 인권교육 커리큘럼으로 제시하였음. 직무연수 활용을 위한 러닝 로드맵을 제안하고, 핵심 연수 과정의 세부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에 실제 적용한 후 최종 경과물으로써 대상별 인권교육 교재, 연수 프로그램, 활용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통합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2) 연구 내용

- 해당 연구는 첫째, 학교 구성원의 인권감수성과 인권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인권교육의 방향, 개념, 실천 방법 등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하고 각 직위와 역할에 맞는 활동 중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또한 디지털 플랫폼과 멀티미디어 자원을 활용하여 인권교육의 학습장이자 출발점으로서 인권적 학교 공동체 운영 및 학교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실제적 기여를 위해 현장성을 높임.
- 둘째, 이 연구의 주요 결과물은 학교 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학교장용), 학교 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교감용), 학교 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교사용),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전문적 학습공동체용) 연수교재를 대상과 목적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음.
- 셋째, 이 연구의 결과물인 연수교재는 인권적 지식과 이해를 높이는 인권 이론과 배경지식은 물론 참여적 교수법을 포함한 인권교육 방법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프로그램과 교수학습 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음. 특히, 인권교육에서 다루는 각 주제의 개념과 방향, 주요 이슈와 쟁점을 보다 학교 구성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6가지 핵심 주제와 교육활동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제안하고 있음.

(3) 연구의 의의 및 본 연구와의 연계성

- 이 연구에서 개발한 주요 주제는 인권교육의 개념과 내용, 실천 방법 등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 구성원을 위한 인권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음. 세부적으로 인권 문해력 일반에 해당하는 4단위('인권의 개념과 역사', '인권의 구조', '인권의 특성', '인권보장규범과 제도') 인권교육의 하위 주제 6단위('차별과 혐오', '장애', '성평등', '이주민', '노동', '기후 위기')로 10단위의 주제에 대해 기본 교육 내용과 활동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음.
- 본 연구의 주요 과업인 모듈화와 교재개발을 위하여 이 연구의 교수설계와 교재개발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으며, 대상별 차별화 전략과 교재개발 전략 등을 참고하였음. 또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적 맥락에서 현실적 교육환경과 교육 운영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어, 교육 맥락성을 담보하면서도 교육목표를 국제적 논의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음.

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콘텐츠 목록 조사

-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물(국가인권위원회 제작)은 제안요청서 붙임으로 첨부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콘텐츠 개발 목록의 최근 5년(2018~2023년) 동안 개발된 콘텐츠 중 참고 강의안을 제외한 사이버콘텐츠와 교재를 주요 교육 대상별, 콘텐츠 내용별로 분류하였음. 주요 교육 대상별 분류는 「사이버교육 콘텐츠 FACT BOOK」(국가인권위원회, 2021)을 따름⁵⁾.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요청서에 구체적 교육내용 개발이 필요한 직무를 공공영역, 사회복지, 학교 종사자로 설정한 것으로 볼 때, 이 세 영역에 공통으로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각 직무별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메타데이터로 구성하여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1) 주요 교육 대상별

-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사이버콘텐츠와 교재 모두 공공영역의 콘텐츠가 다른 영역에 비해 적음.

〈표 11〉 교육대상별 콘텐츠 현황

사이버콘텐츠		교재	
분류	수	분류	수
공통	15	공통	29
공공	4	공공	2
학교	11	학교	14
시민	20	시민	4
총계	50	총계	49

2) 콘텐츠 주제 분야별

- 사이버콘텐츠의 경우 일반개론 외에 「기업과 인권」 관련 콘텐츠가 많고, 교재는 아동·청소년관련 주제 콘텐츠가 다수 개발됨. 내용적으로는 사이버콘텐츠와 교재 모두 일반개론을 주로 다루고 있음.

5) 공공영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영역은 각급 학교, 시민영역은 공공 및 학교 영역을 제외한 영역을 의미함.

〈표 12〉 주제분야별 콘텐츠 현황

사아버콘텐츠		교재	
분류	수	분류	수
일반 개론	14	일반 개론	29
공무원·군·경	3	공무원·군·경	1
기업	8	기업	-
노동	5	노동	2
노인	3	노인	-
사회복지	2	사회복지	-
스포츠	4	스포츠	-
아동·청소년	4	아동·청소년	13
언론	2	언론	-
여성	2	여성	-
이주민	1	이주민	-
장애인	1	장애인	1
환경·보건	1	환경·보건	3
총 계	50	총 계	49

2 국제 인권교육 기준

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⁶⁾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는 국제 인권교육 기준으로서 인권의 이해 교과목을 교육하거나 학습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인권의 개념과 원칙을 아래와 같이 ‘보편성’,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평등과 비차별’ 그리고 ‘권리와 책무’로 제시하고 있음.

● 보편성

- 인권의 보편성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에서도 확인하고 있음. 보편성은 인권은 국적 및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의 특성을 가지며, 서로의 다양성과 차이를 반영하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

●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 인권의 불가분성은 인권은 분리할 수 없으며, 모든 권리는 위계적 등급과 그에 따른 우선성이 있을 수 없는 동등한 지위를 가짐을 의미함. 이는 보통 자유권과 사회권을 이분법적으로 또는 우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함.
- 상호의존성의 원칙은 인권의 가치를 이루는 다양한 권리들은 서로 의존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권리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때 실질적인 인권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 평등과 차별금지(비차별)

- 평등과 관련해서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가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동 선언 제2조에 규정된 차별로부터의 자유가 이러한 평등을 보장함을 의미함.

6) <https://www.ohchr.org/en/what-are-human-rights>

- 차별 금지의 원칙은 모든 주요 인권 조약에 존재하며 국제 인권법에 영향을 미침. 차별 금지는 또한 두 가지 대표적인 핵심 국제 문서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중심 주제를 제공함.

● 권리와 책무 – 국가의 3대 책무(존중, 보호, 충족)

- 권리와 책무는 인권에 있어 궁극적인 책무이행자가 국가이므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국가에 대한 권리’와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성’을 의미함.
- 한편 개인으로서 우리는 인권을 누릴 권리와 자격이 있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하고 옹호해야 함을 강조함.

나. 아시아·태평양 인권정보센터

- 아시아·태평양 인권정보센터(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⁷⁾가 제시하고 있는 인권의 원칙과 권리는 동북아 학교 시스템에서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그동안 개발된 동북아 인권교육 자료를 기반으로 인권교육 교육안으로 개발된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Northeast Asian School Systems: Resource Material」을 참고하여 분석함.
- 인권교육에서 가장 기초인 ‘인권의 이해’ 모듈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본 교육 자료의 ‘인권 원칙과 권리’ 장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참고함. ‘인권 원칙과 권리(Human Rights Principles and Rights)’ 장은 인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장으로,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권의 이해

- 인권의 이해에 대한 설명의 핵심은 인간 존엄성으로, 특히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이야기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함. 또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고립되고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연결되었다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기반으로 인권을 설명함.

7)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2013).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Northeast Asian School Systems: Resource Material」



COPYRIGHT © 2023 (사)인권정책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그림 19] 인권의 이해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 요소

● **인권의 원칙**

- 아시아·태평양 인권정보센터가 제시한 인권의 원칙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시한 기본원칙 외에도 참여와 포용 그리고 법치주의를 추가하여 명시하고 있음.

● **보편성과 양도불가성**

- 인권은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인권의 보편성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에 포함되어 있다.

● **불가분성**

- 인권은 불가분하다. 인권이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것 이든 간에, 인권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에 내재 되어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권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위계적이지 않다. 한 권리에 대한 부정은 다른 권리 향유를 항상 방해한다. 따라서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는 건강권이나 교육권과 같은 다른 권리를 부정하면서 타협될 수 없다.

•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

-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각각은 발달과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욕구 충족을 통해 한 사람의 존엄성 실현에 기여한다. 하나의 권리를 성취하는 것은 종종 다른 권리의 성취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를 들어, 건강권 실현은 특정 상황에서 개발권, 교육권 또는 정보에 대한 권리 이행에 달려있다.

• 평등과 비차별

-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각각에게 내재된 존엄성으로 인해 평등하다. 그러므로 누구도 인종, 피부색, 민족, 성별,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국가, 사회 또는 지리적 출신, 장애, 재산, 인권의 기준에 의해 확정된 다른 기타 지위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 참여 및 포용(inclusion)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권리 기반 접근은 지역사회, 시민사회, 소수민족, 여성, 청소년, 토착민의 높은 수준의 참여를 요구한다.

• 책무성과 법치주의

- 국가 및 기타 의무 이행자는 인권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기타 의무 이행자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법적 규범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권리 보유자는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관할 법원이나 기타 심사기관에서 적절한 시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 언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는 정부가 인권을 옹호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2013 : 16-17)⁸⁾

●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 국가의 3대 책무(존중, 보호, 실현)를 먼저 설명함.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국가 권력 또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보호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인정됨.

● 인권과 국가 주권

- 이전에는 국가 주권을 우선시하였지만 나치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한계를 인지함. 국제사회는 세계대전과 같은 잔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8) 비공식 번역

체계와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마련함. 따라서 인권에 관한 사안에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임.

● 인권기구, 시스템, 인권 문서(Human Rights Instruments) 등

- 인권 문서 : 채택, 비준의 차이 등. 비준한다는 것은 당사국의 입법부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
- 국제권리장전 : 9대 인권 규약 등 국제인권규약 소개
- 유엔 인권 조약 시스템: 조약기구, 조약 위원회, 권고, 비평 등을 통해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체계에 대한 설명
- 인권이사회 : 국제적 인권 보장 체계 속에서 인권이사회가 탄생하기까지 배경 소개와 UPR, 자문위원회, 유엔 특별절차, 특별보고관, 특별 대표, 독립전문가, 워킹그룹 등의 역할과 기능 소개

● 권리에 대한 요구/전제 조건⁹⁾

-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데 특정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확보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덕, 공공질서 및 보편복지(general welfare)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고 확인한다. 권리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선언문에 명시된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제29조 및 제30조).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조약에서 제시된 권리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민주 사회에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제4조).
- 세계인권선언 및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달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규약에서 규정하는 모든 권리에 적용되는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는 일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규약의 몇몇 조항은 다루는 권리가 법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 안보, 공공질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따라서 특정 권리는 긴급 상황에서도 정지되거나 유보되지 않는다. 이는 생명권,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노예 또는 예속 상태로부터의 자유, 채무로 인한 구금으로부터의 보호, 소급 형법으로부터의 자유,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포함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식적으로 선포된 공공 비

9) 원어는 Conditions on Rights로 직역하면 '권리에 대한 조건'이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용어를 조정함. conditions on rights에 대한 내용은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11-12페이지의 내용임.

상사태의 경우, 국가가 특정 권리의 향유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한 권리 제한 또는 유보는 “상황의 긴급성에 의해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을 이유로 한 차별은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제4조). 이러한 권리 제한 또는 유보는 유엔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한다.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2013 : 23-24)¹⁰⁾

- 아시아·태평양 인권정보센터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교육 내용에 인간 존엄성, 인권의 원칙, 국가의 책무성과 국제인권보장체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임.
-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인권의 원칙에 보편성과 불가분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연관성, 평등과 비차별, 참여 및 포용성, 책무 및 법치주의를 설명하고 있음. 이는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인권이란 무엇인가?’에서 인권의 개념을 설명할 때, 보편성과 양도 불가성,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평등과 비차별, 권리와 의무(국가의 책무성, 국가의 존중, 보호, 실현 3대 책무)를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부분임. 유엔, 독일의 인권교육 모듈, 아시아·태평양 인권정보센터 자료를 교차 점검하여 인권의 개념을 설명 내용에 공통으로 포함된 개념과 내용은 본 연구의 ‘인권의 이해’ 모듈에 반영함.

다.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 계획

-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을 근거로 한 12개 대상별 과정을 추출하여 제시함.
-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제1~4차의 흐름은 국가의 인권 보장의 책무로부터 시민사회의 인권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국가의 인권교육 책무를 강조하며 국가의 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주체인 국가인권위원회 역시도 국제 흐름과 방향성 속에서 인권교육원의 교육설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교육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직무 중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자’를 위한 인권교육 내용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교육을 참고하고, 교육청 인권업무자, 학교관리 및 초·중고 인권강사와 사회과 교사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대학인권센터 직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이를 실행한 해외 사례를 참고 가능함.

10) 비공식 번역

〈표 13〉 12개 대상별 과정 도출 근거

연번	주요 12개 과정 대상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1	경찰 내부강사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 집행관, 전 계급의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과 초·중등 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통합 계속 이행
2	군 인권교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 집행관, 전 계급의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과 초·중등 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통합 계속 이행
3	인권강사		유엔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제1~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4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자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 집행관, 전 계급의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과 초·중등 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통합 계속 이행
5		인권조사관	
6		지역인권기구 인권위원	
7	지방의회 의원		
8	학교 관리자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05~2009): 초등 및 중등교육 체계 내 인권교육 통합
9	대학인권센터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 집행관, 전 계급의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과 초·중등 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통합 계속 이행
10	「기업과 인권」 담당자		
11	사회복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 집행관, 전 계급의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과 초·중등 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통합 계속 이행
12	언론인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 언론인 및 미디어 전문가를 위한 인권교육 증진

3 해외 주요기관의 인권교육 과정 및 콘텐츠

가. 독일국가인권연구소 인권교육

- 모듈기반 ‘청소년과 성인 인권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Materialien für die Bildungsarbeit mit Jugendlichen und Erwachsenen)

1) 독일국가인권연구소

- 독일국가인권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DIMR)는 유엔의 파리원칙에 따라 인가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임.
-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와 연령층의 교육적 맥락에 대한 교육 자료를 자체 개발 혹은 다른 교육 관련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개발·제공함.

2) 인권교육의 목적

- 동 연구소는 인권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특히 인권에 민감해야 하는 직업의 업무 및 직무교육과 훈련 강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인권 실현에 있어서 교육자의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음.

• 인권교육의 목적

“인권교육의 목적은 인권 문화를 증진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권을 알리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문화의 개념은 인권교육의 전인적 특성(Ganzheitlichkeit)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 문화는 특정 사회의 전통과 독립적이다. 그것은 인권이 국가에 대한 구속력 있는 요구 사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관한 것이지만, 또한 사회적 및 대인 관계 행태에 대한 기준(Massstab)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인권의 구체적인 이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포함된다. 인권 문화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책임(Verantwortung)을 인식'한다. 2011년 유엔 인권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선언문에서 인용한 이 인용문은 인권 실현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인 인권을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에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해진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옹호하도록 격려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초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러한 권리(및 내재된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러한 권리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반으로서의 인권교육은 다른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사

람들의 행위(행태)를 가리킨다” (Feige, M., et al., 2016 : 4)¹¹⁾.

3) 주요 학습자

- 주제별로 개발된 이 모듈형 교육과정은 15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인권교육자료로서¹²⁾ 활용되고 있음.

4) 주요 인권교육 자료 구성

- 독일국가인권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는 크게 시대별(통사적), 주제별 그리고 연령별로 구분됨.
- 시대별 자료는 ‘인권으로서 포용(inclusion)’이라는 통사적 주제에 맞추어 고대, 중세, 근대, 나치시대, 전후 냉전시대와 현재까지를 조망함¹³⁾.
- 사람의 지위가 시대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게임, 연습, 방법, 전기, 법 등의 자료와 연계해 온라인 콘텐츠로 제시하고 있음.
- 주제별로는 15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인권교육자료로서, 다음의 6개 모듈을 개발하여 제공함.

11) 비공식 번역

12) 연령별로는 6세 - 14세까지의 독일어권 자료로서 어린이 인권교육 가이드 콤파지토(Compasito)를 활용하고 있고 15세 이상은 기존의 콤파스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2020년 개정된 독일어판 콤파스(최근 상황변화(인권보호 시스템의 최근 발전 상황, 인권교육 관련 상황변화 등)에 맞게 보완되고, '연습'이 수정되거나 다른 연습으로 교체됨)는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교육학적이고 방법론적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게 하지만 반면 콤파지토는 아동 교육전문가들이 교육 현장에 맞게 내용을 응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13) <https://www.inklusion-als-menschenrecht.de/>

5) 주요 모듈 소개



COPYRIGHT © 2023 (사)인권정책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그림 20] 독일국가인권연구소 모듈 기반 인권교육 학습자료

가) 모듈 기반 기본교육과정 개요

(1) 기본교육과정

- 기본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과 성인 인권교육을 위한 학습자료’(Materialien für die Bildungsarbeit mit Jugendlichen und Erwachsenen) 모듈의 구성과 내용을 조사하였고, 특히 ‘인권이란 무엇인가’ 모듈의 경우 전체를 번역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 활용하였음.

(2) 학습자료 개요

- 이 자료는 총 6개의 개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각 모듈은 하나의 교육과정에 해당함. 모듈의 예. 모듈 1 : 인권이란 무엇인가?, 모듈 2 : 차별로부터의 보호, 모듈 3 : 권리에 접근, 모듈

- 4 : 장애와 포용(inclusion), 모듈 5 : 아동권리와 참여, 모듈 6 : 피난과 망명.
- 인권교육에 대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제안 사항을 지원하며 학교 및 학교 밖 교육에 모두 활용할 수 있음.
 - 학습자는 인권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지만 인권과 관련한 주제에 관심이 있는 15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임.
 - 모듈 구성체계는 모듈별로 '내용', '심화', '연습'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나) 모듈 구성체계

(1) 내용

- 각 모듈별 주제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개념 및 정의
- 관련 국제인권규범
- 인권의 적용과 실천
- 인권보장의 환류 체계
- 쟁점이 되는 내용의 토론 제안
- 내용 관련 예시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권은 어디에 문서로 작성되어 있는가?
- 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국가는 인권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책무의 예)
- 독일에서 누가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가?
 - 인권보장의 최우선적인 책무 → 국가(지방정부), 정부의 모든 기구, 연방의회, 주의회, 연방헌법재판소 등
 - 시민(사회)의 역할 → 인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Engagement)
- 유엔의 인권 관련 부문별 협약
- 인권의 실현
- 토론의 제안

(2) 심화

- 추가로 알아야 할 정보
- 법률, 규정 관련 문서
- 주제 관련한 정치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이해관계자)
- 교육자료와 교육 방법

(3) 연습

- 각 모듈별 4-5개의 연습으로 구성
- 목표, 소요시간, 필요한 자료 제공, 방법 안내로 구성
- 평가(마무리)
- 연습의 예

- ✓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권 알아보기
- ✓ 미디어에서 인권
- ✓ 인권 관련 인용문 찾고 해석해 보기
- ✓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아래와 같은 쟁점 주제 제시 및 토론)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그의 인권마저도 존중하지 않아야 한다!
 -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같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권리는 부유한 나라에서만 보장될 수 있는 사치일 수 있다!
 - 몸을 누일 수 있는 집을 가지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하다! 등
- ✓ 인권의 문화

● 독일국가인권연구소 인권교육과정_인권의 이해 모듈 분석

- 독일국가인권연구소의 인권교육과정 인권의 이해 모듈을 분석하여 인권교육원 과정 구성안의 설계에 참조함.

나. 유럽평의회 인권교육

- ‘법률 전문가를 위한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for Legal Professionals, HELP)¹⁴⁾ 플랫폼 운영

1) HELP의 목적 및 주요 학습자

가) HELP의 목적

- HELP(The European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for Legal Professionals)의 목적은 46개 유럽평의회 회원국 및 다른 모든 국가의 법률 전문가가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에서 유럽인권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나) HELP의 주요 학습자

-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주요 학습자 군은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률 전문가이지만 학제 간 과정에는 타 분야전문가(보건 및 의료 전문가, 교도소 및 보호관찰 직원, 법 집행기관, 언론인, 옴부즈맨, NGO 등)도 학습자군에 포함되고 있음.

2) HELP의 내용

- HELP 과정 초반에는 '유럽 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의 내용에 기반하였으나, '유럽 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과 '유럽 위원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의 주요 주제인 데이터 보호, 생명윤리 등의 문제도 다루기 시작함.
- 2015년부터는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 'EU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과 헌장 관련 법률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3) HELP의 과정 목록과 모듈

가) HELP의 과정 목록

- HELP의 온라인 과정은 여성 인권, 난민 및 이주민 인권, 장애인 인권, 아동 인권, 「기업과 인권」, 혐오와 차별, 표현의 자유, 스포츠 인권, 생명윤리, 법 집행 절차, 환경과 인권 등 대상과 주제별로 38개의 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 과정별로 4~10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과정별 개요문에는 과정이 만들어진 배경, 주요 개념, 과정의 개괄 및 모듈별 주요 내용, 과정의 주요 대상 등이 포함되어 있음.

14) Council of Europe HELP (coe.int)

〈표 14〉 참고자료 HELP 과정 목록¹⁵⁾

연번	과정명	연번	과정명
1	여성을 위한 정의로의 접근 (Access to Justice for women)	23	사법추론과 인권(Judicial Reasoning and Human Rights)
2	유럽인권재판소 재소 기준(Admissibility criteria for applications submitted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4	생물의학의 주요 인권원칙(Key Human Rights Principles in Biomedicine)
3	구금 및 지역 사회 제재에 대한 대안조치(Alternative measures to detention and community sanctions)	25	인권으로서의 노동권(Labour Rights as Human Rights)
4	이민 구금에 대한 대안(Alternatives to Immigration Detention)	26	망명절차를 밟고 있는 LGBTI(LGBTI Persons in the Asylum Procedure)
5	망명과 인권(Asylum and Human Rights)	27	의약품 범죄와 의료범죄협약(Pharmaceutical crime and the MEDICRIME Convention)
6	「기업과 인권」 (Business and Human Rights)	28	재판 전 조사 및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Pre Trial Investigation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7	아동 친화적인 정의와 아동권리(Child-friendly Justice and Children's Rights)	29	형사절차 및 피해자의 권리(Procedural Safeguards in Criminal Proceedings and Victims' Rights)
8	인신매매 근절(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30	부당대우 금지(Prohibition of Ill-Treatment)
9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방지를 위한 유럽평의회 위원회(Council of Europe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PT) 표준(CPT Standards)	31	언론인 보호 및 안전(Protection and Safety of Journalists)
10	사이버 범죄 및 전자 증거(Cybercrime and Electronic Evidence)	32	재산권과 유럽인권협약(Property Rights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1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권리(Data Protection and Privacy Rights)	33	극단·급진주의 방지(테러리즘, 극단주의적 폭력, 혐오 등)(Radicalisation Prevention)
12	판사, 검사 및 변호사를 위한 윤리(Ethic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34	난민 및 이주 아동(Refugee and Migrant Children)
13	가정법과 인권(Family Law and Human	35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유럽인권협약

15) HELP의 과정을 표로 재구성

연번	과정명	연번	과정명
	Rights)		제5조(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 Article 5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4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대항하기(Fight Against Racism, Xenophobia, Homophobia and Transphobia)	36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생명윤리) (Right to the Integrity of the Person (Bioethics))
15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37	가족 및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유럽인권협약 제8조(Right to Respect for Family and Private Life –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6	대테러 사건의 증거 수집 및 활용(Gathering and Use of Evidence in Counter Terrorism Cases)	38	장애인의 권리(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7	혐오범죄 및 혐오표현(Hate Crime and Hate Speech)	39	환경과 인권(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18	스포츠에서의 인권(Human Rights in Sport)	40	과도기적 정의와 인권(Transitional Justice and Human Rights)
19	분쟁, 폭력, 재해 등으로 인한 내부 이주민 (Internal Displacement)	41	이주아동 및 난민아동의 성인으로의 전환(Transition of Migrant and Refugee Children to Adulthood)
20	형사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riminal Matters)	42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21	유럽의 인권보호 체계와 유럽인권재판소 EU 기본권 헌장의 상호작용(Interplay Between the ECHR and the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43	법집행기관이 알아야 할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for Law Enforcement)
22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 소개 (Introduct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나) HELP의 추가 모듈

- HELP 과정 중 인권으로서 노동과정은 총 9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음. 인권으로서 노동 과정이 처음 게시된 것은 2017년이지만 9번째 모듈인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모듈이 추가된 것은 2021년임.
- 유럽 평의회에 ‘인신매매 반대 행동에 관한 협약’(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에 따른 이행 모니터링 그룹인 GREAT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했고,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HELP의 인권으로서 노동과정의 새로운 모듈이 추가된 것임. HELP의 이러한 모듈 추가 방법은 HELP의 확장성, 시의성 등을 보여주는 사례임.

〈표 15〉 참고자료 과정 개발¹⁶⁾

1	소개	6	평등과 비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권의 진화 · 유럽보호체계 하의 노동 · 유럽사회현장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금지과 관련된 일반적인 측면 · 고용차별 퇴치 · 권리보호
2	일할 권리와 고용관계	7	집단노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할 권리 · 정당한 근무조건에 대한 권리 · 직장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및 상담에 대한 권리 · 결사의 자유 ·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 · 노동쟁의 및 단체 행동
3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8	산업안전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프레임워크 ·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 휴식시간 · 근무시간 휴식시간 및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 및 규제체계 · 산업재해/질병 및 피해자를 위한 절차적 보호조치 · 산업보건서비스
4	공정한 보상 및 임금보호	9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생활수준 · 임금에서 공제 · 파산 시 보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및 관련 개념 · 주요행위자 · 피해자 식별 ·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 수사, 기소 및 재판 · 기업의 책임
5	노동계약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에 대한 절차적 의무 · 해고사유 · 불법해고의 결과 		

4) HELP의 개발과정

- HELP 과정은 HELP 개발 방법론에 따라 유럽 평의회의 각 부서와 공동으로 개발됨. 예를 들어 ‘생물의학의 핵심 인권 원칙 과정’은 유럽 평의회 생명윤리 부서와 공동으로 개발한 과

16) 16809e2a3d (coe.int)

정임.

- 유럽평의회(회의)의 각 부서 이외에도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민주 기구 및 인권 사무소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DIHR),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등 인권 관련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HELP 과정 개발에,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음.

5) HELP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

- HELP 과정은 자율학습 과정(Selfstudy courses)과 개인 지도 과정(Tutored courses)으로 운영할 수 있음. 자율학습 과정은 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습을 위한 것으로 HELP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정을 생성하여 로그인하면 누구나 무제한으로 학습할 수 있음.
- 개인지도과정은 국가 파트너 기관(일반적으로는 법률 전문가를 위한 국가 교육기관)과 HELP 사무국이 협력하여 구성하는 과정으로 HELP 사무국에서 인증받은 튜터가 진행함.

다. 유럽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 및 연구센터 인권교육

- 공공분야 직무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¹⁷⁾

1) 유럽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 및 연구센터

- 유럽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 및 연구센터(Das Europäische Trainings-und Forschungszentrum für Menschenrechte und Demokratie, ETC, 이하 훈련 및 연구센터)는 1999년 오스트리아 그라츠시에 협회의 형태로 설립됨. 훈련 및 연구센터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편으로는 연구를 통해 인권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적인 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지역(local) 및 권역(regional) 범위에서 어떻게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하고 구현할 수 있을지 연구/실천하고 있는 기관임.
- 훈련 및 연구센터는 지역에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크게 지방정부의 인권 프로세스에 대한 컨설팅, 인권교육, 인권 관련 연구의 세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교육 콘텐츠, 교육 과정 개발 등의 '연구'와 적극적인 훈련으로서의 '인권교육'을 통해, 지역 및 커뮤니티

17) <https://www.etc-graz.eu/aktivitaten/bildung/>

티의 차별 및 인종주의에 맞서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려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있음.

2) 훈련 및 연구센터(ETC)가 지향하는 인권교육의 목적

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및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구현

-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순위로 지역의 인권증진 및 이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인권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이로써 우선적인 교육 참여자 범주를 정부(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공공의 업무와 활동을 하는 직무군을 특별히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나) 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시민성 강화와 인권 옹호

- 훈련 및 연구센터는 “인권 학습”은 한편으로는 인권을 위한 그리고 인권에 대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이에 기반해 인권에 대한 인식 및 관점과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며, 이를 인권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으로 축적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음. 결국 훈련 및 연구센터가 지향하는 적극적인 훈련으로서의 인권교육은 학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습자의 시민성을 강화하고 인권을 옹호하도록 지원(Empowering)하는 것임.

3) 훈련 및 연구센터(ETC)의 인권교육의 특징

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 지원

- 훈련 및 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은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함. 예를 들어, 인권 문제에 관한 또는 쟁점이 되는 인권 관련 주제로 세미나와 워크숍을 제공하는데, 이는 학습자가 원하는 심층적인 정도에 따라 개요 정도를 제공하거나,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원할 때는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촉진하는 과정으로 지원함.

나) 인권증진 관련 직무 관련자 과정의 기획과 운영

- 훈련 및 연구센터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및 인권교육과 같은 주제를 다루며,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교육과정, 강의, 토론식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런 광범위한 교육활동의 내용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타이어마르크 교육대학교(Pädagogische Hochschule Steiermark)의 교육 연구기관 등 다른 기관과도 협력함.

4) 인권교육 주요 학습자군에 따른 콘텐츠

- 훈련 및 연구센터는 특히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공업무 및 활동과 관련된 직무군 예컨대 사법부, 경찰, 행정, 교사 및 보건의로 종사자 등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심화 교육을 기획하여 지원하고 있음.
- 훈련 및 연구센터의 주요 인권교육 지원은 공공업무 및 활동 관련 직업군/직무군별 특화된 인권교육과 학교 및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가) 공공업무 및 활동 관련 직업군/직무군별 특화된 인권교육

- 일부 사람들의 직업적 지위는 인권 존중과 보호에 대한 인식을 특별히 강화할 것이 요구됨. 여기에는 예컨대 교사, 판사, 판사 후보군, 공공기관의 행정 직원, 의료 종사자, 경찰관, 교도관, 직장 평의원, 비정부(NGO)기구 직원 및 트레이너와 같은 전문 그룹이 포함됨. 훈련 및 연구센터는 앞에 열거한 직(무)군의 활동을 특별히 지원함.
- 공공업무 및 활동 관련 직업군/직무군 활동 지원의 목표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인권교육의 확대재생산자를 양성하고, 최상의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것임.
- 원래 인권은 국가의 전능한 권력에 맞서 개인을 방어하는 권리였음. 따라서 인권교육은 원래 시민의 인권보장의 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즉 입법부, 행정부 또는 사법부와 같은 국가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인권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왔음. 이 대상 그룹에 대한 인권교육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직무의 인권적 의미에 기반해 시민과의 접촉에서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임(Philipp, S., 2017 : 7). 이 점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원의 교육 대상 선정과 운영에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나) 학교 및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성 형성/발달, 인식 제고/감수성, 연대를 위한 권한 부여 및 지도를 포함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교육은 지식 전달, 기술 및 능력 개발, 태도 형성 및 학습자의 실천 의지 강화를 포함하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됨. 인권교육에서 충족해야 할 광범위한 목표로 인해 일반적으로 다양한 방법의 조합과 그에 따른 기획이 있음(Philipp, S. 2017 : 13).
- 이에 따른 학교 및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성인을 위한 인권교육과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으로 나누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원하고 있음.

● 성인을 위한 인권교육¹⁸⁾

○ "내가 한마디 말만 했더라면!"(Hätte ich doch was gesagt!)

- 워크숍 형식이며 반복되어 주제로 올라오는 슬로건에 대한 전략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임 : 1일 워크숍은 역할극과 그룹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적절한 전략으로 전형적이며
반복되는 테이블 슬로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권, 비폭력, 존중의 편에 설 수 있
도록 교육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함.

○ "외면하지 마라!"(Schau nicht weg!)

- 워크숍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임 : 청소년과 함께 반인종주의적 인권 교육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방법론 관련 워크숍 및 교수법 관련 워크숍은 교사와 청소년 관련 활동가를 대
상으로 진행함.

○ "배는 만선이다!"(Das Boot ist voll)

- 워크숍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임 : 참가자는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 과정을 경험하고 미리
정의된 역할 카드(남성/여성, 다수 또는 소수자 인구 구성원, 교육, 연령, 장애)를 선택하
여, 이에 대해 감수성(인권문해력)을 기반으로 인식하도록 함.

○ "인권산책"(Menschenrechtsspaziergang)

- 현장 탐방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임 : 인권 도시 그라츠시에서는 인권과 관련하여 역사적
또는 현대사적으로 의미 있는 경로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참여자들은 관련된 상황을 체
험하게 되며 그리고 인권적으로 유의미한 잘 알려진 장소, 건물 또는 기념비 등이 함의
하고 있는 서사를 체득하게 함.

● 학교에서의 인권교육¹⁹⁾

○ 인권 1948/1958 ~ 공화국과 인권

- "학교에서의 인권"은 학교에 특화된 프로젝트로 진행됨. 이 프로젝트는 2017년 11월

18) <https://www.etc-graz.eu/aktivitaten/bildung/>

부터 2018년 10월까지 “8주년” 기념의 하나로 기획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학교에 인권교육을 지원했음. (지식의) 확대재생산자로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한 다양한 행사들은 학교의 영역에서 모든 학교 유형과 모든 학년(학습자의 모든 수준 포괄)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심화시킴.

- 아웃리치(Outreach) 프로젝트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6개의 학습 모듈 형태의 자료 제공 및 학교에서 수반되는 워크숍 진행을 포함함. 구체적으로 아웃리치 프로젝트는 현재 다루고 있는(논의 중인) 모듈 주제에 대한 학교에서의 인권 프로젝트 실현, 6개의 학습 모듈에서 교사를 교육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심포지엄에서 결과의 공개 발표 및 프로젝트 웹사이트 안착 등의 순으로 진행됨.

○ "우리의 인권학교"(Unsere Menschenrechtsschule)

- ‘우리의 인권학교’(Unsere Menschenrechtsschule) 프로젝트는 훈련 및 교육센터(ETC)가 스타이어마르크주(Land Steiermark)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시 및 주정부 차원의 학교 교육청, 그라츠시 및 교사양성 대학인 스타이어마르크주 교육대학(Pädagogische Hochschule Steiermark)과 협력하여 진행함. 이 프로젝트는 스타이어마르크주 가이도르프(Geidorf)의 그라처(Grazer)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된 파일럿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발됨. 현재 스타이어마르크주 내 10개의 초등학교(Volksschule)를 확산학교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인권학교과정에는 학교의 자발적인 노력(Selbstverpflichtung), 요구 사항 평가, 컨설팅 및 모든 학교(이해) 관계자를 위한 맞춤형 참여 워크숍이 포함됨²⁰⁾.

○ 대학교에서의 세미나 등 수업

- 그라츠시의 칼-프란젠 대학교(Karl-Franzens Universität)는 인권 관련해 여러 영역의 주제들을 함께 엮어 교육과정으로 "인권입문"을 운영하고 있음. 이 과정은 학생과 기타 이해 당사자들에게 인권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할 기회를 제공함.

19) <https://menschenrechtsschule.at/>

20) <https://menschenrechtsschule.at/>

라. 스웨덴 라울발렌베리연구소 인권교육

- 라울발렌베리연구소의 리더십 과정²¹⁾

1) 라울발렌베리연구소와 인권교육

가) 라울발렌베리연구소 소개

- 라울발렌베리연구소(Raoul Wallenberg Institute, RWI)는 근거기반(evidence_based)한 인권 콘텐츠 연구와 주요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직접적인 참여를 결합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 증진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고자 하는 연구기관임. 본 연구소는 세계 여러 지역의 학술 기관, 국제기구, 정부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주요 파트너로 네트워크 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 40개국에서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나) 라울발렌베리연구소 역할

- 1995년부터 라울발렌베리연구소는 국가인권기구의 기본 운영 및 인권 관련 지식적 역량을 보장하는 기초단계에서부터 국제 인증으로 이어지는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역량까지, 기관의 전 영역에 초점을 맞춘 국가인권기구의 역량구축을 위한 고유한 모델을 개발함. 이로써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인권기구(NHRIs)의 인권 역량, 기구 운용 및 기능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이들이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주요 사업 영역과 내용

- 인권교육 : 현재와 미래의 주요 인권 이슈 및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해당 의사 결정자에게 교육하고 제공함.
- 인권 관련 연구와 분석 : 주요 인권 관련 현안을 이해하기 위해 진보적인 관점의 정책 지향적 연구 및 분석을 제공함.
- 인권포럼 : 정책 입안자, 인권 분야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시민 사회의 활동가들과 네트워킹 하여 인권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 중심의 집단지성 발현을 통해 집단적인 변화를 불러옴.
- 직접 참여 : 인권의 실질적인 적용과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 인권 관련 파트너와 함께 인권의 실천적 이행에 직접 참여함.

21) <https://rwi.lu.se/what-we-do/academic-activities/>
<https://rwi.lu.se/hr-education-belar>
https://rwi.lu.se/human_rights_institutions/

2) 라울발렌베리연구소의 인권교육 목적

- 라울발렌베리연구소는 인권교육 및 훈련이 모든 사람의 인권 증진과 보호, 그것의 효과적인 실현에 기여하는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음.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태도와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한편 의무 수행자(Duty-bearer)는 자신의 인권 존중, 보호 의무를 인식하고 이행할 수 있는 태도와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기반한 라울발렌베리연구소의 인권교육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 닥칠 다양한 인권 이슈 및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리더로서 의사결정자와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것임. 따라서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현재의 의사결정자와 미래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기관인 대학, 정부, 사법기관 등과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음.

3) 인권교육의 특징

- 라울발렌베리연구소의 인권교육의 특징은 학습자 대상이 리더십 그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임. 의사결정자 배출과 미래의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기관에 대한 지원에 중점.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대학에 관련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지원함.

가) 룬드대학교의 석사과정 개설과 지원

- 룬드대학교(Lund University) 법학부는 스웨덴 및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국제인권법 석사 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동종 최초의 국제법 프로그램 중 하나임. 20여 년 동안 2년제 석사과정 프로그램은 2000여 명 이상을 배출하였고 인권 및 인도주의법 분야의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를 위한 지식, 기술 및 역량 개발을 위한 핵심 교육의 통로였음.
- 배출된 졸업생들은 유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가인권기구(NHRIs), 정부를 포함한 가장 중요한 국제, 권역(regional) 및 국가인권기구에서 일하거나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음.

나) 전 세계의 학계의 인권교육 네트워크

-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소의 포괄적인 업무와 활동에는 인권교육을 기획하고 프로그램화하여 전달하는 것과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기관 및 독립적인 인권 센터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됨. 세계 전역에 인권교육 과정, 프로그램, 연구 및 자원(resource) 센터, 아시아,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전 세계 학술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참여함.

4) 주요 인권교육 내용

-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인권 훈련, 인권 관련 정보, 인권 인식 제고 및 학습 활동을 포괄함.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 수단이자 목표임. 라울 발렌베리연구소의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 및 영역을 포함함.

가) 일반적인 교육내용 및 방법

- 인권 규범과 원칙, 이를 뒷받침하는 가치, 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인권에 관한 교육
-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는 인권을 통한 교육
-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Empowering)하는 것을 포함하는 인권교육

나) 특정 분야에서의 인권 주류화(벨로루시의 사례)

- 라울발렌베리연구소는 학계 및 학생들과 협력하여 인권교육 과정의 질을 높이고, 법률 교육 과정에서 인권을 주류화하고, 젠더 또는 임상법률교육에 대한 특정 과정을 개설 운영함. 또한 두 개의 벨로루시 학부에서 수행된 첫 번째 젠더 계획 및 젠더 감사(audits)의 개발을 촉진함.

● 벨로루시 최초의 법과 젠더 과정

- 라울발렌베리연구소는 교육과정에 젠더 이슈를 통합하면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젠더 관련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이를 위해 벨로루시 학자 및 학생들과의 협력으로 젠더, 성평등 및 젠더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젠더 평등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각의 입법 프레임워크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9개의 교육과정을 기획함. 이 교육과정은 법률, 사회학, 정치, 경제, 심리학, 범죄학 환경에서 젠더 연계를 논의하는 벨로루시 대학교의 여러 학부에서 개설되어 진행함.

● 법률 클리닉 업무에 인권 영역 통합

- 임상 법률교육(CLE)은 국제 사회에서 교사, 학생 및 대학을 참여시키는 강력한 교육학적 및 참여 방법임. 라울발렌베리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정의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인 임상 법률교육을 지원하고 양성함.

- 주로 법률 클리닉은 인권이 침해된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상담과 인권 문제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을 증진·보호하는 데 경험을 축적함.
- 이 클리닉은 내용적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법률정보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지도·지원하는 법률 클리닉 업무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는 것임. 또 다른 확장 영역은 법제 개선 및 법의 실제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사례를 작업할 때 비정부/비영리 조직과 협력하는 것임.

● **교육기관에서의 젠더 계획 및 젠더 감사**

- 젠더 계획 및 젠더 감사(gender audits)²²⁾는 교육기관 전체에 젠더 인식을 높이는 도구임. 지원하는 환경에서 관련 과정을 가르치고 관리자, 기록 매체를 관리하는 전문가 및 동료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함.
- 라울발렌베리연구소는 젠더 계획 및 젠더 감사가 또한 기관에서 성평등 교육 및 연구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고 전제하면서 벨로루시의 두 학부와 협력하여 젠더 통계 및 데이터 수집 능력을 향상하고 성 주류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조직적인 학습을 촉진함.

마. 덴마크인권연구소 인권교육

- ‘국가인권기구 직무자 과정’²³⁾ 운영

1) 덴마크인권연구소의 인권교육 관련 역할

가) 국가 정책 추진을 촉진

- 덴마크의 국가인권기구인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DIHR)는 기존의 교육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통합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정부기구(GO), 비정부기구(NGO) 및 활동가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이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 추진을 촉진함.
- 여기에는 정규 및 비정규 교육시스템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교사, 경찰관, 의료 관련 종사자 등의 교육이 포함됨.

22)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의사결정구조, 조직문화, 사업(인사)의 절차 및 예산의 제공을 포함해서 조직 또는 기관의 성평등이 제도화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직원의 인식, 이해도, 행동 등을 수집, 젠더 평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프로세스임.

23) <https://www.humanrights.dk/our-work/human-rights-education>

나) 효과적인 학습 및 훈련

- 덴마크인권연구소는 온라인 학습 허브(online learning hub)를 통해 6개 언어로 접근할 수 있는 무료 학습자료를 지속해서 개발 및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 효과를 문서화하는 도구를 적용하고 있음.
- 현재까지의 연구경험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기관, 국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인권 실무자에게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함.

다) 일반적인 교육내용 및 방법 인권교육 의제 설정

- 덴마크인권연구소는 UN과 교육프로그램 개발기관,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s), 교육가 및 교육활동가에게 영향을 주어 인권 교육의 규범적 틀을 강화함. 특히 정책 관련 소통, 모범 사례 제시, 인권 교육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 수집 강화를 통해 이를 실현함.

2) 온라인 교육과정 소개

가) 온라인 인권교육 과정 기획의 배경

- 해당 과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European Initiativ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EIDHR)가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역량구축 프로젝트의 일부로 개발되었으며, 국제 국가인권기구 연합(GANHRI)을 대신하여 덴마크 인권연구소에서 수행하였음.
- 해당 과정은 이 프로젝트의 4개의 과정(모니터링 및 보고, 인권교육, 「기업과 인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중 하나임.

나) 교육 과정의 목표

- 이 프로젝트의 목적 중 하나는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UN 파리원칙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임.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가 정규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정규교육 시스템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당국과 교류, 협력함.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과정에 정규교육 부문의 공식 커리큘럼에서 인권교육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모듈을 구성함.

다) 과정의 학습대상 그룹

- 대상그룹은 국가인권기구(NHRIs)에서 일하는 실무자임. 전세계적으로 100개가 넘는 국가 인권기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그룹이 광범위함.

라) 모듈형 과정의 구성

- '온라인 학습 허브'에 모듈형으로 탑재되어 있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권교육의 기초, 국가인권기구(NHRI)의 역할, 인권교육의 바탕이 되는 교육의 범위와 질의 기준을 문서화하는 기초연구(Baseline study)

● 섹션1. 인권교육의 기초

- 이 모듈은 인권교육을 정의하는 것, 국제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교육의 다양한 대상 그룹에 대해 학습함. 또한 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국제 및 지역(regional) 문서를 탐구하게 함.
 - ☞ 모듈 내용 구성 : 인권교육의 정의, 인권교육의 차원(지식, 기술, 태도), 권리주체 및 의무 수행자,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가인권기구(NHRI)의 역할과 권한, 인권교육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이유와 방법,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국가인권기구의 경험 등

● 섹션2.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이 모듈은 인권교육을 위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국가인권기구(NHRI)가 취할 수 있는 고유한 지위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됨. 이는 국가인권기구가 정규로 실시하는 공식적인 교육 분야에서 인권교육을 할 때, 기구의 고유한 지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하고 심화함.
 - ☞ 모듈 내용 구성 : 국가인권기구(NHRIs)의 역할 소개/위임영역 및 인권교육/교육 구조 (정책 및 커리큘럼)에 미치는 영향

● 섹션3. 기초연구(Baseline Study)

- 이 모듈은, 기초연구 또는 추진계획을 기획하여 정규교육 부문의 학교 교육 또는 다른 부문에서 인권교육의 범위와 질을 문서화하여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NHRIs)가 인권교육의 국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배우게 됨.

바. 캐나다 에퀴타스 인권교육

- '인권옹호자 교육자 중심의 글로벌 범위의 인권교육'²⁴⁾

1) 에퀴타스 기관 소개

- 에퀴타스(Equitas)는 세계인권선언의 공동입안자인 존 험프리(John P. Humphry) 등을 중심으로 1967년 캐나다에 설립된 인권교육기관임.
-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출판,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툴의 개발, 인권교육가 및 인권교육활동가의 역량 강화 훈련, 인권옹호자 네트워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2) 에퀴타스의 인권교육 접근법

- 에퀴타스는 인권교육을 개인에게서 출발해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음.
- 에퀴타스는 사회변화를 위해 인권 기반 접근방식, 젠더 기반 및 교차적 접근 방식을 통해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구조적 차별, 배제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인권교육 활동을 지원함.

● 에퀴타스 인권교육의 전략적 계획

- 에퀴타스의 인권교육은 참여적 인권교육(HRE), 인권 기반 접근방식(HRBA), 젠더 기반 분석(GEP)이라는 전략적 요소를 결합해 인권교육 학습자들이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 학습 후에 인권을 옹호하는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경험학습 유형의 교육을 제공함.

● 변화/개선의 원칙

- 에퀴타스는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 사회에서 특별히 차별, 배제, 기타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룹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도구와 접근방식을 개선하고 있음.

● 인권에 기반한 접근

- 에퀴타스는 인권 기반 접근 방식(HRBA)이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개발과 사회 변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면서 다음과 같은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24) <https://equitas.org>

- 인권 기반 접근방식에 따르면 변화 발전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권의 실현과 동일시됨.
- 인권 기반 접근방식은 국제인권기준에 기반한 인권 증진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인권 기반 접근방식은 발전을 인간의 발달과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봄.
- 인권 기반 접근방식은 결과와 더불어 과정을 중시하여, 전체적이고 참여적이며 책임 있는 프로세스를 강조함.
- 인권 기반 접근방식은 권리 보유자와 의무 보유자 그리고 역량을 변별하여 바라봄.
- 인권 기반 접근방식은 성평등을 향한 진전을 강화함.

● 성평등 정책

- 에퀴타스는 (성)폭력, 괴롭힘, 차별이 없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자 함.

3) 인권교육 훈련 및 학습프로그램

가) 대면교육

● 국제인권 훈련프로그램(International Human Rights Training Programm)²⁵⁾

- 이 프로그램은 인권교육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방법 등 기술을 학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기존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직무에서의 실효성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Tool)를 제공함.

● 동아프리카 인권프로그램(EAHRP), 서아프리카 지역인권훈련세션(SRFDH)

- 이 프로그램은 시민사회단체, 정부 기관 및 기관의 활동가, 인권옹호자, 시민사회 활동가 및 교육자들이 인권의 이해와 인권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에퀴타스에서 지원하는 지역 인권 훈련 프로그램임. 즉,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성평등과 인권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지역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25) <https://equitas.org/learn/international-human-rights-training-program/>

나) 온라인 교육²⁶⁾

● 디지털 안전교육과정(Digital Security Online Course)

- 이 과정은 디지털 보안이 특히 인권옹호자들의 업무에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위협에 인권옹호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과정은 디지털 보안 원칙, 관행 및 기술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정보와 온라인 활동을 보호하는 등 디지털 보안에 대한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함. 이 과정은 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듈을 완료하는 데 약 50분이 소요됨.

● 글로벌 권리 커넥션(Global Rights Connection)

- 이 과정은 학습자가 인권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인권교육자들이 인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업무의 효율성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용적인 도구(Tool)를 제공함.
- 또한 이 프로그램은 인권교육자들이 가상의 참여 공간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접근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서 기능을 함.

● 세상을 권리로 바꾸시오(Put the World to Rights)

- 이 과정은 인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세계인권선언, 인권의 기본 원칙 그리고 국제 인권 시스템에 대해 학습함. 또한 인권 현안에 대해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모색하게 함.
- 이 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은 전 세계의 다른 학습자와 교류하고, 인권 현안이나 쟁점에 관해 토론할 수 있음. 이 과정은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듈을 완료하는 데 약 2시간 정도 소요됨.

26) <https://equitas.org/learn/international-human-rights-training-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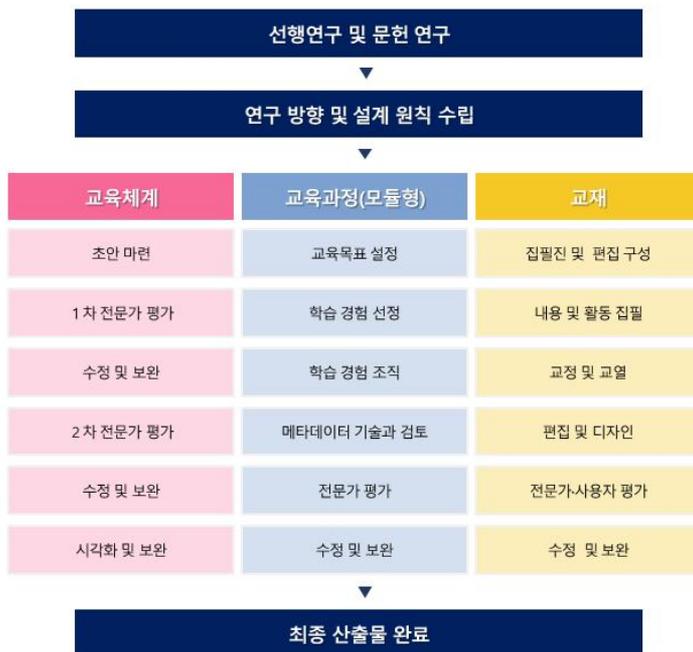
III

연구조사 결과

Ⅲ | 연구조사 결과

1 연구진행 프로세스 및 운영체계

가. 연구의 주요 프로세스



COPYRIGHT © 2023 (사)인권정책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그림 21] 설계·개발연구의 주요 흐름

1)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

- 국내 선행연구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콘텐츠 목록조사, 국제인권교육 기준, 해외 주요 인권기구 및 교육 연구기관의 인권교육 과정 및 콘텐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2) 연구 방향 및 설계 원칙 수립

- 전체 연구 방향과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모듈형) 설계, 기본교재 개발 원칙을 수립함.

3) 과제별 연구 진행

- 교육체계 체계구축은 초안 마련, 1차 전문가 검토 및 수정·보완, 2차 전문가 검토 및 수정·보완으로 진행함.
- 교육과정(모듈형) 설계는 과정별 교육목표 설정, 학습 경험 선정 및 조직, 메타데이터 기술과 검토, 전문가 평가 및 수정 보완으로 진행함.
- 교재 개발은 집필진 및 형식 구성, 내용 집필, 교정 및 교열, 전문가 및 사용자 검토, 수정 및 보완으로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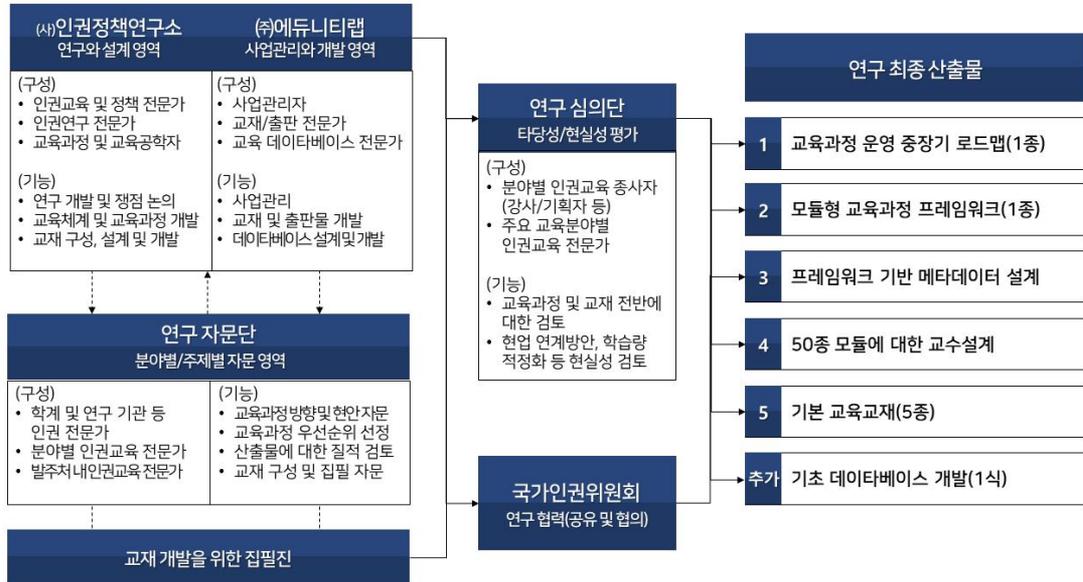
4) 최종 산출물 완료

-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최종 산출물을 완료함.

나. 연구조사 운영 체계

1) 연구 및 개발 운영 체계

- 연구 및 개발 운영 체계는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진, 분야별 및 주제별 인권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교재 개발을 위한 집필진 그리고 교육과정 및 교재 전반에 대한 타당성/현실성 검토와 평가를 하는 연구 심의단으로 구성되어 운영됨.
- 특히 최종 산출물의 경우 기본 교재 3종을 과업 요청보다 추가 산출하였고, 기초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개발은 과업 요청에는 없었지만, 추가 산출함.



COPYRIGHT © 2023 (사)인권정책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그림 22] 연구·조사 운영체계도

가) 연구와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연구진

(1) 연구진 구성

- 연구와 설계 영역
- 인권교육 및 정책 전문가
- 인권교육 전문가
- 교육과정 및 교육공학자
- 사업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영역
- 사업관리자
- 교재 및 출판 전문가
-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개발

(2) 연구진의 역할

- 연구와 설계 영역

- 연구 설계 및 쟁점 논의
-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개발
- 교재 구성, 설계 및 개발
- 사업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영역
- 사업관리
- 교재 및 출판물 개발
-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개발

나) 자문단

(1) 자문단 구성

- 본 연구진은 연구 산출물의 질적 담보와 성과 향상을 위해 학계 및 연구 기관 등 주제별 전문가, 주요 교육 분야별 인권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단’회의를 운영함.

(2) 자문단의 역할

- 교육과정 방향 및 현안 자문
- 본 연구진은 연구 산출물의 질적 담보와 성과 향상을 위해 학계 및 연구 기관 등 주제별 전문가, 주요 교육 분야별 인권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자문

다) 집필진

(1) 집필진 구성

- 집필진은 기본 교재(인권의 이해, 장애인과 인권, 노인과 인권, 대학인권센터, 「기업과 인권」) 생산을 위한 해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함.

(2) 집필진의 역할

- 기본 교재(인권의 이해, 장애인과 인권, 노인과 인권, 대학인권센터, 「기업과 인권」)의 모듈형 콘텐츠 생산 및 집필

라) 연구심의 및 연구 협력

- 본 연구진은 연구산출물의 타당성 확보와 현실성 검토를 위해 현실 분야별 사용자 및 인권

교육 관계로 구성된 ‘연구 심의단’을 조직하고 운영함.

마) 연구 공유체계

- 본 사업의 원활한 연구수행과 성과향상을 위해 연구진과 발주처의 정기·수시 회의, 정례 회의, 결과보고회 등 ‘연구 공유체계’ 를 조직하고 운영함.

2) 연구 최종 산출물

- 교육과정 운영 증장기 로드맵(1종)
-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1종)
- 프레임워크 기반 메타데이터 설계
- 50종 모듈에 대한 교수설계
- 기본 교재(4개 과정 50종 모듈)
- 기초 데이터베이스 개발(1식)

2 기존 교육과정 점검 결과

가. 국가인권위원회 개설 과정 목록 분류

1) 교육과정의 구분

- ‘인권강사과정’, ‘인권감수성향상과정’과 ‘전문교육과정’ ‘법정의무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육의 성격에 따라 기본/심화, 직무/리더십/교육전문가 등 변별성을 갖추고 있음.

〈표 16〉 교육과정 구분 및 과정 특징

과정 구분		과정 설명
인권강사과정	인권강사 양성과정	인권교육 분야별로 인권보호 역량을 보유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권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과정
	인권강사 역량강화 과정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인권교육 분야별로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등을 통하여 인권의식을 증진하고 인권감수성을 향상하는 과정
전문교육과정	인권직무과정	인권교육 분야별로 인권에 기반한 업무추진 방안 등 직무교육을 통하여 인권의식을 증진하고 전문성을 향상하는 과정
	인권리더십과정	
	교육전문가과정	
법정의무과정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을 위원회가 운영하기로 정하여 실시하는 인권교육 과정

2) 교육 대상의 구분

- 교육대상은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영역으로 구분하며, 인권과 인권교육 분야별 교육대상을 특정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표 17〉 분야별 교육 대상

구분	분야	대상(최근 3년)
공공영역	국가기관, 군·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 인권업무자 · 국가공무원 근로감독관 · 경찰 내부 인권강사 · 경찰 국가수사본부

구분	분야	대상(최근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인권교관 · 군 영관급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자 ·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 지방자치단체 인권조사관 · 지역인권기구 인권위원 · 지방의회 의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관리자 · 인권경영 담당자
시민영역	구금 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시설 인권교육 강사 ·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및 관리자 · 노숙인 시설 종사자 · 노인 복지시설 인권교육 강사
	장애인, 노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기업, 언론, 사회복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인권교육전문가 · 노인 인권교육가 · 인권강사 · 인권교육활동가 · 인권 상담가(이주민) · 보건의료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관리자 ·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가 · 노인 복지시설 인권교육가 · 언론인 · 스포츠지도자
학교영역	영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관리자(교장/교감) · 교사 · 학교 교직원 · 대학인권센터 · 대학인권센터장 · 교육청 학생인권 담당자

3) 교육과정의 구성

- 교육과정은 분야와 대상, 교육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
- 교육과정 구성요소는 과정명, 과정 소개, 교육목표, 교육 대상, 교육구조,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교육 방법, 운영형태, 교육 내용, 추진 근거, 운영시 고려해야 할 점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

〈표 18〉 과정 개요 신규대조의 예시

항목	현행	수정안
과정명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인권역량과정	지방자치단체 인권조사 역량강화과정
과정 소개	-	지자체 인권조사 사례공유를 통한 인권적인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한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인권조사 사례공유를 통한 인권 친화적인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한 직무 역량 강화 · 지자체 인권보호관 교류 협력망 형성과 강화 	<p>(지식) 학습자는 지자체 인권구제제도 의미와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p> <p>(기능) 학습자는 자신의 전문적 역할 내에서 인권 가치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p> <p>(태도) 학습자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책임을 갖는다.</p>
교육 대상	지자체(교육청 포함) 인권보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조사 업무자 ·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인권보호관
교육 시간	3일(20H)	3일(18H)
교육 인원	50명	40명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열기(1H) · 인권현장 탐방(3H) · 인권의 이해(3H) · 인권조사 업무의 이해(3H) · 지자체 인권침해 사례공유와 토론(4H) · 지자체 진정사건 처리 실습(3H) · 2022인권 이슈(2H) · 평가 및 설문(1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열기(1H) · 인권의 이해(3H) · 지방정부 인권보장체계: 이해와 실제 중심으로 (2H) · 지방정부 인권구제업무의 의미와 역할: 사례 훈련 중심으로(3H) · 인권구제업무 매뉴얼(3H) · 인권이슈 특강(3H) · 내 업무의 중장기 로드맵 세우기(2H) · 마무리 활동(1H)
교육 방법	강의, 현장답사, 실습 등	강의, 토론, 사례분석 등
운영형태	집합교육	집합교육
추진 근거	-	광역시자체 인권기본조례에 따름
운영 시 고려할 점	-	- 인권이슈 특강으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 관련 내용과 이주민 관련 특강이 필요함

4) 교육과정 구성요소 개선

- 교육목표의 조정 및 상세화 : 기존 교육목표에서 교육의 방향을 포함하여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인권교육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지식/기능/태도를 상세화하여 제시함.
- 교육 대상은 직이 아닌 직무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주 대상자와 예비 대상자를 포함하여 작성함.

- 교육 시간은 현장의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3일 과정(18H), 2일 과정(12H)으로 일과 소요 시간을 병기 표기함.
- 교육 인원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적정인원을 표기함.
- 교육 내용은 시간과 함께 표기하고, 교육의 세부 내용은 모듈에서 제시함.
- 교육 방법은 본 교육과정에서 활용하는 주 교육 방법을 표기함.
- 운영형태는 기존의 교육방식으로 기술하던 항목을 '운영형태'로 수정하여 집합교육/원격교육/혼합교육으로 운영형태를 구분하여 제시함.
- 추진 근거 항목을 신설함.
- 운영 시 고려할 점을 추가하고, 운영과정이나 교육 내용의 특이점 등을 기술함.

나. 주요 12개 과정 운영 현황과 의미²⁷⁾

- 전문가 집단은 인권이 무엇인지 뿐만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 상황에서 이러한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함. 따라서 교육 내용은 특정 직업으로 인하여 접할 수 있는 인권 쟁점 등을 바탕으로 해당 전문가 집단의 기능이 무엇이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전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인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1) 인권강사 양성과정

가)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 근거

- 인권교육 실행을 위해 교육자 훈련의 중요성은 UN을 비롯한 국제적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며, UN인권훈련선언,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1차~4차) 등을 통해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국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375호)에 따라 분야별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²⁸⁾(서울시, 전라북도, 제주 등)에

27) 국가인권위원회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결과보고서를 분석함.

28) 광역지자체의 경우 2019년 1월 인천광역시 인권조례가 시행되며 17개 광역 지자체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음(2023. 8월 기준)

따라,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²⁹⁾ 등을 근거로 실시 운영되고 있음.

- 「정신건강복지법」, 「노숙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법정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지자체 조례에 명시된 인권교육 등을 고려하면, 인권교육의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

(2) 필요성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교육 전반을 설계하고 전 국가적 차원의 인권교육을 견인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 각 지자체 및 각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강사양성에 있어 무자격 인권교육 강사가 무분별하게 양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과 양질의 인권교육 강사의 발굴·양성에 필요한 영역에 지원이 필요함(김은희 외, 2021).

나) 교육과정 운영 현황

(1) 과정의 구분

- ‘인권강사 과정’은 교육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된 [인권강사 양성과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촉강사를 대상으로 한 [위촉인권강사 역량 강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과정명	교육대상
인권강사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 선발시험 합격자
	위촉인권강사 역량 강화 과정	국가인권위원회 위촉강사

(2) 운영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부터 행정·교정·군·경찰·이주(출입국) 분야 및 정신장애인 분야로 나뉘어 인권강사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위촉제도를 도입하여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강사양성 분야는 해마다 변경되기도 하였지만, 인권교육 분야에 맞추어 장애인, 노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기업 및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강사양성 과정을 개설·운영 중임.

29) 17개 광역 지자체 중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로 총 7곳.

구분		2022년 실적			2023년 계획		
		회수	총인원	연인원	회수	총인원	연인원
인권 강사	인권강사 소계	46	1,564	2,102	37	1,600	2,150
	위촉인권강사 양성과정	8	268	806	8	300	850
	위촉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38	1,296	1,296	29	1,300	1,300

- 기본과정은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인권 지식을 다루고, 전문과정은 분야별, 지역별 특성 및 주요 현안 이해와 활용을 다루며, 심화 과정은 교수법과 관련된 내용과 시연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교육과정의 구조는 입교전 자기학습-기본1(원격 4일)-기본2(집합 3일)-전문(원격 3일)-심화(집합 2일) 형태로 이루어짐.
- 1년에 2회, 집합과 원격교육 형태로 12일, 84시간 이상 진행되고 있음.

다) 과정 개요 및 개선 요구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보고서를 분석함.

(1) 교육 목적

- 인권교육 전문가로서 인권강사의 양성
- 모든 사람의 인권교육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인권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권강사 양성
- 인권이 학습자의 일상적 삶과 융합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인권강사 양성
- 인권이 학습자의 일상적 삶과 융합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인권강사 양성

(2) 주요 교육 내용 및 교과목

- 주요 교육 내용은 인권의 가치, 인권교육 원칙과 방법, 분야별 인권 현안, 사례분석, 인권강사 기본 소양 및 교육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 등을 다루고 있음.

〈표 19〉 2023년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과목 내역

구분	교과목	구분	교과목
입교 전 자기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이해(11H) · 세계인권선언(10H) · 지정도서 읽기 		

구분	교과목	구분	교과목
기본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감수성과 인권문해력 (3H) · 인권, 역사·개념·가치(4H) · 유엔인권메커니즘(4H) · 인권과 국가(3H) · 생활 속 인권발견(4H) ·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7H) · 인권의 가치(정리학습)(3H)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인권 이해(3H) · 분야별 인권 이슈(6H) · 분야별 인권강의 활동소개 (2H) · 분야관련 인권 콘텐츠(5H) · 모둠활동(2H) · TED(참여자 강연회)(1H) · 열린토의(2H)
기본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결과 발표 및 점검(7H) · 인권교육의 의미와 원칙(4H) · 인권강사란 누구인가(3H) · 인권교육 기획과 준비(5H) · 인권교육(정리학습)(2H)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결과 발표 및 점검(7H) · 분야별 주제 특강(3H) · 인권교육(정리학습)(4H)

(3) 개선 요구사항(학습자 피드백 등)

- 학습 시간에 비해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음
- 강의 내용의 중복(강사가 교차 되는 상황에서 발생)
- 학습 내용에 맞는 교재 제공이 필요
- 학습자의 발제 및 토론 등 참여적 학습 방식의 선호
- 그림책 활용, 영상 활용 등 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에 선호
- 강사네트워크 활동, 동료학습의 필요

라) 소결

(1) 교육과정 목표 안

- 인권에 대한 개념과 구조를 바탕으로 인권의 가치와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을 이해함.
-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인권 현안에 대해 인권 가치와 기준을 적용하여 인권교육을 실행할 수 있음.
- 인권교육 전문가로서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증진을 위해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추.

(2)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방향 제언

- (단계별 구성) 기본-전문-심화의 단계별로 교육 방법의 차별화 필요.
- (인권의 내재화 필요) 단순히 인권의 지식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인권적 변화를 이해하고 소통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지원되어야 하며, 인권교육과 인권교육활동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과정 내내 공유받을 수 있어야 함.

- (분야별 심화)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분야별로 육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특성과 인권 현안을 반영하여야 함.
- (인권의 정확한 이해 기반)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진입하는 학습자의 출발점이 고르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개념과 구조, 특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강의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 (분야별 직무 연계와 현안 대응)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실행 목적에 맞게 분야별 직무 연계를 고려해야 하며, 사회구조 변화와 국내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실제적인 교수역량 강화) 실제 교육현장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며, 교수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실습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참여식 교수법) 실제 강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

(3) 논의점

- 분야별 전문교육(장애인, 노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기업 및 사회복지 분야 등)의 주안점이 무엇인가?
- 현재는 인권의 기초에서부터 강의 시연까지 인권 지식과 교수법 등의 교육 내용이 집약되어 있음. 강사 양성과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과정 상에서 변화될 지점은 없는가?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공하는 변별성 있는 교육과정의 목표는 무엇일까?(인권의 개념과 구조의 확실한 이해, 국내외 제도와 정책의 이해 등)

2) 지방정부 인권업무자 과정

가)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 근거

- 2023. 8.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자체 인권 규범인 인권기본조례(지자체마다 구체적인 명칭이 다르나 이하 통칭하여 인권기본조례로 기술함)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권기구(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인권업무 전담부서 체계를 두고 있음.
- 이러한 지자체 인권 시스템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인권조례안 권고 이후 급속하

게 확산한 것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추세와 맞물려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인권정책기본법안」역시 지자체 인권조사,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등 기존 지자체 인권시스템의 제도와 정책 대부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2) 필요성

- 한편 아직 업무의 정체성과 역할, 방법에 대한 경험의 축적이 부족한 가운데 현장 관계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역량지원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임³⁰⁾.
- 그러나 그 업무의 특성이나 인프라 등의 문제로 관계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129. (국가)인권기구는 특수한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신규 채용된 직원들과 기존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교육훈련은 수행할 업무에 맞추어 실시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인권기구들은 인권증진이라는 공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이 부문에 관한 타당한 수준의 지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권에 관한 교육훈련 활동을 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자체 인력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의 기안, 전문가 선정, 세미나 진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한편,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책무를 맡은 (국가)인권기구는 참고인 면담 및 기타 후속조치 등 특수한 조사기술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 권고와 지원을 제공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는 직원들에게 협상 기술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 63-64).

30) 지자체 인권체계는 무엇보다 지역 내 인권거버넌스 확보가 관건인데, 현재 인권거버넌스에 대한 상과 경험의 부족으로 행정과 시민사회의 협업적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문제, 인권업무가 가지는 정체성 즉 기존의 사법이나 감사시스템과 구별되는 지역 내 인권증진 견인의 의미와 방법 이해 부족 등도 지자체 인권체계가 난항을 겪는 한 원인으로 보임(『지역 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이명희 외, 2022 참조).

나) 지자체 인권조사 업무자 역량강화 과정

(1)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위 2) 지자체 관계자 과정, 가)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내용 참고

(2) 교육과정 운영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까지 지자체 인권조사 업무자 역량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음. 다만 아래 집계된 교육 실적은 전국 보호관협의회 행사에 결합한 과정이 포함된 경우도 있음.

연수과정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계획		
	횟수	총인원	연인원	횟수	총인원	연인원	횟수	총인원	연인원
지방자치단체 인권조사관 인권역량과정	1	57	57	3	23	39	1	60	120

※ 2022년 교육 실적의 경우, 조사관 외 업무자 교육 실적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과정이 합쳐진 수치로 추정되나,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 어려움.

(3) 과정 개요 및 개선 요구사항

-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보고서를 분석함.

가) 교육 목적

- 지자체(교육청 포함) 인권조사 사례 공유 및 권리구제 업무의 전문성 강화
- 지자체 인권보호관 교류 협력망 형성

나) 주요 교육 내용 및 교과목

- 2020년 지자체 인권역량 향상과정<조사담당자>
 - 지방자치와 인권 행정의 이해
 -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조사
 - 성인지 감수성과 성희롱 사례

○ 2021년 지자체 인권보호관 역량강화 - 전국 보호관협의회 결함 과정

- 전주인권현장 탐방
- 인권 특강 : 언론 현장에서 소외된 사람들
- 인권보호 업무를 대하는 기술 및 마음가짐
- 인권 상담·조사 사례발표
- 지자체 인권상담·조사 활성화 방안 모색
- [실습]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법과 조사기법 등

○ 2023년 교과편성안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인권침해 사례 공유와 토론, 인권 현안에 대한 전문성 강화, 인권 상담 및 조사보고서 매뉴얼 토론 등 인권조사 전문역량 강화

〈표 20〉 2023년 지자체 인권조사 업무자 역량 강화 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주요 교육 내용(교과목)	교육 시간			
	계	강의	참여	기타
계	20	11	9	
교육안내 및 마음열기	2		2	
인권의 이해	3	3		
기본권 심사의 이해	2	2		
기획조사 및 실태조사 원칙과 방법	3	2	1	
지자체 인권침해 사례 공유 및 분임 토론	3	1	2	
인권 상담 및 조사 방법	3	2	1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	3	1	2	
평가 및 설문	1		1	

(다) 개선 요구사항(학습자 피드백 등)

- 인권기본계획과 인권영향평가 등 지방행정 실무내용이 포함 필요하다는 의견
- 사례공유, 토론 진행 참여 수업이 도움 되었음. 사례토론 등 실습, 훈련 확보
-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 특강이 유익하였다는 의견이 있어 의미 분석이 필요함.

- 인권보호관 직무와 관련된 프로그램 구성이 만족스러움.
- 지자체 조사매뉴얼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강조
- 한편 보호관 업무 일정에 맞춰 교육 시기 조절, 교육대상자 경력을 고려한 단계별 교육 필요, 기획 과정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함.

(4) 소결

(가) 교육과정 목표 안

- 인권의 개념과 구조 속에서 인권기구 업무자로서 해야 할 역할과 정체성을 인식함.
- 업무 수행 과정과 방법을 인권 조사업무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음.
-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책임을 짐.

(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방향 제언

- 현재 인권조사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존재하는 가운데 인권기구의 핵심적 역할로 자리매김해 온 인권조사의 비전을 정립해 가는 중요한 기점에서의 교육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2023년 개편 과정과 같이 인권의 이해 교과목을 과정 시작 단계에 배치.
- 인권조사업무가 인권기구의 역할 수행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인권기구에 대한 이해 교과목 배치가 조사 실무 교육 앞에 배치될 필요가 있음.
- 조사업무 실무와 관련한 교과목에 대한 욕구가 높는데, 이는 국가인권기구 안내서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임.
- 조사 실무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의 사례 공유에 앞서 인권조사 업무의 기준을 점검하는 콘텐츠가 먼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인권조사 기준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 검토.

(다) 논의점

- 사건 관계자의 인권역량 증진을 돕는 인권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인권조사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 지방정부 인권업무자(정책, 교육 등) 역량 강화 과정

(1)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위 2) 지자체 관계자 과정, 가)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내용 참고

(2) 교육과정 운영 현황

- 지자체 인권 업무자 과정으로는 관리자과정과 이외 업무자 과정으로 운영되어왔음. 다만 두 과정을 통합해 운영한 경우도 있음.
- 지자체 인권업무에는 크게 인권정책업무(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인권위원회 실무 등), 인권교육업무의 분야가 있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과정은 때로는 교육담당자에 특화된 과정으로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통합하여 운영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임.

연수과정	2020년 실적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계획		
	횟수	총 인원	연 인원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관리자 인권역량과정	2	40	-	2	17	51	-	-	-	1	25	50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담당 인권역량과정				5	39	62	-	-	-	1	30	90

※ 2022년 교육 실적의 경우 빈칸인데, 조사관 과정에 합쳐지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거나 제 공받은 자료만으로는 확인 어려움.

(3) 과정 개요 및 개선 요구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보고서를 분석함.

(가) 교육 목적

- 지자체 공무원의 인권 의식 향상 및 인권 행정업무 이해를 견인하기 위한 인권교육 담당 공무원의 역량 제고
-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간 교류 협력망 형성 및 강화

(나) 주요 교육 내용 및 교과목

- 2020 지자체 인권 역량 향상 <교육담당자>
 - 인권특강「불편한 미술관」
 - 지방자치와 인권행정의 이해

- 지자체 인권정책 현황과 과제
- 인권교육의 알파와 오메가(기획, 운영, 평가)
- 2021 서울·인천·경기 인권 담당자 역량향상
 - 인권의 이해
 - 인권침해와 차별(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 인권 관점의 지방자치
 - 인권조례의 현황과 과제(인권조례 현황과 과제 및 사례를 중심으로)
 - 인권교육의 이해(지자체 인권교육의 과제 및 실천방향)
 - 인권교육 방법
 - 인권 이슈 차별금지와 혐오 표현
- 2021 지자체 관리자 인권리더십
 - [마음열기] 명작으로 보는 인권
 - 인권의 이해
 - 재난과 인권(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 지자체 인권행정과 리더의 역할(인권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 인권 조직문화 만들기
 - 인권침해와 차별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기
 - [특강] 생활 속 인권 이야기
- 2023년 교과 편성안
 - 인권교육의 이해, 지자체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공유 및 토론, 지자체 인권교육 업무 우수사례 공유 및 토론 등

〈표 21〉 2023년 지자체 인권조사 업무자 역량 강화 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주요 교육 내용(교과목)	교육 시간			
	계	강의	참여	기타
계	21	7	13	1
(사전학습) 차별금지외의 이해	1			1
교육안내 및 마음열기(현장 탐방)	3	1	2	
인권교육의 이해	3	2	1	
지자체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 공유 및 토론	2		2	
지자체 인권교육업무 우수사례공유 및 토론	3	1	2	
지자체 인권교육원칙과 방법(실습 및 토론)	4	1	3	
지자체 인권교육의 현안 및 대응	2		2	
2023 인권 이슈	2	2		
평가 및 설문	1		1	

(다) 개선 요구사항(학습자 피드백 등)

○ 2020 지자체 인권 역량 향상 <교육담당자>

- 인권에 대한 이해도 평가가 다소 낮게 나타나 교육과정에서 인권의 이해를 강화할 필요
- 지자체 간 인권교육 경험과 모범사례 공유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인권교육 기획, 운영, 평가만을 2일간 과정으로 심화할 필요 있음.
- 학습자의 경력 등 역량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과정 개설 검토 필요

○ 2021 서울·인천·경기 인권업무자 역량향상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에 맞춰 교육을 편성해주면 좋겠음.
- 최근 인권 이슈에 관한 쟁점 및 대안 제시에 관한 교육 강화 필요
- 인권담당자 전문과정 필요
- 학습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토론식 교육 필요

○ 2021 지자체 관리자 인권리더십

- 인권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됨.

- 교육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좋겠음.
- 혐오와 차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혐오와 차별과 관련한 행정조직 내에서의 문제점을 고민할 수 있도록 토론식 교육이었으면 함.

(4) 소결

(가) 교육과정 목표 안

○ 인권정책 업무자

- 인권의 개념과 구조 속에서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의무와 역할을 이해함.
- 지방정부 인권보장체계 이해에 기반해 각 제도 및 정책을 역할을 이해함.
- 국내외 인권도시 사례분석을 통해 인권정책 업무 수행 전략을 모색함.

○ 인권교육 업무자

- 인권의 개념과 구조 속에서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의무와 역할을 이해함.
- 인권교육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 자신의 업무를 이해함.
- 국내외 인권교육 사례를 분석해 인권교육 업무 수행 전략을 모색함.

(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방향 제언

- 지자체에서 인권정책이나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업무자에 대한 교육과정도 운영되었는데, 지자체에 따라 두 업무를 겸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교육 대상자 특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인권 업무의 정체성에 대한 인권위 자체 가이드 콘텐츠 제공, 이에 기반한 지자체 현장에서 의 고민을 나누고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상호 논의 과정이 필요함.
- 각 제도와 정책별 선사례를 수집하여 교육기획팀에서 선 검토 후 이를 교육 콘텐츠화하는 것이 필요 : 현재는 개별 강사가 가진 콘텐츠에만 의존하고 있어 충분한 공유가 어렵고, 일부 내용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
- 인권도시의 추진에 있어 핵심은 거버넌스임에도 현장에서 아직 행정과 시민사회 상호 간 거버넌스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 쪽과 시민사회 쪽 프로그램 양쪽에 이와 관련한 콘텐츠를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

지방공무원을 위한 인권 훈련은, 예를 들어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치적,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권한을 실천하는 것처럼, 모범적 협치(good governance)의 상황 속에서 인권 기준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OHCHR, 2006/2018 : 207).

(다) 논의점

- 인권정책 담당자와 교육담당자 과정 관계 정리 필요 : 통합과 분리 중 선택하고, 이에 따라 과정 구조 정리 필요함. 지자체에 따라 업무를 겹하기도 하고 별도로 두기도 하는데, 서로 연계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측면도 있어 검토가 필요

라) 지역인권기구 인권위원 인권 리더십 과정

(1)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위 2) 지자체 관계자 과정, 가)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내용 참고

(2) 교육과정 운영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인권기구 인권위원에 대한 인권 리더십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음. 다만 일부 과정은 연간 3회 개최되는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협의회에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과정으로 집계하여 오기도 함.

연수과정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계획		
	횟수	총인원	연인원	횟수	총인원	연인원	횟수	총인원	연인원
지역 인권기구 인권위원 인권 리더십 과정	3	45	60	4	65	109	1	25	50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까지 인권옹호자 회의를 통해 지자체 인권위원, 지자체 인권업무자, 인권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2~3일 정도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배치하였음. (2023년에는 인권활동가 참여 행사로 기획)

(3) 과정 개요 및 개선 요구사항

-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보고서를 분석함.

가) 교육 목적

- 지역 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내 보편적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인권기구의 역

할 모색

(나) 주요 교육 내용 및 교과목

○ 2021/2022년 교과 편성안

- 인권의 이해
- 인권위원이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 주민을 위한 인권 행정 및 인권조례 만들기
(인권행정의 개념, 인권조례의 성과와 과제, 인권위원의 역할)
-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기
- 재난과 인권(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 인권 조직문화 만들기
- [특강] 생활 속 인권 이야기
- [사례/토론] 인권위원의 역할 (인권옹호자)

○ 2023년 교과편성안

- 인권의 이해, 지자체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조례 제·개정 사례 공유 및 토론, 기후 위기와 인권 등.

〈표 22〉 지역인권기구 인권위원 인권리더십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주요 교육 내용(교과목)	교육 시간			
	계	강의	참여	기타
계	21	8	13	
교육안내 및 마음열기	2		2	
인권의 이해	3	2	1	
지자체 인권침해·차별 사례 공유 및 토론	4	1	3	
인권관련 조례 제·개정 사례 공유 및 토론	4	1	3	
현장 탐방	4	1	3	
2023 인권 이슈	3	3		
평가 의견	1		1	

(다) 개선 요구사항(학습자 피드백 등)

- 지역인권체계 및 인권위원의 역할과 범위를 알게 되어서 좋았음/지방정부 인권위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해 정립할 수 있었음/참석자 간 정보 공유 및 교류 시간이 유익함.
- 광역지자체 사례만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사례도 필요
- 현장 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사례 강의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참여식 교육 확대
- 주제별, 대상별 심화 교육 필요

(4) 소결

(가) 교육과정 목표 안

- 인권의 개념과 구조 속에서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의무와 역할을 이해함.
- 인권기구와 지자체 인권보장체계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함.
- 인권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인권위원의 역할을 모색함.

(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방향 제언

- 지역 인권기구 인권위원의 경우 지자체 내 모든 인권 제도 및 정책에 결합하는 만큼 교육 콘텐츠 역시 그 전반을 다룰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인권 업무자 교육과정의 콘텐츠와 유사점으로 설계될 것임.
- 특히, 이제 활동을 시작한 인권위원의 경우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낄 것 이므로, 지자체별 수요가 일정 정도 쌓이면 과정을 여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업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권 거버넌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확보가 절실한 만큼, 이와 관련한 콘텐츠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다) 논의점

- 다양한 단위(광역/기초, 위원/담당자/활동가)의 학습자를 구분한 프로그램과 통합한 프로그램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과정 설계 필요



마) 지방의회 의원 인권리더십 과정

(1)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위 2) 지자체 관계자 과정, 가)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내용 참고

(2) 교육과정 운영 현황

- 최근 지방의회 의원 인권리더십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점차 진행 횟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원인과 수요 상황 등을 들어보고 인권교육원에서의 운영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이 과정은 일반과정과 특정 주제에 대한 과정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매해 한국 사회의 인권 지형을 반영하여 필요한 주제를 선정함. 2020년에는 ‘돌봄 노동’을, 2021년부터는 ‘아동’을 주제로 설정함.

연수과정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계획		
	횟수	총인원	연인원	횟수	총인원	연인원	횟수	총인원	연인원
지방의회의원 인권리더십 과정	7	91	182	3	30	60	1	25	50
아동정책 의회의원공무원 인권리더십과정 (2020년에는 돌봄 노동인권이 주제)	2			1	13	26	1	30	60

(3) 과정 개요 및 개선 요구사항

-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보고서를 분석함.

가) 교육 목적

- 지역 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내 보편적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의회의 역할 모색

나) 주요 교육 내용 및 교과목

○ 2021~2022년 교과 편성안

- (인권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위한) 인권의 이해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연대 개념/인권, 삶, 사회, 국가에 대한 이해/사회적 약자(사회적 재난과 연결)/인권의 작동원리와 국가·지자체 인권 책무성

- 인권침해 및 차별의 이해 : 국가인권위원회 사례/침해 및 차별 여부 판단 기준과 구조/일상 및 지자체 현장 사례
- 지방자치 발전과 인권조례 제정 의미 : 우리 도시 인권조례 만들기
- 인권정책 기본법의 의의와 인권보장체계 이해
- 지자체 인권 현안 대응을 위한 인권 행정 : 인권과 행정의 연관성 및 인권에 기반한 행정의 개념과 중요성/사회복지 분야별 관련 인권 이슈와 동향/국가적 책무로서의 사회권 강화를 위한 인권행정 방향
- 인권옹호를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
- 핀란드 민주시민 교육 속으로
- 2022 인권 이슈 : 지자체 인권 현안 관련 권역별 주제 특강/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학습, 현장 탐방/혐오와 차별에 대항하기/언론에서 소외된 사람들

돌봄 종사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향상 연수과정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 및 담당공무원 인권 리더십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노동현황과 변화의 흐름 :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 • 돌봄 서비스 공공성과 노동 인권 • 요양보호사 노동 현실 : 장기요양서비스 구조와 문제 • 바우처 돌봄노동의 실태 • 돌봄 노동인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돌봄 노동자를 위한 조례 이해와 실제 :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에서의 인권 원칙 • 아동학대의 이해 : 법원 판결로 아동학대 알아보기 • 한국의 아동보호 체계 • 시설보호와 아동인권 • 가정 내 아동학대 • 아동정책영향평가 • 지자체 아동보호체계 운영 사례 및 활성화 방안

○ 2023년 교과 편성안

- 인권의 이해, 지자체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조례 제·개정 사례 공유 및 토론, 기후 위기와 인권 등

< 표 23 > 지방의회 의원 인권리더십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주요 교육 내용(교과목)	교육 시간			
	계	강의	참여	기타
계	14	7	7	
교육안내 및 마음열기	1		1	

주요 교육 내용(교과목)	교육 시간			
	계	강의	참여	기타
인권의 이해	3	2	1	
지자체 인권침해·차별 사례 공유 및 토론	2	1	1	
인권 관련 조례 제·개정 사례 공유 및 토론	2	1	1	
현장 탐방	3	1	2	
2023 인권 이슈	2	2		
평가 의견	1		1	

(다) 개선 요청 사항(학습자 피드백 등)

- 심화 과정 운영
- 사례 중심 교과목 확대
- 지속적 교육 운영
- 조례를 제정할 때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해결 : ‘지방자치 발전과 인권조례 제정의미’ 교과목 시간에 의원별 발표를 통해 의정활동에 있어 지방의원의 역할과 인권 이슈와 연관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장 마련한 성과
- 담당자 의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교과목 구성) 공동 이슈에 대한 점검과 대안 모색 등 토론의 시간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교육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교과목 구성 필요

(4) 소결

(가) 교육과정 목표 안

- 인권의 개념과 구조 속에서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의무와 역할을 이해함.
- 지자체 인권보장체계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함.
- 입법과 예산 수립을 통한 인권실현 책무 이행 전략을 모색함.

(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방향 제언

- 지방분권화 및 인권도시의 추세 속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인권 역량 증진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지금의 과정은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임.

- 인권교육원에서 해당 과정을 운영할 경우 지금과 같이 일반과정과 특수 주제에 대한 과정 (현안 반영)의 두 갈래를 유지할 것인지의 정리가 필요함.
- 다만, 이 연구에서 개발하는 모델은 일반과정을 중심으로 설계될 것임.

(다) 논의점

- 지방의회 의원 교육 콘텐츠의 핵심 방향성
- 학습자 구조 설계의 문제 : 특수 주제의 경우 집행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토론하며 전략을 모색하는 교육 기회의 강점이 확인됨.

3) 사회복지 분야 과정

가)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노동권, 여가·휴식의 권리, 적합한 생활 수준을(음식, 입을 옷, 주거, 의료 등) 누릴 권리,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사회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모성·아동·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교육권 등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인권이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권임. 이러한 사회권의 현실적인 실현이 바로 사회복지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의 기반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음. 이것이 사회복지 분야에 인권교육이 요구되는 이유임.
- 또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많고 이들의 인권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인권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사회복지가 인권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의 인권교육에 필요하다는 점은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도 잘 나타나 있음.

(1)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와 제1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1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을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으로 밝히고 있고 제1조의2 기본이념에서는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 또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해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고 인권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제 10조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표 24〉 「사회복지사업법」 인권교육 관련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조항	인권교육 관련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이 본 법률의 주요 목적임을 밝힘.
제1조의2 (기본이념)	③항에서 사회복지 이용자에 대한 사회복지 제공자의 인권보장 책무를 규정함.
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⑥항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함에 있어 사회복지 이용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사회복지 분야의 인권교육을 강화해야함을 명시함.
제10조 (지도·훈련)	사회복지 사무에 일하는 공무원과 노동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훈련을 할수 있다고 규정함.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항에서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2) 사회복지 분야별 개별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이외에도 사회복지 분야별 개별 법률에서도 인권교육을 규정한 법률들이 있음. 분야별 개별 법률에서의 인권교육 조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5〉 사회복지 개별법률 내 인권교육 관련 규정

분야	교육대상자	근거법률	비고
정신 장애	정신건강증진시설 노동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인권교육)	
노숙인	노숙인 복지시설 노동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직접 운영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구체적 규정 없음
노인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 장기요양기관 노동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별개로 운영

- 아동·여성·장애인의 경우 법률에 근거한 인권교육은 없고 인권교육과 유사한 교육(학대 예방 및 신고자 의무교육, 폭력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인식개선 교육)이 법률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음. 그렇다고 해당 분야에 유사 교육이 아닌 인권교육이 없는 것은 아님. 법률에 명시된 것은 아니나,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인권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3)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

- 복지부에서 발표된 평가지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는 것을 사회복지시설평가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에 인권교육 시행 여부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모든 영역의 사회복지시설이 평가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별 법률에 명시적으로 인권교육과 관련한 규정이 없더라도 모든 사회복지 영역에서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평가지표는 시설 유형별로 매년 개발되기 때문에 인권교육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배점은 연도별, 시설별로 상이하나 교육 대상 및 내용은 거의 동일함. 인권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이고, 교육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교육과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인권교육을 나누어 실시하게 되어 있음.

나) 교육과정 운영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은 크게 3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업무 담당자를 위한 '인권 역량(향상) 과정', '기관장 및 시설장을 위한 인권리더십(향상) 과정',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권교육 활동을 하는 교육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가(역량향상) 과정' 임³¹⁾.
- 세 가지 과정 이외에 법정 의무교육인 노숙인 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담으로 진행하고 있고, 해당 연도의 주요 인권 의제나 인권 관련 제도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 분야별 인권교육이 열리기도 함.

년도	과정구분	과정명	대상	횟수	인원
2020	인권직무	사회복지 인권역량향상과정	사회복지 인권담당자	4회	164명
	인권리더십	사회복지 인권리더십향상과정	사회복지 시설장	1회	36명
	교육전문가	사회복지 인권교육가역량향상과정	사회복지분야 인권강사	2회	66명

31) 2023년 인권교육 과정운영 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장 인권리더십과정'만 개설되고 '사회복지 역량강화과정', '사회복지 인권교육가과정'은 없어짐. '사회복지 인권역량과정'과 유사한 과정은 없고, '사회복지 인권교육가과정'과 유사한 과정으로 '노인 인권교육가과정'이 개설됨.

년도	과정구분	과정명	대상	횟수	인원	
	기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리더십과정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과사무국장	1회	99명	
2021	인권역량	사회복지 인권역량과정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3회	72명	
	인권리더십	사회복지 인권리더십과정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기관장	6회	131명	
	인권교육가	사회복지 인권교육가과정	의무교육강사	2회	53명	
	법정의무교육	노숙인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노숙인시설 종사자(관리자, 신규/경력 종사자)	20회	1005명	
	기타	정신보건 인권교육가과정	정신보건강사	1회	14명	
2022	인권역량	사회복지 인권역량과정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3회	61명	
	인권리더십	사회복지 인권리더십과정	사회복지시설장, 기관장	7회	125명	
	인권교육가	사회복지 인권교육가과정	의무교육강사	2회	24명	
	법정의무교육	노숙인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노숙인시설 종사자(관리자, 신규/경력 종사자)	52회	2046명	
	기타		이주민 인권상담가 역량과정	지자체 이주 분야 담당자, 이주민 인권상담 활동가, 상담가, 내부직원	1회	확인 필요
			보건의료분야 노인인권 감수성과정	보건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	1회	22명
		노숙인분야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노숙인시설 종사자 및 지자체 노숙담당, 경찰	1회	26명	

다) 과정 개요 및 개선 요구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보고서를 분석함.

(1) 교육목적³²⁾

○ 사회복지 인권 역량 과정

- 사회복지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통해 운영자의 인권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실천역량 강화
-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지의 질 향상 기여

○ 사회복지 인권리더십 과정

- 사회복지 분야별 인권 관련 동향 및 사례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의 인권 관련 문제들에 대한

32) 과정별 교육목적이 정리된 자료로 「인권교육 과정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과 「인권교육 운영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가 있음. 운영계획의 경우 2023년 자료가 최신자료이고, 결과보고서는 2022년 자료가 최신자료임. 가장 최신자료인 2023 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교육목적을 정리하려 했으나, 2023년 운영계획에는 사회복지 인권역량강화과정과 사회복지 인권교육가과정이 없어, 2022년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교육목적을 정리함.

실천 방향과 기준 등을 제시.

- 사회복지시설장 및 관리자로서 인권리더십을 함양하여 인권적 경영 실천 및 사회복지의 질 향상 기여.

○ 사회복지인권교육과정

- 사회복지 분야 교육전문가로서의 인권 지식 함양 및 강화.
- 사회복지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인권 보호 및 사회복지분야 인권확산 기여.

(2) 주요 교육 내용 및 교과목 33)

○ 사회복지인권역량과정

- 사회복지 분야 인권적 실천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로 본 사회복지 분야의 인권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 학습 제공.

〈표 26〉 사회복지 인권역량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주요 교육 내용 (교과목)	강의시간			
	계	강의	참여	이러닝
계	23	12.5	8.5	2
(사전학습) 인권의 이해	2			2
마음열기	1		1	
인권의 이해	3	3		
인권관점의 사회복지 이해	3	3		
인권 친화적 사회복지 시설 운영 실무 사례 공유	3	2	1	
사회복지 현장의 갈등사례와 인권 친화적 해결 방안	4		4	
인권침해 및 차별판단과 심사 훈련	3	2	1	
특강	2.5	2.5		
강의평가 및 마무리	1.5		1.5	

33) 「2022년 인권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함. 「2022년 인권교육 과정운영 계획」에도 주요 교육내용 및 교과목이 있으나 「2022년 인권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2022년 인권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 사회복지 인권리더십 과정

- 인권의 기본개념 이해
- 사회복지 분야 인권 친화적 모범 사례 및 실천 방안
- 사회복지 분야 인권 증진을 위한 리더십의 이해

〈표 27〉 사회복지 인권리더십 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주요 교육 내용 (교과목)	강의시간			
	계	강의	참여	이러닝
계	23	13.5	7.5	2
(사전학습) 인권의 이해	2			2
마음열기	1		1	
인권의 이해	3	3		
사회복지 리더가 알아야 할 사회복지와 인권	3	3		
최고관리자가 알아야 할 종사자 인권	3	3		
인권 친화적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 사례 공유	4	2	2	
집단지성으로 설계하는 인권 친화적 사회복지시설 운영	3		3	
특강	2.5	2.5		
강의평가 및 마무리	1.5		1.5	

○ 사회복지 인권교육가과정

- 인권의 기본개념 이해 및 사회복지 분야 인권 사례 및 실천
-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등 인권강사로서 인권 전문성 강화

〈표 28〉 사회복지 인권교육가 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주요 교육 내용 (교과목)	강의시간			
	계	강의	참여	이러닝
계	23	12	9	2
(사전학습) 인권의 이해	2			2
마음열기	1		1	
인권의 이해	3	3		

주요 교육 내용 (교과목)	강의시간			
	계	강의	참여	이러닝
인권교육의 원칙과 강의 기획법	3	2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콘텐츠 활용법	2.5	2.5		
인권 친화적 원격교육의 방법과 실제	4.5	2	2.5	
사회복지 인권교육 현장의 질문과 답변들	3		3	
특강	2.5	2.5		
강의평가 및 마무리	1.5		1.5	

(3) 개선 요구사항(학습자 피드백 등)

-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참여자로부터 제기된 개선점으로는 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세분화 필요, ②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 중심의 교육 구성 필요, ③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선 사례를 포함) 제시 필요 ④ 참여자의 노동 여건을 고려한 교육 시간 및 기간 설정 필요 ⑤ 기초-전문-심화의 단계별 교육 구성 필요 ⑥ 참여형 교육의 확대가 있었음. 과정별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9> 사회복지 인권역량 과정

구분	주요 내용
교육기획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분야를 세분화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의 교육이 필요함. · 3일 연속교육의 경우, 업무부담 등으로 참여가 어려움으로 학습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예: 주1회씩 3주 교육)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또는 정보전달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이 필요 · 사회복지 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인권침해 사례, 권리충돌 사례 등) 중심의 교육이 필요함.

<표 30> 사회복지 인권리더십 과정

구분	주요 내용
교육기획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분야를 세분화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의 교육이 필요함. · 「기업과 인권」 관련해 단계별(기초-전문-심화) 교육 필요 · 시설장과 중간관리자가 섞여 있을 경우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밝히기 어려운 여건임. 대상자의 직급을 명확히 구분하여 교육 필요 · 3일 연속교육의 경우, 업무부담 등으로 참여가 어려움으로 학습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예: 주1회씩 3주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필요

구분	주요 내용
	· 자료집과 강의내용의 일치 필요
교육내용	· 제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선 사례 중심의 교육 필요. · 현장에서 「기업과 인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자료 제시 필요 · 지식 또는 정보전달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하는 교육이 필요 ·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 필요
교육방법	·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학습자의 의견을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참여식 교육 필요.

〈표 31〉 사회복지 인권교육가 과정

구분	주요내용
교육기획 및 운영	· 사회복지 분야를 세분화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의 교육이 필요함.
교육내용	·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 · 국내외 최신 인권동향 자료를 나눠주거나 브리핑해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음.

라) 소결

(1) 교육과정 목표 안

○ 사회복지사 인권역량 강화 과정 및 인권리더십 과정

-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사회복지의 인권보장 책무와 역할을 이해함.
- 사회복지사는 권리로서의 인권을 보장하는 과정임을 이해함.
- 인권에 대한 개념과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실천방안을 모색함.

○ 사회복지사 인권교육가 과정

-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사회복지의 인권보장 책무와 역할을 이해함.
- 사회복지 인권교육에 적합한 교육 설계 및 방법을 익혀 인권교육을 실행함.
- 인권교육 전문가로서 사회복지분야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추.

(2)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방향 제언

- 인권교육과 유사한 교육들과의 변별점을 명확히 해 인권교육의 정체성 확보 필요함.
- 학습자 분석,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기획이 필요함.

- 사회복지 분야 노동자의 인권적 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여 학습자들이 자기 업무의 인권적 사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내용의 업무 관련성 확보가 필요함. 교육내용에서 사례나 예시 등을 선정 시 현장에 맞는 사례나 예시를 활용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다룸에 있어,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식의 교육이 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함. 금지 가이드라인이 아닌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를 인권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 실천 사례(선사례)를 제시하여 이를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현재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에 따르면 이용자 인권교육과 노동자 인권교육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인권을 분절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교육할 방안 마련 필요

(3) 논의점

- 사회복지 분야별(아동,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
- 인권리더십 과정과 역량강화 과정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4) 군 분야 과정

가)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1항(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시행일: 2022. 7. 1.)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기본권교육 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군 인권 업무 훈령」 제14조(교육대상 및 분류) ① 인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병 및 군무원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보충역, 승선군무예비역, 전시근로역) 4. 국방부 공무원 ②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로 나누어 실시한다. 1. 부대 인권교육 2. 인권교관 교육 3. 군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교육 4. 사이버 인권교육
- 제16조(교육주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대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부대 지휘관 2. 부대 인권교관 3. 상급부대 또는 인근부대 인권교관 4. 인권 관련 민간전문가
- 위 관련 법 등은 군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음.

(2) 필요성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로 출범 1년을 맞는 군인권보호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군인권교육과 협력 업무를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군 관련 진정이 30% 증가³⁴⁾하는 등 여전히 군대 내 인권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임.
- 이에, 군 인권교육 전문가 과정을 통한 체계화된 군 인권교육프로그램 제공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한 과제임.

나) 교육과정 운영 현황

(1) 과정의 구분

- 군 교육전문가 교육과정은 군 인권교관 심화과정(군인 대상)과 위촉강사 군 분야 역량강화과정(국가인권위원회 위촉강사 대상)으로 구분됨.

(2) 운영 현황

구분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계획	
		횟수	총인원	횟수	총인원	횟수	총인원
군인권교육전문가	군 인권교관 심화과정	16	331	1	15	3	90
	위촉인권강사 군분야 역량강화과정	신설		2	62	2	80

- 202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와 협의, 군인권 교육을 담당할 내부 강사로서 군 인

34)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총괄과, 보도자료, 2023. 6. 29. <군인권보호관 출범 1년, 진정사건 30% 증가 처리건수 74% 증가>

권교관 심화 과정을 운영중임.

- 2022년부터는 각 군 인권교육 수요 증가와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³⁵⁾를 위해 위촉강사 대상 역량 강화 과정을 신설하고 수료자 명단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있음.
- 각각의 과정은 별개로 운영되며, 각 과정 대상자들은 자발적 신청-선발의 과정을 거침.
-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전문가 과정 이외에 군 영관급 인권감수성 과정(공공영역)을 운영 중임.

※ 공공영역> 군 영관급 인권감수성 과정 운영 현황

구분	2022년 실적		2023년 계획	
	횟수	총인원	횟수	총인원
군 영관급 인권감수성 과정	4	78	6	180

다) 과정 개요 및 개선 요구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보고서를 분석함.

(1) 교육 목적

- 군 인권 교육과 관련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인권감수성 향상 (군 인권교관)
- 군 조직 및 군 문화 이해 향상 (위촉강사)

(2) 주요 교육 내용 및 교과목

-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운영과 <2023년 인권교육 운영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군 인권교관 대상 중점 교육 내용은 ‘인권감수성/장병 인권/인권침해 권리구제 제도에

35)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인권실태조사결과 (2022. 군분야 위촉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자료집)

- 군 인권교육 필요성
 - 병: 매우필요함+필요함 85.3%
 - 간부: 매우필요함+필요함 95.9%
- 복무 중 인권관련 교육 경험 여부
 - 병: 있음 65.4%
 - 간부: 있음 95.6%
- 인권교육의 인권의식 제고 효과성
 - 병: 효과적 50.9%
 - 간부: 효과적 62.2%

대한 이해/교수역량 향상'이며, 위촉강사 대상 중점 교육 내용은 '군인권 현안/인권침해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교수역량 향상'임.

〈표 32〉 군 인권교관 심화과정 교과 편성표-2023년

주요 교육 내용(교과목)	교육 시간			
	계	강의	참여	기타
계	36	13	22	1
마음열기	2		2	
인권의 이해	2	2		
군인권교육 설계의 핵심	3	3		
탐나는 인권교안 만들기(이론)	2	2		
탐나는 인권교안 만들기(실습)	10		10	
인권활동가의 시선에서 본 군인권 교육	3	3		
군인권교육 실제와 Q&A	2	1	1	
군관련 인권위 결정례 토론 및 발표	3		3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2	2		
교안 발표 및 동료 피드백	2		2	
교안 발표 및 전문가 피드백	4		4	
평가 및 설문	1			1

〈표 33〉 위촉강사 역량강화 교과 편성표-2023년

주요 교육 내용(교과목)	교육 시간			
	계	강의	참여	기타
계	19	8	10	1
군인권 증진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	2	2		
인권활동가가 생각하는 군인권교육	2	2		
군인권교육 현황 Q&A	2	1	1	
인권교육가가 들여다 본 군인권교육 실태	2	2		
군인권교육 실제와 Q&A	2	1	1	
군인권교육 교안 만들기	4		4	
군대에 관한 Q&A	2		2	
교안 발표 및 피드백	2		2	
설문 및 마무리	1			1

(3) 개선 요구사항(학습자 피드백 등)

- 군 인권교관: 양성, 심화, 전문화 과정 등 좀 더 길게 교육해야 한다, 수준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눈치 보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명령을 통한 출석 통보가 필요하다, 교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준 높은 교관을 양성 및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양방향 피드백이 좋았다. 등
- 위촉강사: 국방부가 개발한 군 인권교안을 공유받을 수 있는지, 지방참여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준 교안이 있다면 교안을 바탕으로 하는 워크숍 형태가 필요하다, 현재 군 인권 교육하시는 분의 강의를 더 듣고 싶다. 등

라) 소결

(1) 교육과정 목표 안

-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정립하는 가운데 군의 존재 이유가 인권 보장에 있음을 이해함.
- 군 인권교육에 적합한 교육 설계 및 방법을 익혀 강의를 진행함.
- 군 인권교육 전문가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2)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방향 제언

- 교육의 효과성 제고 : 군 인권교관 과정 참여자 수가 2021년→2022년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교육 효과성에 대한 현장의 부정적 반응이라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소수 인원

(16명)으로 진행된 과정(2022년)에서 학습자들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학습자들의 개별적 요구에 교육진행자(기획자)가 명확히 대응할 수 있었던 측면이 존재했을 것임. (나.- 2) 운영 현황)

- 통합 운영의 필요성 : 현재는 관련 과정을 군 인권교관과 위촉강사 대상으로 각각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중점 교육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향후 이들이 교육할 대상 또한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 (다- 2) 주요 교육 내용 및 교과목)
- 교과목 설정의 방향성 : 군 인권교관은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 이해에, 위촉강사는 군 현안에 대한 이해에 좀 더 방점을 찍어 교육받음. 이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올바른 방향으로 보이며 향후 두 대상자에 대한 통합 운영이 고려되더라도 유효한 전략임. (다.- 1) 교육목적, 2) 주요 교육 내용 및 교과목)
- 기관 간 협력 : 위촉강사의 경우 군 인권교육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군 부대에서 진행 중인 군 인권교육 표준안 및 교육참여자 피드백 등이 검토되어야 하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함. (다.- 3) 개선 요청사항)
- 지속적 성장 지원 : 군 인권교관들의 지속적인 보수교육 요구가 존재하는데 향후 실제 강의 여부 등에 따라 수준별 편차가 생길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성장 지원이 필요함. 또한, 위촉 강사의 경우에도 국방부 인권강사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전년도 교육이수 내용과 비슷한 과정을 당해 연도에 동일하게 한 번 더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함. (다.- 3) 개선 요청사항)

5) 경찰 분야 과정

가)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3조 ①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경찰활동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을 학습하고, 인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확대된 권한에 따라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임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보고, 인권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함(2021.9.27. 권고). 이에 경찰은 「경찰 인권보호 규칙」 일부를 개정한 훈령안을 마련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육

대상과 이수 시간을 세분화하고 인권 의식을 향상해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함.³⁶⁾ 제20조 2를 보면, 교육 대상을 세분화하였는데, 인권강사 경찰관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대상자는 연 40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함.

- 경찰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매년 이행 실태를 점검해 정책 내실화에 힘쓰기로 함³⁷⁾. 이를 위해서 경찰 내부의 업무 특성을 잘 이해하고, 참여자들의 업무 환경을 공감할 수 있는 내부 강사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됨.

나) 교육과정 운영 현황

(1) 과정의 구분

- 경찰청 본부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인권역량과정’
- 경찰청 내부 인권강사 대상 ‘경찰내부 인권강사 인권역량과정’으로 구성

(2) 운영 현황

- ‘경찰인권감수성과정’은 ‘경찰인권역량과정’으로 통합되어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23년부터는 ‘경찰내부인권강사 인권역량과정’(경찰청)이 신설됨.

연수과정	2020년 실적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계획	
	횟수	총인원	횟수	총인원	횟수	총인원	횟수	총인원
경찰인권감수성	2	35	9	170				
경찰인권역량과정					8	187	8	320
경찰내부인권강사 인권역량과정	신설						2	40

다) 과정 개요 및 개선 요구사항

-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보고서를 분석함.

(1) 교육 목적

36) 「경찰 인권보호 규칙 일부개정훈령안」(경찰청훈령, 22.09.26) 참조.

37) 연합뉴스(22.06.19) 경찰“권한 남용 막자”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5058500004>

○ 경찰인권역량과정(지방경찰청)

- 인권적 경찰 직무 집행을 위한 사례 실습, 인권감수성과 인권 문해력 학습, 인권 의식 향상을 통한 경찰 내부의 인권적 조직문화 향상 기여.

○ 경찰내부인권강사 인권역량과정(경찰청)

- 경찰 내부 보편적 인권 문화 확산의 주체로서 인권강사의 역할 모색, 인권적 경찰 직무 집행의 모델을 제공하는 선도자로서의 인권강사 역량 확립.

(2) 주요 교육 내용 및 교과목(2023년 기준)

○ 경찰 인권역량 과정

- 경찰 인권침해 사례, 인권적 직무 실천방안, 2023년 인권 이슈 등

〈표 34〉 경찰 인권역량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주요 교육 내용(교과목)	교육 시간			
	계	강의	참여	기타
계	21	5	14	2
인권의 이해(사전학습)	2			2
교육안내 및 마음열기	2		2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공유 및 토론	4	1	3	
인권친화적 경찰문화의 이해	2	2		
인권친화적 직무실천방안 토론	4	1	3	
2023 인권이슈	2	1	1	
현장 탐방	4		4	
평가 및 설문	1		1	

○ 경찰 내부 인권강사 인권역량 과정

- 경찰 인권침해 사례, 인권적 직무 실천방안, 인권강의 기법 등

〈표 35〉 경찰 내부 인권강사 인권역량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주요 교육 내용(교과목)	교육 시간			
	계	강의	참여	기타
계	23	10	11	2
인권의 이해(사전학습)	2			2
감수성, 마중물 학습	2	2		
경찰 인권침해 사례 분석과 토론	4	2	2	
경찰 인권침해 사례 분석과 토론	2	1	1	
인권교육 방법론	3	1	2	
인권친화적 교안 작성	3		3	
인권교육의 실제(발표 및 평가)	2	2		
2023년 인권이슈	4	2	2	
평가 및 설문	1		1	

(3) 개선 요구사항(학습자 피드백 등)

- '현장 경찰(수사, 형사, 유치장, 지역경찰)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인공지능 시대 인권 과제'와 같은 최근 인권 이슈 관련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인권 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운영자의 의견도 있었음.

라) 소결

(1) 교육과정 목표 안(내부 인권강사 과정)

- 경찰 업무의 의미와 역할을 인권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음.
- 사안을 인권의 개념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경찰 업무 현장과 연계한 인권교육을 설계하고, 교육하는 방법 등을 습득함.

(2)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방향 제언

- 사례 토론의 방향성 설정 : 토론이 기계적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도록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함께 구상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주제의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함.
- 사례분석 시 경찰의 대응 관점이 기계적 중립이 아닌 인권적 관점이어야 함을 제시

(3) 논의점

- 기존에 치안경찰에 맞추어서 진행하던 교육 내용을 수사경찰(국가수사본부)까지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 참고 자료

"전문가 집단은 인권이 무엇인지 뿐만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 상황에서 이러한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내용은 특정 직업으로 인하여 접할 수 있는 인권쟁점 등을 바탕으로 해당 전문가 집단의 기능이 무엇이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전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인권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의 경우 인권교육은 국제인권법의 일반적인 역사 개요가 아닌 경찰의 수사방식에 관련된 인권기준

을 교육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수색 및 압수, 체포 및 재판 전 구류, 무기와 화기의 사용, 치안, 응급상황 및 내부 갈등 상황, 군중 제압에 관한 합법적인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이 그 예이다. 경찰을 위한 인권교육은 또한 아동, 여성, 이민자, 난민, 장애인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집단의 인권에 관해서 다뤄야 한다. 대상에 따라 경찰명령, 관리 및 통제 등에 관한 문제도 다루어야 하는데 이는 내부규칙, 행동규범, 재직자를 위한 교육, 반차별적이고 평등한 채용과정, 신입사원 심사, 지역사회 치안전략, 고충처리제도, 법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에 대한 공표, 경찰의 현장검사,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개시할 의무 등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OHCHR, 2006/2018 : 205).

6) 학교 분야 과정

가)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 근거

- 2007년 12월 「교육기본법」 제 12조 제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³⁸⁾됨.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공직 유관기관 및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시도교육청의 자치법규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에 학생, 학교구성원 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됨. 이 자치법규로 인해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 대상 인권교육을 운영함.

38)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4389&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2) 필요성

-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과 이를 구체화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2005년부터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1단계 계획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인권교육의 정의, 교육 내용, 행동계획뿐만 아니라 교사 양성 과정 및 현직 연수를 통한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과 교육제도의 변화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제2차부터 지금의 제4차에 이르기까지 학교 제도권 내에 인권교육 시행을 주요 추진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인권적인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정규 교육과정 내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제3차에서는 교원 대상 인권교육의 지속 추진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시·도교육청에서 교장, 수석교사, 정교사 자격연수 교육과정 및 직무연수과정에 ‘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음.
- 또한, 최근 학교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실습생 사망사고, 교사 자살사건 등 학교 내 인권상황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학교관리자의 책임 있는 역할과 행동이 안팎으로 요구되고 있음.

나) 교육과정 운영 현황

(1) 과정의 구분

-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은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급의 신청을 통해 모집된 대상에게 시행됨.

구분		과정명	교육대상
학교영역	리더십교육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	교장, 교감 등
	직무교육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학교교사 인권역량과정	학교 사회과 교사, 학교인권강사 등

(2) 운영 현황

- 초·중등 분야 인권연수 과정에는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 학교인권역량 과정, 학교 노동인권 교육가 과정, 학교 교직원 인권감수성 과정 등이 있으며, 지역 인권사무소와 시·도교육청의 협력사업의 형태도 진행 중임.

- 운영시간은 21시간으로 구성: 19시간(3일 집합교육) + 2시간(사전교육)
- 2021년 7회 운영, 2022년 11회 운영, 2023년 12회 계획
-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인권사무소의 공동 운영(연 300명 규모, 회당 25명)
- 2022년 운영 결과

지역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강원	제주
담당	인권교육 기획과	부산 인권사무소	광주 인권사무소	대구 인권사무소	대전 인권사무소	강원 인권사무소	제주 인권팀
수료	31명	37명	51명	52명	40명	19명	13명

다) 과정 개요 및 개선 요구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보고서를 분석함.

(1) 교육 목적

- 교장·교감의 인권 의식 향상 및 인권적 교육환경 조성
- 학생인권, 노동인권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현안을 토론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하고 인권감수성과 인권 문해력 제고

(2) 주요 교육 내용 및 교과목

-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인권의 이해 및 학생인권 침해 사례, 다양성 존중 및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학생인권, 교권에 대한 이해, 교육 현장 인권 이슈에 대한 인권적 관점을 적용한 실행 계획 등

○ 2023년 학교관리자 리더십과정 교과목 내역

- (사전학습) 차별금지의 (1H)
- 교육안내 및 마음열기 (1H)
- 인권의 이해 (2H)
- 학생인권 침해 사례 토론 (3H)
-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해 (3H)

- 인권리더십 실천 전략 (4H)
- 2023 인권 이슈 (3H)
- 인권가치가 존중되는 학교를 위한 액션플랜(3H)
- 평가 및 설문 (1H)

(3) 개선 요구사항(학습자 피드백 등)

- (교육의 효과성 높음)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만족도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만족도가 대전 지역을 제외하고 10점에 가까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음. 학습자의 주요 의견에서도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매우 필요한 교육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쉬는 시간 교육생과의 소통에서도 높은 호응이 느껴지는 등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어 교육과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교권과 인권에 대한 이해가 향상됨’, ‘새로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됨’,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임’, ‘더 많은 사람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회차 확대 개설팀’ 등.
- (현장 사례 중심의 교과목 시간 확대 필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 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 제시가 많았음. 더불어 현장에서 학교관리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교육대상자 분리 운영 등 과정 확대 방안 검토 필요) 교육 효과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교육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음. 교육 대상 직위별(교장·교감), 학교급별(초·중·고) 분리 운영에 대한 검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등 현재 과정에 대한 확대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소결

(1) 교육과정 목표 안

- 학교 현장의 인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 지식과 학교관리자의 인권적 역할을 이해함.
-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 관점의 대응능력을 갖추.
- 인권적인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교류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함.

(2)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방향 제언

- 교육 만족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별도의 분석이 필요함(인권의 개념과 구조의 명확한 이해,

직무 연관성이 높은 주제 제시, 현장 탐방, 네트워크 활동 등 참여형 방법 등).

- 교육영역이나 교육 대상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인권 이슈에 대응한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3) 논의점

- 학교관리자 리더십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이나 주제로 추가될 것이 있는가?
- 학교관리자 리더십교육이 가지는 변별성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7) 대학인권센터 과정

가)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 근거

- 202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2022년 이후 약 400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됨(국가인권위원회, 2023).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대학 내 구성원의 인권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구제(상담, 조사), 권고, 교육 및 홍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임.

(2) 필요성

-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은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을 중점 목표로 설정함. 본 행동계획에서 대학인권센터 등 대학 내 인권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으나, 대학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을 발휘하여 인권 지식을 생산하고, 학내 및 지역사회에서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 다양성 등 인권적 문화 확산에 있어 역할을 강조함.

나) 교육과정 운영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학인권센터 인권교육과정은 대학인권센터 담당자를 위한 인권직무역량과정인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과 대학인권센터장을 대상으로 한 인권리더십 향상 과정인 ‘대학인권센터장 인권리더십과정’으로 두 개 과정이 있음.
- 대학인권센터장 과정은 2022년 한 해 운영됨.

연수과정			2020년 실적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계획	
			횟수	총인원	횟수	총인원	횟수	총인원	횟수	총인원
학교 영역	인권 리더십	대학인권센터장 인권리더십과정	-	-	-	-	1	37	필요시 개설	
	인권 직무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	4	87	6	97	7	163	9	290

다) 과정 개요 및 개선 요구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보고서를 분석함.

(1) 교육 목적

- 대학인권센터 담당자의 인권의식 향상 및 직무역량 강화.
- 사건 사례 공유 및 토론을 통해 인권적 관점을 적용한 인권조사 방법 및 해결방안 모색.
- 대학 내 보편적 인권문화 확산.

(2) 주요 교육 내용 및 교과목

〈표 36〉 2023년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 과정 교과 편성안

주요 교육 내용 (교과목)	교육 시간			
	계	강의	참여	기타
계	15	5	9	1
(사전학습) 차별금지의 이해	1			1
인권조사의 기술(이론 및 실전)	4	2	2	
사례연구 “대학 내 괴롭힘 사건”	3	1	2	
사례연구 “성희롱·성폭력 사건”	3	1	2	
사례연구 “인권침해 사건”	3	1	2	
평가 및 설문	1		1	

- 주요 교육 내용은 대학 내 인권사건 처리를 위한 법·제도의 이해, 사례연구 등을 다룸.
- 2022년 과정은 교육 시간을 총 20시간으로 운영하였고, 아래 교과 편성에서 ‘인권기구의 역할과 의의를 바탕으로 대학인권센터의 역할 모색’(3H)을 추가하여 대학인권센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이외 진행된 교과목에 ‘인권조사관이 알아야 할 법률

지식', '대학인권센터 운영 규정 토크아보기' 등이 있음.

(3) 개선 요구사항(학습자 피드백 등)

- 인권센터 의무화에 따라 급하게 구성된 것에 비해 직무의 중요도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교육을 통해 알게 되는 등 대학인권센터 구성원을 위한 교육이 필요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음.
- 학습자들은 주로 구제 업무에 관련된 실무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높음.
- 구체적인 사례 공유와 참여자들과의 소통 및 토론 시간 마련을 통한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이야기함.

라) 소결

(1) 교육과정 목표 안

-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바탕으로 대학인권센터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함.
- 자신의 업무를 대학인권센터의 역할에 맞게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함.
- 자신의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
- 대학인권센터 업무자의 역량을 상호 강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형성함.

(2)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방향 제언

- 2021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및 제도 미비 등으로 담당자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각 대학의 인권센터 담당자가 1~2명뿐 인 상황에서 대학에서 직무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움. 현장에서는 대학인권센터의 역할과 담당자 직무 이해 및 실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담당자들은 구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연구」(김은희 외, 2020)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인권센터는 인권기구로서 대학 내 인권적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연구 개발을 통해 권고 및 자문, 구제, 교육 및 홍보의 기능을 해야 하지만, 현재 대학인권센터의 주 업무는 구제 업무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대학 구성원 간의 위계적 문화가 해소되지 않은 데에 따른 지속적인 인권침해 발생함과 동시에 인력 부족으로 교육과 홍보, 연구와 정책 권고 및 자문 등 구제 외 필요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됨. 그러나 이는 선순환 구조가 아님. 동시에 대학

인권센터의 역할이 구제 업무로 인식된 것과도 떼어 놓을 수 없음. 대학인권센터의 정체성,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정립과 방안이 필요함.

-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는 명시적으로 대학 내 인권기구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고등교육의 연구 및 지식 생성, 교육 및 학내 인권적 행정 운영 및 문화 조성, 지역사회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강조함.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대학 인권기구에 맞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교육 편성에서 인권의 이해 강의를 부재하여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신규 담당자의 경우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강의를 필요함.
- 신규 담당자의 경우 인권과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강의를 필요하다면, 경력자들은 개론에 대한 강의보다 학습자들과의 토론 및 네트워킹 시간에 대한 욕구가 큼.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여 과정 설계를 고려해야 함.
- 대학인권센터의 지위와 역할 이야기할 수 있는 강의를 필요하나,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은 개론 강의를 원하지 않고 당장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원함. 학습자들의 욕구와 교수자의 지향점 사이의 갭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함.

(3) 논의점

- 대학인권센터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은 주로 사례연구로 구성됨. 주제로는 괴롭힘 사건 / 성희롱·성폭력 사건 / 인권침해 사건임.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등의 내용을 인권교육에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지 판단 필요. 괴롭힘의 경우 아래 <참고 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내용을 참고하여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 인권적 권리구제와 조사 관련 교과목을 구성한다면 인권교육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연결할지 논의가 필요함.
- 대학인권센터의 지위와 역할 이야기할 수 있는 강의를 필요하나,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은 개론 강의를 원하지 않고 당장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원함. 다른 과정에서도 학습자들의 욕구와 교수자의 지향점 사이의 갭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으면 함.

● <참고 1> 국민권익위원회 -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보호 방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5. 30.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보호 방안」에서 대학 내 갑질신고 관련 규정 및 업무 시스템 부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결함.

○ **갑질신고 관련 업무를 권한 없는 기관에 이관**

- 갑질신고를 행동강령책임관(총무과)이 처리해야 하나 일부 대학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징계 권한도 없고 인력·예산도 부족한 학내 인권센터에 갑질신고 관련 업무를 이관

< 대학별 갑질신고 처리 유형(22.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갑질신고센터 운영	인권센터 이관
처리 방식	<p>사건접수(총무과)</p> <p>< 직원(총무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조사계획 수립 ■ 조사반 편성(직원) ※ 필요시 전문가, 외부 기관 직원 참여 <p>조사심의위원회 (필요시)</p> <p>징계위원회 심의</p> <p>종결</p>	<p>신고인 사건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조사 계획 수립 ■ 조사반 편성(직원) ※ 필요시 전문가, 외부 직원 참여 <p>인권심의위원회 심의</p> <p>심의결과 각부서 통보</p> <p>총무과 (직원) 교무과 (교원) 학생과 (학생)</p> <p>부서별 소관 징계위원회 심의</p> <p>사건 종결</p>
	<p>< 교원(교무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조사계획 수립 ■ 조사반 편성(직원) ※ 필요시 전문가, 외부 기관 직원 참여 <p>조사심의위원회 (필요시)</p> <p>징계위원회 심의</p> <p>종결</p>	
	※ 학생의 경우 학생과에서 처리	
	대학	서울○○대학교 등 18개 대학교

※ 1개 대학은 인권센터와 동시 운영, 6개 대학 미운영

- 이에 따라 갑질피해를 신고하려고 하는 대학(원)생 등에게 혼란과 불편·불만 야기

【 대학·대학원생 불편·불만 의견(22. 9. 30. 대학·대학원 고충청취 간담회) 】

- 권한도 인력도 예산도 없는 인권센터에서 교수 갑질문제를 처리하다 보니 제대로 관여하지도 못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권한있는 부서에서 처리하거나 강력한 권한 부여가 필요함

(국민권익위원회, 2023: 9)

[그림 23] 국민권익위원회_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보호 방안

- 대학 내 갑질신고 및 처리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갑질 문제에 대한 처리 권한은 총무과에 있음에도, 관련 권한과 인력, 예산이 부족한 대학 인권센터가 갑질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지적함.
- 따라서 신고인이 원하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목적으로 한 사건 조사와 심의 등 일련의 절차는 이와 관련한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전담하되, 대학인권센터는 그 과정에서 인권적 기준

을 조언하거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역할로 협력하는 방향의 정리가 필요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대학 인권센터에서 담당할 업무인지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필요함. 인권은 본질적으로 대 국가적인 성격의 권리라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서 볼 때, 행위자가 개인인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어떻게 인권 사안으로 해석하고 접근할 것인지의 정리가 필요한 것임.
- 한편 직접적인 가해 행위자가 개인이라 해도 인간의 존엄성 침해가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와 국가의 지원체제로 운영되어 국가체계의 한 부분이기도 한 대학 역시 학내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임.
- 그렇다 하여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전반을 대학 인권센터가 전담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별개 문제임. 기존의 관련 법제가 개인 행위자의 행위 규명과 책임 추궁에 무게 중심이 있거나, 피해 당사자의 욕구 자체가 이와 같다면 인권기구인 대학 인권센터가 이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는 개인의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는 인권제도가 아닌 별도의 형사사법 제도인 것과 같은 이치임.
- 즉 대학 인권센터는 학내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견인하고, 이와 관련된 학내외 구성원의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과 교육을 담당하는 인권기구로서의 정체성에 맞는 역할로 정리되어야 함.

8) 「기업과 인권」 분야 과정

가)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 근거

- 2011년 유엔에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채택함으로써 국내에서도 기업 역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책임이 있는 구성원으로 인식됨. 이를 기반으로 모든 공공기관·공기업에 대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2014.09),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도입’ (2018.03) 등을 권고함. 그중에서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2018)을 보면, 인권경영추진 시스템 구축 중³⁹⁾ 인권교육과 훈련 실시에 관해 명시하고 있음.

39)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1.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가. 인권경영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나.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제도를 구축합니다. 다.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라. 인권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업과 인권」 (Business and Human Rights)

‘인권경영’이라는 용어는 UN 등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Business and Human Rights’를 국내에서 편의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글로벌 기업들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적 이슈들과 더불어 2000년 UN의 글로벌콤팩트 발표이후 국내에서도 ‘사회책임경영’, ‘환경(친화)경영’, ‘반부패 투명경영’ 등의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글로벌 시대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방침으로서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맥락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2011년 UN이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발표하면서 실행적 원칙을 제시했지만 국내 기업은 인권규범을 기존 ‘지속가능경영’의 하위 범주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국내에서는 ‘Business and Human Rights’를 ‘인권경영’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인권경영의 영어표현인 ‘Human Rights Management’라는 용어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업과 인권 (Business and Human Rights)’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기업과 인권」의 원문 ‘Business and Human Rights’를 ‘인권경영’으로 번역할 경우, 기업 경영의 근본 원칙인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뜻하는 「기업과 인권」의 본래 의미를 다 포괄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통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서의 ‘Business and Human Rights’는 인권경영이 아닌 기업과 인권으로 번역해 사용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 전달에 더 적합합니다.

제3권 모듈형 기본교재 「기업과 인권」의 등장 배경과 개념 (김민우, 2023)

(2) 필요성

-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가지는 기관의 특성상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데 공공기관에는 다른 사기업보다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의식이 더 요구됨.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 제도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교육과정 운영 현황

(1) 과정의 구분

- 공공기관 임직원(처장급 이하) 대상 ‘공공기관 인권경영담당 인권역량과정’
- 공공기관 인권업무 담당자 대상 ‘인권경영담당 인권감수성과정’
-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ceo 등 임원 대상 ‘공공기관 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

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2) 운영 현황

- 2023년부터는 관리자 리더십과정을 신설하여 직급별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운영.

연수과정	2020년 실적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계획	
	횟수	총인원	횟수	총인원	횟수	총인원	횟수	총인원
「기업과 인권」 역량과정	2	140			5	113	1	35
「기업과 인권」 직무기초 인권감수성 과정			7	162	6	105	12	240
공공기관 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	신설						1	30

다) 과정 개요 및 개선 요구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보고서를 분석함.

(1) 교육 목적

- 「기업과 인권」 역량과정 :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권감수성과 인권 문해력, 인권경영 지식 함양을 통한 핵심 인권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실천역량 제고
- 「기업과 인권」 직무기초 인권감수성 과정 : 「기업과 인권」 이슈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을 학습하고 기업 내 인권경영문화 확산 도모, 우수사례 전파 등 인권경영 교류 협력망 형성
- 공공기관 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 :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업과 인권」 지식 함양을 통한 핵심 인권 가치에 대한 이해 제고, 유엔 기업인권 가이드라인, 국제동향에 대한 공유

(2) 주요 교육내용 및 교과목(2023년 기준)

○ 「기업과 인권」 담당 인권역량과정

- 공공기관 「기업과 인권」 담당자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소개, 인권 실사 실습 및 영향평가 등 직무학습 과정으로 운영

〈표 37〉 공공기관 「기업과 인권」 담당 인권역량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주요 교육 내용(교과목)	교육 시간			
	계	강의	참여	기타
계	26	13	8	5
(사전학습) 「기업과 인권」	5			5
「기업과 인권」 국제동향과 경향	2	2		
기업이 알아야 할 인권	3	3		
2023 인권 이슈	2	2		
인권경영보고서 작성지침 해설	3	3		
인권경영평가 가이드라인 해설	2	2		
기관별 인권경영평가 가이드라인 공유 및 평가	4		4	
기관별 가이드라인 모의 작성	4	1	3	
과정안내	1		1	

○ 「기업과 인권」 담당 인권감수성과정

- 「기업과 인권」의 국제동향 및 직무에 필요한 실무교육 진행

〈표 38〉 공공기관 인권경영담당 인권감수성과정 주요 교과편성안

주요 교육내용(교과목)	교육 시간			
	계	강의	참여	기타
계	15	9	5	1
(사전학습) 차별금지의 이해	1			1
교육안내 및 마음열기	1		1	
기업인권 및 국제동향	2	2		
인권경영 현장 우수사례	2	2		
인권경영보고서 작성 지침	2	2		
인권경영영향평가 가이드라인 해설 및 평가	2	1	1	
인권경영평가 가이드라인 작성 실습	2		2	
2023 인권이슈	2	2		
평가 및 설문	1		1	

○ 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

- 인권적 기업 환경을 인식하고, 관리자로서의 인권 가치 이해

< 표 39 > 공공기관 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주요 교육 내용(교과목)	교육 시간			
	계	강의	참여	기타
계	7	4	3	
「기업과 인권」 및 국제적 동향	2	2		
유엔의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 공유	2		2	
결정례로 본 인권침해 및 차별	2	2		
과정 소개 및 마무리	1		1	

(3) 개선 요구사항(학습자 피드백 등)

-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에는 관심도 저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희망
- 참여자 간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 확대, 참여자 간 네트워크 형성 희망
- 수준별 과정 구성되기 희망(기본, 심화 과정 등)

라) 소결

(1) 교육과정 목표 안

-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바탕으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인식함.
- 기업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갖는 인권적 의미와 역할을 이해함.
-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기업과 인권」 제도 운영의 실재를 이해함.
- 기업 내 인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업무에 적용함.

(2)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방향 제언

- 실무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도가 참여자 안에서 높은 편이지만, 업무의 인권적 가치와 실무에 대한 교육내용의 균형을 놓치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교육 설계가 필요함.
- 학습자 구분(직급별, 기관 업무의 특성별)과 교육 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함.

(3) 논의점

- 구제 절차: 기업마다 구제 절차가 다르게 운영 중이라 구제 절차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 논의가 필요함.
- 세 개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야 하는 교육 내용의 변별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9) 언론 분야 과정

가)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에서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 대상 인권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추진함. 행동계획에서는 언론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인권 증진과 보호에서 언론의 역할 강조, 효과적인 인권훈련 프로그램 지침 준수, 지속가능한 인권훈련 전략 개발 도입 및 이행 지원, 보호와 안전이 보장되는 언론·미디어 환경 조성의 중요성 강조, 지방,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에 의한 인권훈련 지원 촉진, 지방, 국가, 지역 및 국제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 간 네트워크 및 협력 지원 등을 목표로 함. 또한, 언론과 미디어 전문가들이 인권의 가치에 기반해 보도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정보에 대한 접근, 표현의 자유, 언론인의 안전이 보호되는 환경조성, 모든 언론인에게 동등한 인권훈련 기회 제공, 종합적인 인권훈련 접근법 적용을 제안함(백미순 외, 2016).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이 사회구성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인권 증진 및 보호에 영향력을 끼치는 주체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나) 교육과정 운영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감수성향상과정으로 신문방송 및 미디어 등 언론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 인권감수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2021년도 과정은 회차별로 언론 인권과 관련된 그 당시 핵심 이슈를 주제로 하여 강좌를 설계하여 운영함. 1~2회차 ‘혐오표현과 미디어의 역할’, 3~4회차 ‘기업과 인권의 이해’, 5~6회차 ‘언론과 정보 인권, 인권과 권리의 충돌’, 7~8회차 ‘언론과 정보인권, 우리 시대의 공정과 인권의 상관관계’ 등.
- 2020년에는 언론 과정을 운영하지 않음.

연수과정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계획	
			횟수	총인원	횟수	총인원	횟수	총인원
시민사회 영역	감수성 교육	언론 인권감수성과정	7	102	2	23	2	40

다) 과정 개요 및 개선 요구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보고서를 분석함.

(1) 교육 목적

- 언론인 인권감수성과 인권 문해력 증진을 통해 인권적 보도 환경 마련

(2) 주요 교육 내용 및 교과목

-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인권의 이해, 언론 인권 길라잡이를 바탕으로 분야별(기후 위기, 차별, 난민, 장애인, 청년 등) 인권친화적 언론보도 방식 등으로 구성됨.
- 인권의 이해는 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 언론'로 진행함.

〈표 40〉 언론 인권감수성과정 주요 교과 편성안

주요 교육 내용(교과목)	교육 시간			
	계	강의	참여	기타
계	7	4	3	
인권의 이해 및 권고사례	2	2		
인권보도상 수상 기자들과의 만남	2	2		
언론인권 가이드라인 설명	2		2	
과정안내 및 평가	1		1	

(3) 개선 요구사항(학습자 피드백 등)

- 일과시간 이후나 휴일에 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자 업무의 특성상 마감 시간에 걸친 실시간 수업을 다 챙기기는 어려우므로 시간대 이동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학습자의 일정을 고려한 교육 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이에 2021년의 경우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강좌를 진행하였고, 이에 학습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음.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학습자들이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부

담스러워해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학습자가 훨씬 많았음. 이에 교육 기획자는 오프라인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음.

- 교육내용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일반론보다 최신 국내외 이슈와 접목해 좀 더 유기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교육 결과보고서에 3회 차까지 신청이 점점 줄어서, 1일 두 강좌를 동시에 편성하였고 3회 대비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언론 인권 과정에 대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라) 소결

(1) 교육과정 목표 안

- 인권 보장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함.
- 언론인이 준수해야 할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인권 기준을 이해함.
- 인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여 인권적 사회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2)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방향 제언

-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 주요 인권교육 학습자로 선정한 만큼 언론 및 미디어 전문가를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한국에서 언론 인권교육은 본격화되지 않음. 이에 언론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강사의 지식, 경험 등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언론과 인권 과정을 위한 연구를 통해 내실 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3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설계를 위한 조사

가. 조사 개요

〈표 41〉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설계를 위한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전문가 자문단, 대학인권센터, 「기업과 인권」 관련 업무 담당자, 경찰분야 교육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분야 교육기획자 및 운영자 등 · 30명 +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조사관 학교 참여자 +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 참여자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단 회의: 2023. 8. 14.(월) · 전현직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1차: 2023. 10. 5.(목) · 전현직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2차: 2023. 11. 6.(월) · 대학인권센터 업무자: 2023. 11. 9.(수) · 전 공공기관 「기업과 인권」 담당자 1명: 2023. 10. 21.(토) · 현직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담당자: 2023. 11. 1.(수) · 경찰 내부 강사: 2023. 10. 19.(목) ·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조사관 학교: 2023. 9. 4.(월) ~ 6.(수) ·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 2023. 11. 1.(수) ~ 2.(목)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설계 및 개발 방향성 모색 · 교육과정 분야 선정 · 대학인권센터, 「기업과 인권」, 경찰 분야 교육과정 및 내용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조사 내용	<p>〈전문가 자문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설계의 필요성과 목적 점검 ·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개발 방향성 · 교육과정 분야 선정 · 교육내용 구성에 있어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적 권리구제의 역할과 범위 - 인권기구의 정체성과 역할 - 인권교육에서 사례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 <p>〈전현직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인권센터 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인권센터 교육과정 및 운영 현황 파악 · 대학인권센터 실태 파악 · 대학인권센터 과정 구성 및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p>〈전현직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인권센터 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구성과 내용 점검 및 의견 수렴 <p>〈대학인권센터 업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인권센터 현황 파악 ·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에 대한 점검 ·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에 반영해야 할 교육 내용 자문

구분	내용
	<p>〈전 공공기관 「기업과 인권」 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인권」 현황 파악 · 「기업과 인권」 과정 및 교육내용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p>〈현직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관련 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교육과정 및 운영 현황 파악 · 「기업과 인권」 실태 파악 · 「기업과 인권」 과정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p>〈경찰 내부 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 경찰 인권교육 현황 · 경찰 내부 강사를 위한 인권교육 과정에 필요한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 <hr/> <p>〈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조사관 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인권담당자 교육과정 구성 및 현장 상황 파악 · 과정 참여자의 업무 경력, 학습자의 질문을 분석하여 과정 및 교육내용 구성 <p>〈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교육과정 구성 및 현장 상황 파악 · 과정 참여자의 업무 경력, 학습자의 질문을 분석하여 과정 및 교육내용 구성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면접조사 · 참관 및 모니터링
설문유형과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의 조사의 연구 방법 참조

나. 전문가 자문단 회의 결과

1) 주요 조사 내용

가)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개발 필요성과 목적

- 인권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상향 평준화를 목적으로 한 모듈화 작업이 필요함.
 - 모듈화는 인권교육에서 포함해야 할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자의적인 교육을 벗어나 체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정비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작업이 필요함.
 - 모듈형은 현재 특강 모음 수준의 과정 설계를 내용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교육 기획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으로 목표로 한 과업 설정임.
 - 모듈은 특강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할 기획자와 특강자가 아닌 일반

교수자를 위한 것이 될 것임.

나) 인권교육원 1년 차 운영 기본 교육과정 선정

- 현재 한국 사회 인권상황 및 인권교육 흐름상 인권교육원에서 1년 차에 운영할 과정(이 연구에서 개발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42〉 1년 차 운영 기본교육과정 목록안

1년 차 운영 기본 교육과정 목록안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직무자 역량강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기구 관계자(센터, 조사관, 인권위원 등) - 지자체 인권전담 공무원(교육, 정책 등) · 대학인권센터 · 「기업과 인권」 업무자 ○ 〈인권리더십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의원 ·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가 역량강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분야 - 노인 분야 - 아동 분야 · 경찰 분야 · 군 분야 |
|--|---|

- 이외 과정 개발 제안: 법집행공무원(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직원 역량강화 과정

다) 교육원의 현실적 조건 반영 여부

- 초기 교육원 운영의 여러 조건과 상황적 한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해서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움.
 - 이러한 이유에서도 이번 연구는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적용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프로그램으로 개발로 진행되어야 함.
 - 참고로 현재 여건상 교육원 개원 후 당장 5일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따라서 설계된 모듈을 조합하여 2박 3일 과정으로 진행하거나, 5일 분량의 과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2회로 나눠 2박 3일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할 필요가 있음.

라) 인권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방법

- 본 연구의 목표는 인권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이므로 인권교육에 공통으로 필요한 부분 강의의 세부 영역을 체계에 따라 구성하고 조합된 예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교육과정 내용을 범주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모듈을 만들어 이후 과정 운영자가 모듈을 조합해 과정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모듈의 내용체계는 인권의 이해/인권 업무역량으로 구분하거나 인권교육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모듈 체계도 필요함.
 - 각 하부로 세부 하위 범주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세부 하위 범주들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구성할 수 있을 것임.

마) 과정 설계 및 교육 내용 구성 시 쟁점 사안

- 선정된 각 과정에 긴밀한 접점이 있는 인권조사의 역할과 범위와 관련해 정리가 필요한 쟁점이 적지 않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인 간 문제: 권리구제기구로서 인권기구가 관여할 문제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직장 내 괴롭힘: 현재 일부 지자체나 대학 인권센터에서 논의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직 내 업무분장에 대한 논의 흐름을 확인해 제시하면서 인권기구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 필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인권조사 대상으로 삼게 된 이유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것
 - 지자체 인권조사 분야 쟁점: 지자체 인권구제업무가 사후 권리구제를 중점으로 하는 것의 문제이기에 인권구제업무의 확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기구 교육원이라면 인권기구의 정체성, 역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인권기구의 제도적 토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에서 인권의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인권교육원의 프로그램이라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타협하는 것보다 기본적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함.
 - 이번 연구에서 인권기구의 정체성과 역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면, 향후 한국 사회에서 인권기구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임.

바) 기타 제안

- 모듈 구성의 원칙과 원리를 제시하여 기획자나 강의자가 활용 시 유의할 사항이 잘 정리될 필요가 있음. 인권교육의 구성원칙(현장성, 비판성, 구조·맥락)이 담길 수 있는 조합의 원리

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교육목표에 교육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 필요함.
-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강의가 일방적 교육에서 머무는 교육 기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성원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학습자 수준에 따른 모듈 구성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함. 예) 신규자와 경력자 과정의 구분
- 개발된 모듈과 메타데이터를 운영하여 확산하고, 내용을 상향할 인권교육원의 실제 교수진 구성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고민이 필요함. 인권교육원 교수진 확보, 기획 담당자의 역량을 확보하여야 연구와 예산이 휘발되지 않을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과정과 교육 내용인 만큼 가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논의 등이 필요함.

2) 연구 반영 사항

● 모듈의 활용도를 높이는 전략을 병행한 개발

- 모듈을 활용할 교수자는 인권교육 기획·운영 담당자와 인권강사일 것임. 그럼에도 특강자 역시 모듈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자신들의 스토리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음.
-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모듈과 메타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개발 결과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전략으로 1) 개발된 모듈 콘텐츠로 실제 4개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교재를 구성하여 제공하고, 2) 사용자가 다양한 검색 기능 등을 통해 모듈을 쉽게 조합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온라인 콘텐츠화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함.

● 12개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과 모듈, 메타데이터 개발

- 이 연구에서는 위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제2권 메타데이터북에서 제시하는 12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과정별 교과목과 교과목을 구성하는 모듈, 모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개발하여 제시하였음. 이외 제안이 있었던 법집행공무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직원 역량강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연구의 직접적 프로그램 개발 과정으로 선정하지는 않음.
- 법집행공무원 과정 설계는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있어 인권교육원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정은 아님. 다만 출입국직 관련해서는 국제인

권레짐과의 관계 속에서 차후 프로그램 개발 검토가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직원 역량은 인권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중요함. 필요하다면 연구를 통하여 정교화된 과정으로 설계해야 함. 다만 내부 직원 역량 강화 과정은 이번 개발된 모듈 중 많은 부분이 내부 직원 역량 강화 과정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참조하여 내부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인권기구 역할을 제시하는 설계 방향 견지

- 지방정부, 대학, 기업 등에서의 인권업무자를 위한 과정이 개발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들의 역할이 각 조직에서의 인권기구와 접점을 이루고 있는 공통점이 있음.
- 이에 자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국가인권기구 교육원이 제시할 인권기구의 정체성, 역할, 방향성을 담는 것이 가능하도록 모듈과 기본교재를 구성하였음. 이를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논의와 문헌을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두었음.
- 특히, 지자체는 인권기구의 역할 중 인권조사와 사후적 권리구제에 업무에 매몰된 상황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인권구제와 관련한 교육내용 구성 시 그 무게중심을 예방적 구제로 옮겨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흔드는 쟁점에 유의

- 특히 자문의견에서 지적한 사인 간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흔들기 쉬운 함정을 가지고 있다는 긴장을 가지고,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또는 이러한 오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음.
- 한 방편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의 인권보장 3대 책무 중 보호책무로 접근하면서 사법이나 징계 시스템과 변별되는 인권기구의 역할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작업함.
- 모듈별 메타데이터 구성 시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토대 위에 교육내용이나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작업함.

● 일방향적 교육에서 머무는 교육 기획에서 탈피

- 이번 모듈형 프레임워크 기반 프로그램 개발 기획 자체가 기존의 천편일률적 일방향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임.
- 사례분석 방법 제시 등으로 단순한 인권감수성이 아닌 인권문해력의 힘이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듈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인권 사례를 통해 자신의 주변 세상을 인권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과 결론을 주입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세상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 시간을 제공함. 기존의 결론 나열식 결정례 등 소개 방식을 지양하고, 사례의 선정이나 풀어가는 방식의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해 반영함.

● 가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자문의견 검토

- 진정한 인권 문해력 향상에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자문의견은 이번 연구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음. 다만 현재 우리 사회 인권교육 맥락상 이와 같은 인권교육실행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교육수요 및 가능한 강사풀 등에 한계가 있음. 향후 교육원 운영이 안착 되면 대학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화 과정으로 세미나 수업을 설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다. 면접조사 결과

1) 대학인권센터

가) 주요 조사 내용

●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

- 교육 내용이 대학 현장의 사례가 아닌 경우 정보 자체는 유용하나, 대학 맞춤형 인권교육 필요함. 공공 사례를 대학에 대입하려니 안 맞는 부분이 있음. 그러나 인권의 개념, 가치, 원칙은 다르지 않기에 공공 사례라 하더라도 대학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길 바람.

● 인권의 이해 강의 필요

- 인권업무자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인권의 개념과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인권의 이해 강의는 반드시 필요함. 인권의 이해의 경우 학습자와 소통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 필요함.

● 인권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업무를 확장적으로 볼 수 있는 교육 내용 구성

- 성희롱 사건으로부터 인권 전반으로의 확장 가져가야 함. 인권 문제에 대한 확장적이고 폭넓은 시각 필요함. (성희롱·성폭력 조사와 인권조사가 공통으로 가져가는 흐름과 다른 점,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 등)
- 인권 문제를 알아채게 해주어야 함. 예를 들어 성적 열람 제한 문제는 대학인권센터에서 개입할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함. 인권으로 업무의 범주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인권적 구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

- 수요조사 결과 조사 실무에 대한 욕구가 높음.
- 인권적 구제란 무엇인지, 구제와 조사의 차이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구제 관련 실습이 필요하나 대학인권센터의 실사례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대학인권센터 인권 구제 사례가 보안 문제가 있어 사례를 통한 교육은 어렵지만, 실효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례가 2~3개라도 필요함.

● 대학인권센터 운영 규정 이해 교육 필요

- 운영 규정 이해 강의 필요함. '대학인권센터 운영 규정 훑아보기'는 대학마다 운영 규정이 다르고, 현재 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운영 규정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하나의 운영 규정을 가지고 진행하기 어려움.

● 기타-구성과 운영 참고 사항

- 대면 교육 구성 시 참여율이 높은 요일은 금요일임. 방학에 교육을 운영하면 참여율이 높을 것임. 3~6월, 9~12월은 대면 교육 참여 어렵고, 방학도 2월 8월은 불가능함.

나) 연구 반영 사항

● 신규자를 위한 기본과정으로 설계

- 2021년 대학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현재 대학인권센터 업무자 대부분이 신규자라는 점에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인권센터 교육담당자 모두 동의하여 신규자를 위한 과정으로 설계함. 업무에 대한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고, 현직 담당자가 인권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화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것임.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중 경력자를 위한 심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업무자와 경험이 쌓인 업무자를 분리하는 것보다 신규 업무자와 경험이 있는 담당자가 만나 경험을 나누어 방향성을 정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과정을 설계함. 향후에는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심화 과정을 위한 모듈 개발이 필요함.

● 인권에 대한 기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내용 구성

- 과정 초반에 인권의 이해 모듈 구성하여 인권의 개념과 원칙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인권센터의 역할을 기반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 구성

- 대학과 대학인권센터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모듈 구성 및 배치하여 인권적 권리구제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 또한, 6-1. 인권 찾기 1: 판단기준으로서의 인권 알기와 8-3. 인권적 권리구제 등 노하우 공유를 연결하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분석할 수 있도록 활동형으로 구성함. 이후 인권조사, 인권적 권리구제 사례분석 및 실습, 운영 규정 사례 등 토의·토론 및 실습 모듈은 대학 맞춤형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업무를 내재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 특히, 업무에서 어려움을 주로 느끼는 인권적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학습자 사전 조사를 진행하여 업무 중 어려운 사례, 반복 사례, 논의하고 싶은 사례를 미리 받아 사례 구성하여 교육 현장에서 분석하기를 진행함. 지자체 조사관학교처럼 경력 있는 대학인권센터가 멘토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함.
- 대학의 실제 사례를 활용한 교육을 구성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인권적 구제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 관련 결정례를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여 사례 부족 문제를 보완함.

● 대학인권센터 운영 규정 관련 교육 내용 반영

- 아래 세 가지를 통해 학습자들 스스로가 운영 규정의 의미와 쟁점 논의하도록 함. 강의에서 운영 규정에 최소한 담겨야 할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
 - ① 대학 운영 규정 사례 발표
 - ② 국가인권위원회 규정에서 시사점을 찾는 방식
 - ③ 인권 관련 사례를 통해 운영 규정 쟁점 찾기

2) 「기업과 인권」

가) 주요 조사 내용

● 「기업과 인권」의 필요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내용 필요

- 「기업과 인권」의 실무적 역량을 기르는 것뿐 아니라 「기업과 인권」이 왜 필요한지를 내재화할 수 있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기업과 인권」 담당자가 「기업과 인권」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여야 내부 동력을 가지고 본 업무를 해 나갈 수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과 인권」이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과 인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일반 기업을 대상 교육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공공기관을 대상 교육에서는 필요하지 않음. 대상에 따른 조정이 필요함.

● 교육 대상의 명확화

- 교육 대상이 공공기관의 「기업과 인권」 담당자인지, 민간기업의 「기업과 인권」 담당자인지 구분이 필요함. 대상자 구분에 따라 교육과정의 구성도 달라질 필요가 있음. 앞서 「기업과 인권」에 내재화할 수 있는 내용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 가능함.

● 교육과정 정체성 명확화

- 「기업과 인권」 교육과정이 인권감수성 과정인지, 인권직무역량 강화 과정인지 불분명함. 인권직무 역량강화 과정이라면 1일 차에 진행되는 인권의 이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용어 변경 필요

-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됨.
- ‘인권 경영’이라는 용어는 기업 운영을 위해 인권을 수단화하는 느낌을 주는 단어로 「기업과 인권」의 본래 목표와 취지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인권 경영이라는 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 「기업과 인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인권 경영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인권」 대신 인권 경영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기업과 인권」이 국내에 도입된 초기에는 ‘business and human rights’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여 「기업과 인권」이라고도 했으나, 이것이 ‘기업을 위한 인권’이라는 말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 「기업과 인권」이라는 말 대신 인권 경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기업과 인권」 대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인권 경영으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임.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실사의 일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인권영향평가보다는 인권실사를 사용하도록 함.

● 기타-교육과정 시간 및 운영 관련 사항

- 구제 절차의 경우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과 인권」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가 인권구제 절차와 조사 방법을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음. 관련 교육 내용은 삭제하고 전체 일정을 2박 3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과 인권」의 수요가 엄청 많음. 1회당 25명이라는 숫자로는 「기업과 인권」의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음. 수요에 따른 교육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교육 대상을 민간 기업의 「기업과 인권」 업무 담당자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이 과정은 인권교육원에서 실시할 교육과정으로 공간상의 제약이 있어, 이 이상의 인원으로 조정할 수 없음. 공공기관 「기업과 인권」의 교육 수요는 사이버 교육 등 다른 교육을 통해 해소할 문제이지 대면 교육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나) 연구 반영 사항

● 「기업과 인권」의 이해 모듈 설계 및 반영

-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 「기업과 인권」 관련 항목이 있어 기관에서 움직이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과 인권」은 자율에 맡겨짐. 현재 상황에서 인권업무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한다면 주요 학습자는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일 것임.
- 「기업과 인권」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 없이 업무를 진행한다면 「기업과 인권」이 만들어진 배경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업무를 진행하지 못할 것임. 따라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해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업과 인권」의 이해 모듈을 과정에 포함함.

● 「기업과 인권」으로 용어 정리

- ‘Business and Human Rights’ 영어 원문을 직역한 「기업과 인권」으로 통일함. 인권경영으로 번역할 설득력 있는 근거나 이유가 없음. 또한 시장에서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인권경영은 경영 중 하나로 인권이 수단인 것으로 해석하여 인식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어 「기업과 인권」으로 통일하였음. ☞ 이 보고서 127쪽 참조.

● 인권 실사와 인권영향평가 구분

- 유엔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실사와 인권영향평가를 구분하여 인권 실사 내 인권영향평가를 두고 있으므로 각각의 개념을 사용함.

● 교육과정 시간 및 인원에 관한 사항

- 현재 설정된 교육과정 일정과 인원은 제시안으로, 교육담당자가 모듈을 조합하여 일정과 인원을 조정하여 설계할 수 있음.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의 장점은 교육담당자가 학습자 특성, 주어진 일정과 환경에 맞춰 모듈을 조합하여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임.

4) 경찰 분야

가) 주요 조사 내용

(1) 경찰 내부 인권교육 현황 파악

- 경찰 동료들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조직적 차원에서 경찰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어 인권교육에 대한 기대가 없고 무관심과 반감이 큼.
- 인권교육에 참여할 주요 학습자가 특정되진 않지만, 현장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는 부서, 여성·청소년 담당, 학교 전담 경찰 등이 인권교육에 많이 참여함.

(2) 내부 인권강사로서 경험

● 동료 인권교육 진행 시 주요 내용과 목표

- 경찰 관련 사회적 이슈를 교육에서 활용하는데, 사례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특성에 맞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편임. 강의 마무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매뉴얼, 지침, 인권행동강령 등을 이야기하며 경찰 업무에서 인권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마무리 지음.

● 내부 인권강사의 장점과 어려운 점

- 외부강사가 교육을 할 경우에 ‘우리 상황을 잘 모른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참여함. ‘나도 같은 처지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례 중심으로 준비하는 편임. 인권에 대한 지식보다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은 인권에 대한 이해가 있기에, 일반적인 인권 이해로는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듦. 강사와 학습자가 경찰 동료이기에 어느 정도 신뢰가 서로에게 있어 진정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문제였던 사안을 교육에서 다룰 수 있음. 조직의 구성원이다 보니, 그러한 사안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알아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임.
- 내부강사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음. 그렇기에 교육 내용, 체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함. 무슨 얘기가 나와도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준비. 교육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강사의 뉘두리로만 끝날 수 있음.

(3) 경찰분야 인권교육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성 시 참조할 사항

● 최신 사례 업데이트 필요

- 기존 교재에 있는 사례를 최신 사례로 업데이트 필요. 경찰도 인권교육을 다수 접하고, 참여형 교육을 경험하면서 인권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짐. 적잖은 경우 너무 오래된 사례나 너무 많이 알려진 사례이기에 노후 된 자료라 생각함.



● 교수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기획과 구성 훈련 필요

- 경찰 동료 강사들이 교육의 서론-본론-결론 만드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함.
- 교육 시간에 너무 방대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해야 함.
- 교육이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그 원인은 내용의 추상 수위가 높은 것에 있음. 구체적인 주제, 사례에서 핵심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함.
- 토론·토의 교육을 구성할 경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주제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임.

● 인권교육에 필요한 교수법 강화 필요

- 내부 동료 학습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수법을 습득해야 함. 강사가 능수능란하지 않으면 학습자들은 강사를 아마추어라고 생각함. 교수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고, 특히 인권 분야에 필요한 교수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사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주교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 설계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함.

● 강사 역량 증진에 중심을 둔 시연 프로그램

- 모든 강사과정에 교수법이나 강의기법을 배우고 시연을 해보는 것은 중요함.
- 그러나 왜 강사과정에서는 마지막에 꼭 합격, 불합격을 두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음. 시연-피드백의 과정도 부담스럽게 느껴짐. 기존의 시연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 필요함.
- 교수설계와 시연 및 피드백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함. 예를 들어 교육 설계를 해보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에 방점을 두는 등 교육 시연을 통해서 교육설계에 대한 훈련을 더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음.
- 따라 하기식, 형식적으로 상부 지침대로만 하는 것에 지쳐있는 사람들임. 따라서 교육 방법을 주입식이 아닌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현장에서의 자기 경험을 토론함으로써 서로에게 답을 찾아가게 해주는 방법 등)
- 학습자가 동료 경찰이기에 공감, 지지와 격려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음. 그러나 위로의 장으로 끝나지 않게 주의해야 함.

● 선사례 또는 긍정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인권교육 필요

- 경찰관은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고 싶어 함. 그런데 국민신문고, 권고사례는 주로 경찰이 못한 지점을 주로 이야기하여 마음을 힘들게 함. 경찰을 지키는 방안·지침으로서의

교육사례 분석 교수법 등을 알려주면 좋겠음.

- 아래 사례처럼 구체적인 사건과 경험 등을 통해 업무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함.

* 예를 들어, 한 시민이 청소년기부터 성인까지 반복적으로 자살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지켜갈 때 한 직원이 '그래도 저희 업무가 현장을 찾아가고, 불상사를 예방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물에 떠 있는 아이를 건져서 구한 적이 있었음. 상습 신고자를 무시했었다면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렇듯이 해야만 하는 일을 했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음. 이를 통해 인권은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학대당하는 아동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등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사회적약자 및 소수자와 관련 주제 교육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주제별 교육 구성이 좋음.
- 그러나 운동의 급진성을 상대에게 주입하려는 것이 아닌, 학습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권 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나) 연구 반영 사항

● 조직의 역할과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 마련

- 인권교육에서 경찰의 인권적 역할과 이를 잘 해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
- '경찰직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에서 시민의 인권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시민 인권을 보장했던 참여자의 경험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을 통해 선사례와 긍정의 경험을 드러내고 인권과 연결할 수 있도록 모듈을 구성함.

● 사례분석을 통한 인권교육 구성

- 사례를 활용한 인권교육은 학습자에게 단순히 인권 사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적 의미와 인권적 사유를 촉발하는 데 의의가 있음. 경찰 학습자에게 사례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인권적 사고의 확장을 일으키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례를 인권의 가치와 구조로 읽어내는 것에 더하여 그 사안을 경찰의 업무 특성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함. 사례를 통해 인권적 의미와 경찰 업무를 연결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경찰의 인권적 역할을 생각하게

할 수 있음. ‘경찰인권행동강령 해설과 사례토론’, ‘결정례 사례토론 방법’ 모듈을 통해 경찰 인권행동강령 해설을 통한 경찰의 인권적 업무 확인, 인권교육가로서 결정례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모듈을 구성함.

● 인권교육가로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기획, 구성 및 교수법 관련 내용 구성

-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내부 강사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이를 풀어낼 수 있도록 교육 기획 및 구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습 모듈을 과정을 구성함. 다양한 인권교육 교수법과 교육 기획 및 설계 모듈을 다수 구성하여 배치함.
- 경찰 교육가 과정을 인권 이론 - 직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 - 교수법 - 실습(강의 시연)으로 구성하여 교수자를 위한 과정으로 구성함. 시연 모듈에서 전문가와 동료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가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피드백이어야 함을 유의점으로 둠.

● 선사례 및 긍정 경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구성

- 학습자 스스로가 우리 업무의 인권적 사안에서 인권 이슈와 관련 결정례를 찾고 인권교육에서 풀어낼 수 있는 모듈을 마련하여 선사례와 긍정 경험을 드러내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관련 교육 내용 구성

- 경찰 업무와 밀접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듈과 영화형 모듈을 구성함.

라. 현장참여조사 결과

1)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조사관 학교

가) 주요 조사 내용

(1) 교육과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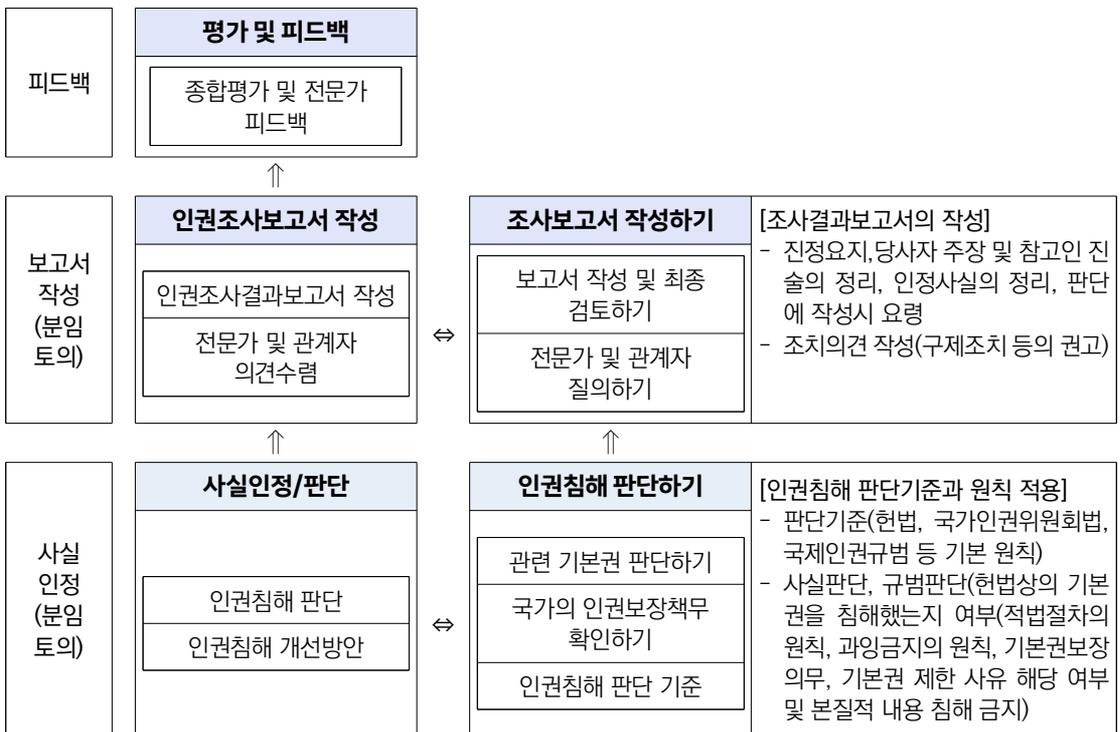
- 교육목표: 인권조사관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 함양(진정사건 인권조사 직무 수행의 이해를 돕고 인권 현황(사건)을 조사, 분석하는 기초능력 배양)
- 주요 활동: 인권조사 계획수립/조사 실습/조사보고서 작성 활동 등
- 교육 시간: 20시간(3일)
- 교육 시설: 전체 집합 강의실, 분임토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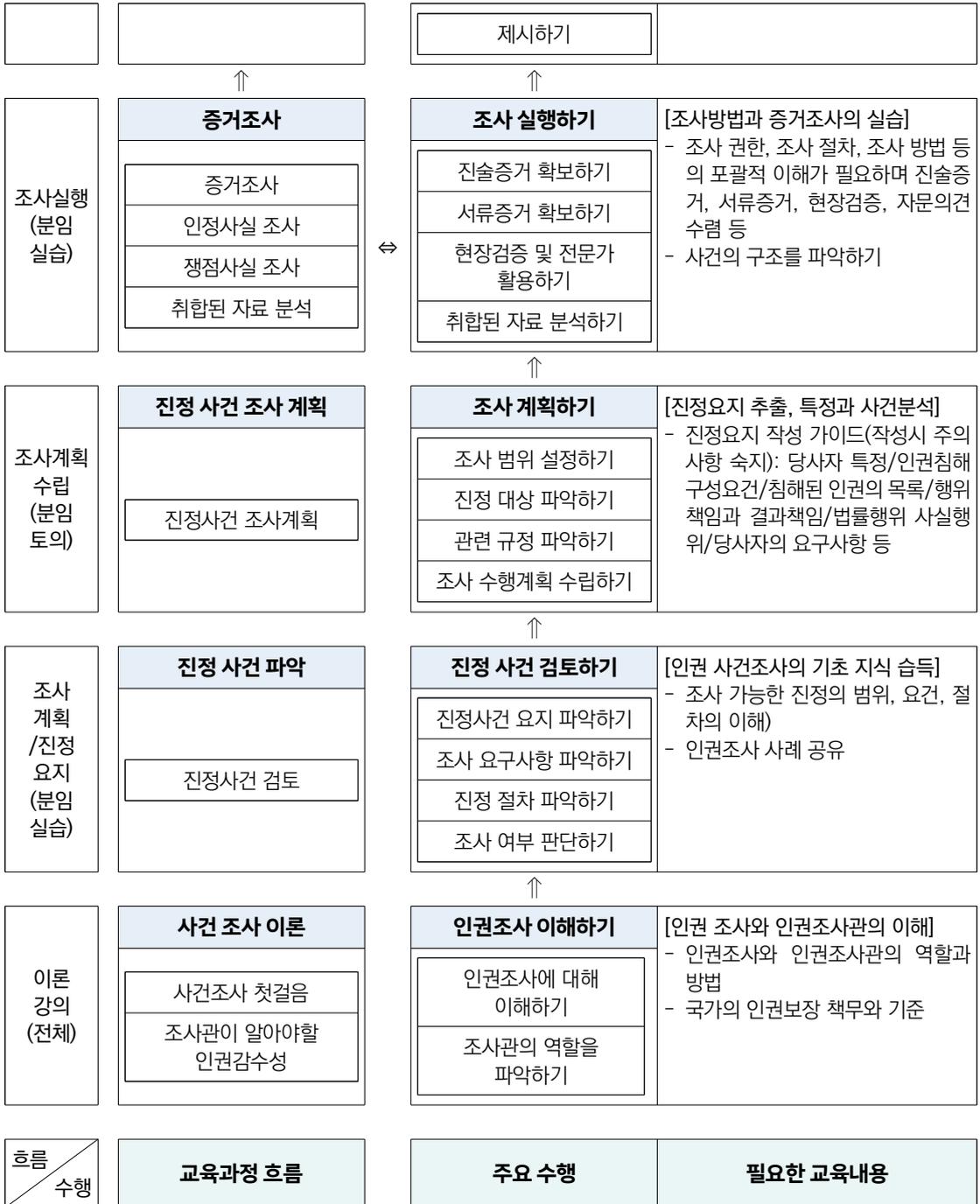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문제해결 중심의 실습
- 강사 : 해당 분야 전문가(분임 토의에 숙련된 실무자 포함)
- 참여 인원 : 40명 내외

(2) 학습자 분석

- 인권조사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참여자부터 10년 이상 경력자까지 숙련도가 다양한 학습자로 구성되어 있음.
- 학습자들의 업무 영역도 지방정부, 교육청, 국가기관 인권센터 등 다양함.
- 학습자의 학습 동기가 업무의 숙련화, 전문화라는 강점이 있음. 실제로 실습, 체험활동, 토의 활동 등 준비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학습자 열의가 높음.
- 교육과정 설계 시 다양성을 학습자 구성을 반영한 과정 운영 로드맵 구성을 시도함.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별도 모듈으로 구성해 맞춤형 사례를 제시하고, 모듈 내 학습자 구성의 다양성을 감안해 기본적인 사례를 제시, 근무하는 조직별 차이로 인한 간극을 극복함.

(3) 교육과정 활동 흐름과 주요 내용





[그림 24] 지자체 인권조사관 학교과정 활동 흐름과 주요 내용

- 이 과정은 상반기 진행된 과정의 후속 과정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임. 다만 상반기와 학습자 구성에 차이가 있어 상반기 진행된 과정에서 제시된 인권조사의 의미와 역할(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논의 포함)에 대한 고민이 전체적으로 공유된 학습자 그룹은 아니었음.
- 상반기에 진행된 교육이 입문 과정이었다면 이 과정은 실제 조사 과정을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실습을 중심으로 한 심화과정임.
-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정부, 교육청 등에서 실제 다룬 사건에 대한 익명화 자료를 학습자료로 제공하여 진정 요지 작성, 조사계획 수립, 조사 방법별 특성 파악, 인권침해 판단과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2개의 모듈별로 한 명의 멘토가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함. 멘토는 학습자들의 질문이 있으면 자신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는 방식의 지원으로 기획됨.

(4) 과정 운영상 유의점

-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기술, 태도 등 인권 역량에 대해 정리하여, 학습자가 취약한 부분과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여 제시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사건 이해에 필요한 정리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위치 등을 정리하여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법률 절차의 규정이나 원리 등 차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특히 형사절차를 인권조사 과정에 준용하는 것은 고도의 법 해석이 필요한 만큼 가급적 자제해 오류가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교육과정 기획 및 설계에 반영할 내용

● 과정 목표 설계의 구체화

- 교육목표로 제시된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직무 활동의 가장 상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 역량을 제시하고 분류하여 교육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인권기구의 정체성 내재화

- 인권조사관의 기능과 기술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태도와 역량적 측면에서 교육 활동 목적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부합하도록 모듈과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함.
- 태도와 역량의 측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인권기구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며

로 실습의 전 과정이 인권기구의 정체성 정립을 목표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업무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습 과정 구성

- 이 과정은 인권조사 업무자를 중심으로 한 과정이므로 조사 과정을 실습하더라도 단계별로 기존 다른 시스템에서의 사건 조사와 구별되는 인권구제 업무로서의 인권조사의 목적,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여러 사회 시스템 중에 이와 같은 인권 시스템이 필요한 본래의 이유에 대한 정립이 필수적이라 보임. 이는 그 업무의 사회적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는가의 문제임. 해당 업무의 사회적 역할, 다른 제도와 변별성에 기반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할 것임.
- 이에 관련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에서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권기구, 인권구제 등과 관련한 모듈을 구성함.

● 법률이 아닌 인권을 기준으로 한 훈련

- 사건분석 시 일차적인 기준으로 법률을 제시하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함. 특히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 정도에서 좀 더 확장된 인권 기준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논평 등 국제인권 문헌에서 제시하는 인권 기준을 최소한으로 제시하여 모듈로 구성함(인권 찾기 모듈 참조).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인권적 분석 방향 제시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권 사건으로 포섭하는 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함.
- 인권 사건인 경우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가해자 응징이 아닌 인권증진의 방향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조사, 판단할 수 있음.

2)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

가) 주요 조사 내용

(1) 교육 과정 개요

- 교육 시간 : 1박 2일 과정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강의, 토의
- 강사 : 해당 분야 전문가
- 참여 인원: 40명 내외
- 교육 내용: 대학인권센터의 역할과 과제, 조사관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 인권적 권리구제의 역할과 지향점, 대학인권센터 인권침해 사건 처리 절차 이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조사 방법, 상담 방법, 진정 요지 작성법

(2) 강좌별 주요 내용

● 대학인권센터의 역할과 과제

- 대학인권센터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여 대학인권센터의 역할과 연결함.
- 대학의 가치와 비전에 인권을 통합시키는 것이 대학인권센터의 역할임.
- 인권적 권리구제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임. 인권적 권리구제는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함. 인권적 권리구제의 목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회복을 지원하는 것임. 대학 구성원의 갈등 사안에 대해 학교 책임자, 대학인권센터,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의 구조와 공동체간 연대 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함.
- 외국 대학의 인권 사안 접근 사례 소개.

● 조사관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

- 대학인권센터의 법적 지위, 업무의 법적 근거와 한계, 조사 업무의 목적, 조사 대상과 범위, 조사절차와 방법에서 지켜야 할 내용, 인권침해 여부 판단기준 등을 나눔.
- 인권적 권리구제를 다루면서 인권적 권리구제는 형사책임, 민사책임, 징계책임 등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적 자력화를 도모하는 것임을 강조함. 대학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집중하기보다 정책·제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함.
- 대학인권센터의 조사 대상과 업무는 인권의 구조에서 생각하여야 함. 사적 관계에 관한 사건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일 때 조사 대상임. 사인 간 갈등, 권익의 문제를 조사 대상으로 포괄할 경우 조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함. 이는 인권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왜곡과 방대한 업무로 인해 인권기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임.

- 인권침해 판단기준은 학습자와 대학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분석하면서 법치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함.

● 인권센터 사건 처리 절차 이해

- 대학인권센터에서 오랫동안 조사 업무를 진행한 강사가 인권침해 사건 처리 절차와 흐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함. 조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됨.

● 인권침해 사건 처리 실전 연습

-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조사 방법, 상담 방법, 진정 요지 작성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짐.

(3) 학습자 분석

● 학습자 특성

- 학습자의 대다수가 신규자임.
- 대부분 학습자가 겸직자였음. 주로 성평등센터, 학생상담센터 업무를 함께 하였고, 총무부, 감사실, 대외협력홍보처 등을 겸직하는 학습자도 있음.

● 학습 동기

- 대학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실무적 도움을 받고 싶음.
- 상담과 조사가 다르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알고 있으나 분명한 차이점을 알지 못함.
-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인권 사건은 다른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더 알고 싶음.
- 대학에서 일어나는 갑질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분.
- 인권적 권리구제와 인권 조사에 대한 이해. 업무를 맡고, 아무런 교육 없이 바로 사건을 맡은 경우가 있었음. 다른 학습자도 자신이 하는 사건조사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였음. 자신이 하는 조사 과정과 결과가 인권의 원칙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
-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이해. 대학인권센터 업무를 한지 1년 정도 되나, 업무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함. 인권센터에서 학생 심리 상담, 성폭력 업무, 인권 관련 사안을 모두 총괄하고 있는데 업무 성격과 방향성, 체계를 잡아야 하는지 고민임.
- 다른 학교 사례를 알고 싶어 함.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원함.

● 학습자 주요 질문

- 학교 구성원이 대학인권센터에 요구하는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인가?
- 대학인권센터 담당자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 업무의 범위는 어디인가? 예를 들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대학인권센터의 일인가?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인권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함.

나) 교육과정 기획 및 설계에 반영할 내용

● 신규자를 위한 과정으로 설계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인권센터 인권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80% 이상이 신규자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규자를 위한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함. 인권의 이해부터 인권적 권리구제의 의미와 역할, 대학과 대학인권센터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성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

●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거나, 업무를 맡고 있으나 인권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학습자들이 다수 있었음. 강좌 첫 시작을 인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구성으로 설계함.

● 대학인권센터의 역할과 인권적 권리구제의 의미

- 현장 강의에서 대학인권센터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 초반에 배치되어 있어 신규 담당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인권적’ 권리구제가 다른 권리구제와 다른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함. 여타 권리구제와 인권적 권리구제의 변별점을 알려줌으로써,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함.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에도 본 내용을 반영함.

● 대학 인권 관련 사례를 통한 인권의 원칙 내재화

- 조사관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강의에서 학습자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 관련 결정례를 분석하며 인권조사관이 유념해야 할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해볼 수 있도록 함. 개발 과정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 관련 결정례를 제시함.



● 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 구축

- 대학인권센터 운영 규정 사례 공유, 대학 인권 교육·홍보·증진사업 사례 공유, 대학 인권 연구 및 제도·정책 사례 공유 등의 모듈을 설계해 타 대학의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함. 교육 진행을 단순 사례 공유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어려움을 드러내고 이에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모함.

4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검증을 위한 조사

가. 조사 개요

〈표 43〉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검증을 위한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전문가 자문단 및 연구심의단 · 연인원 300명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전문가 자문단 : 2023년 11월 6일(월) ~ 20일(월) · 연구심의단: 2023년 11월 15일(수) ~ 12월 10일(일)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한 교육 모듈 및 메타데이터 내용에 대한 인권교육 전문가 자문단 및 현장 의견 파악, 개선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의 타당성 - 메타데이터의 내용이 적절한가(개념의 오류, 논리적 오류 등) · 유용성 - 메타데이터 내용이 모듈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가(모듈의 목표와의 연계성 등) · 현장성 - 메타데이터의 내용이 현장성을 담고 있는가(학습자 현장 반영, 인권 현장 연계 등) · 개선 방향 및 기타 의견 등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진에서 설계한 설문 문항을 웹 기반 플랫폼에 탑재하여 조사 진행(연구심의단) · 서면조사(인권교육 전문가 자문단)
설문유형과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설문지 · 연구진 회의를 통해 조사의 내용과 설문 초안 설계 · 인권교육 전문가 자문 → 최종 설문 문항 완성

나. 전문가 자문단 자문 주요 내용

1) 지방정부 인권조사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주민 참여 및 지방자치 내용 추가 제안

-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와 자치권 실현을 위한 개선 방향 제시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함.

● 국가인권보장체계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내용 추가 제안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견인해 낼 수 있는 잠재력과 직접 민주주의 실천으로서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예를 들어, 서울시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 도

입 등 지방자치 차원에서 실시한 복지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제도화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 제시함.

● 인권 찾기 사례를 통한 권력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 인권 찾기는 규범적 접근이 아니라 사례에 나타난 권력구조, 사회적 맥락을 통한 해석 중심의 강의로 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함.

● 인권의 개념 설명에 있어 층위 조정 필요

- 인권의 핵심 개념으로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외 보편성과 자기 결정권을 넣은 이유를 물음. 보편성은 인권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유, 평등, 연대는 인권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어서 논의 층위가 다르다는 의견이 있었음. 자기 결정권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기보다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함.

● 다양한 활용 콘텐츠 제시 필요

- 활용 콘텐츠에 참고 도서, 관련 논문이나 뉴스, 신문 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한다면 강의 준비가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인권은 사적 관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추가 설명 필요

- 인권이 권리이고 권리는 권리 주체가 권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법적 힘이라는 점, 인권의 주체는 사람이고 인권의 상대방은 국가(지자체 포함)라는 점, 따라서 인권은 원칙적으로 사적 관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인권의 상대방이 국가라는 점과 민간영역을 포함한 국가공동체 작동원리에 인권 가치가 내재하여 있다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 많은 사람들이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명이 중요하다고 밝힘. 이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권 문제이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인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됨.

- 위의 외관상 모순점을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인권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과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 성격과 같이 이중적 성격을 가지며, 주관적 공권으로서 인권은 권리 주체가 권리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인권은 국가공동체 규범체계 바탕에 인권 가치가 깔려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함.

- 인권의 이중적 성격이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국가의 인간 존엄 보장과 사적 자율성을 조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인간의 존엄을 이유로 민간 영역에 제한 없이 개입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일종의 전체주의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임.
- 국가인권위원회나 지자체 인권기구에 접수되는 많은 사건이 사인 사이의 다툼인데 이러한 사건에 인권이라는 잣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적용해서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제한된 조사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척 혼란스러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국가인권보장체계에서 지자체 인권적 권리구제 업무의 역할과 의미 설명 필요

- 지자체 인권구제업무가 국가인권보장체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원칙적으로 지자체 인권기구는 국가인권보장체제의 한 구성 부분이라는 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인권기구가 있음에도 한국 현실에서 완결적인 국가인권보장체계 수립을 위해 지자체 인권기구가 반드시 국가인권보장체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법리적으로 지자체가 국가의 구성 부분이라는 점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국가인권기구가 포괄하기 어려운 지자체 인권 문제(대표적으로 지자체가 해야 하는 주요 업무인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 지자체 인권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이 문제는 지자체 인권기구의 법률적 근거인 인권기본법 입법 필요성과 연결된다는 부분이라고 밝힘.
- 이런 점에서 자유권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국가인권기구와 사회권 문제와 사회권 관련 평등권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지자체 인권기구가 종합되어야 완결적인 국가인권보장체제가 수립될 수 있으며 지자체 인권기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 국가인권기구와는 차이가 있다는 내용과 연관됨.

2) 지방정부 인권교육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공무원이 인권을 침해할 경우와 침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 분석 및 토의 필요

- 공무원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와 인권 침해를 당할 경우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실생활에서 인권 실천을 발견하게 하는 토의식 교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인권교육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교육 내용 구성 변화 필요

- 인권교육담당자가 직접 교육하는 것인지, 교육 설계만 하는 것인지에 따라 강의 내용과 정보 제공이 달라져야 한다고 제안함. 담당자가 직접 인권교육을 진행한다다면 교안 설계 방법, 다양한 교육 콘텐츠 소개와 활용법이 필요할 것이라 언급함.

● 인권교육담당자가 학습자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역량 함양 필요

- 워크숍 형태로 교육할 경우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함.

● 참여자 분석, 과정 목표 설정, 과정 설계 및 유의점에 대한 내용 보완 필요

- 인권교육 담당자의 경우, 참여자 특성에 맞추어 인권교육 과정의 목표를 설정과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 구성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3) 지방정부 인권정책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인권영향평가에서 이해관계자, 공무원의 인권침해와 침해를 당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 필요

- 인권 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에 있어 ‘이해관계자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공무원이 인권침해할 경우와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실생활에 반영될 방안을 제시함.

● 행정 전반을 인권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

- 정책 담당자의 경우, 인권영향평가뿐 아니라 시 정책의 전반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함. 공무원 사회의 부서별, 담당자별 칸막이 현상이 매우 심한 만큼 그 지점을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함. 현재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데 모듈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행정이 시민을 바라보는 관점, 시민의 역할, 시민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점검하는 모듈 필요

- 시민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민의 역할,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는 시간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함. 시민을 언급하고 인권 거버넌스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시민의 문제 제기를 악성 민원인으로 쉽게 분류하는 문화가 공무원 사회에도 심각한 상황에서 더 예각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힘.

4)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대학 내 인권침해 예방과 학생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모듈로 구성할 필요
 - 대학 내 인권침해 예방과 대학생들의 인권 의식 향상할 수 있는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대학생들의 좌절과 갈등, AI와 공존하는 인간과 미래 교육 주제 제안
 - 인권교육 주제로 대학생들의 좌절과 갈등, AI와 공존하는 인간과 미래 제안함.

5) 「기업과 인권」 업무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의견 사항 없음.

6)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장애인 분야

- 인권을 분절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과정 체계 조정
 - ‘인권의 이해’에서 곧장 ‘사회권’으로 넘어가는데, 장애인, 노년, 아동의 인권이 ‘사회권’에 한정되지는 않고 있음.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해도 ‘자유권’ 관련 이슈들은 함께 제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기함. 예로, 시설 내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있음. 권리 목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속에서 권리의 통합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련 국제인권협약을 다루는 교과목에서 다루어지기도 하겠지만, 현재의 흐름으로는 사회복지는 사회권 관련 영역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낳을 수도 있는 교과목 구성 흐름이라는 점을 지적함. 인권의 이해 → 권리의 통합적 이해 → 장애인/노인/아동의 인권 적용(국제인권협약, 최종견해 포함) → 사회복지와 인권 →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과제 흐름으로 구성해야 할 것을 제안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후 한국 사회의 장애인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 한국 장애인 정책의 변화와 장애인 인권 운동, 인종주의와 장애, 장애 당사자주의와 후견인 제도, 탈시설의 자립, 의존, 돌봄 등의 관점 고찰과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정책 변화와 향후 과제를 통해 공무원들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식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쟁점 토론 주제 변화 필요

- 사회권의 쟁점 모듈에서 제시된 ‘쟁점 토론의 주제’가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자유권과 사회권을 분리하는 관점을 지금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쟁점이 던져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 중에서는 그런 고민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함.

● 장애에 대한 교차적 접근 필요

- 장애인을, 장애를 중심으로만 이해하거나 단일집단으로 보는 관점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장애인 이동권 하면 신체장애인 중심으로만 판단하다 보니 감각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이동권이 고려되지 않는다거나 장애아동은 장애 정책에도, 아동 정책에도 소외되어 있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많음. 교차적 관점에서 다양한 차별과 비장애인 중심주의를 엮어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훈련하는 시간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적극적 자유로서 사회권 논의 필요

- 사회권 발전의 역사에서 적극적 자유로서의 사회권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제안함.
- 해당 논의 사항은 인권의 이해 교과목 모듈에서 내용적으로 반영하여 설명하고 있음.

7)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 -노인 분야

● 노년을 나이가 아닌 욕구에 기반한 권리로 이야기할 필요성

- 노년의 needs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면 시기별 적절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노동, 여가, 공동체 활동 등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자기 돌봄이 가능한 노년기와 의존적, 타인 돌봄이 필요한 노년기로 구분해서 강의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기함. 즉, 나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needs에 따른 권리를 이야기할 필요성을 이야기함.

● 노인의 특성을 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

- 노인의 ‘특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 노인이라는 단일집단의 ‘특성’이 과연 규정될 수 있는 것인지, 나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본질적 특성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의사를 밝힘.
- 노인 분야에서도 노인을 단일집단으로 보지 않는, 교차적 관점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노인 특성이란, 자칫 노인 정체성을 하나로 획일화시키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 검토를 제

안함.

● 노인 돌봄을 가족의 문제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 변경 제안

- "노인 돌봄은 가족에게 어떤 문제를 주는가?"라는 질문도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임. 부양자 중심 관점의 질문이기도 하고 노인 돌봄을 가족 문제로만 해석하는 문제도 생길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질병과 쇠약함, 나이 들과 같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조건을 사회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가 핵심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함.

8)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아동 분야

●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변화된 제도와 정책 점검과 개선점 모색 필요

-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변화된 아동 정책과 제도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개선된 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토론했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당사자가 참여 방안을 찾는 시간 필요

- 지역 아동센터의 역할, 청소년(소녀)의 집 / 청소년(소녀) 센터 등 아동 관련 기관의 당사자 참여를 높일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청소년들을 대상화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체로 세우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힘.

9) 군 인권교육가(군인권교관) 역량강화 과정

● 군인 당사자의 힘든 점에 대한 개선방안 토의 시간 필요

- 군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의하는 시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 능력주의와 공정성 주제와 그 뒤에 가려진 국가의 책무에 대한 내용 필요

- 20대 남성을 지배하는 능력주의와 공정성에 숨은 국가의 사회 보장 의무 회피, 공정은 공평한가, 공정의 배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인권적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추가 제안

- 집단생활을 하는 군인이기에 인권적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밝힘.

● 군 인권 선사례 소개 필요

- 교육 내용으로 군대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긍정적 변화와 병사를 존중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선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제안함.

● 퍼실리테이션은 인권교육과 다른 촉진 기술

- 군 인권교육, 경찰인권교육에 퍼실리테이션이 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를 수 있는 내용이라는 하나 인권교육가와 퍼실리테이터의 차이를 분명하게 짚어주어야 한다고 밝힘. 인권교육과 다르게 퍼실리테이션은 하나의 촉진 기술이기 때문임.

● 군인의 업무를 생각할 때, 군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의견

- 군대와 인권 내용을 보완할 것을 제안함. 군 인권교육에서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은 적(사람)을 죽이는 것을 과업으로 하는 군인에게 인권을 가르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점임. 이 모순점을 조화롭게 설명하는 것이 군인들(특히 지휘관)의 인권을 받아들이는 데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심리적 방어기제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함. 이 쟁점에 대한 조화로운 설명으로서 하나는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전쟁은 방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네바협약 같은 국제규범이 적이라고 하더라도 반인도적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명을 살상하는 무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인권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임. 여기서 더 나아가 적이라도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가 강군인가 나치 군대 같이 인권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인가에 대한 쟁점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함.

● 군 조직 체계 안에서 인권보장 책무자는 누구인가에 정리 필요

- 정리가 필요한 쟁점으로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로 사병들에 대한 인권보장 문제를 지적함. 군 인권교육 현실을 보면 이 문제는 사병들끼리(주로 고참과 신병 사이) 서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정작 중요한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는 사라지고 있음. 대표적으로 신병을 괴롭힌 고참이 과연 인권보장의무를 부담하는 자인가 하는 문제가 있음. 신병과 고참 사이 관계는 법적으로 지휘 복종의 권력관계가 아니므로 고참이 인권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존재가 아니며 사실적으로 힘이 센 자에 불과하며 둘 관계에서 인권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존재는 국가라는 것에 대한 강조 필요하다고 봄.
- 더 나아가 중간 간부들의 경우 사병과의 관계에서는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가지지만 고급 간부들과의 관계에서는 기본권 향유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 존재라는 점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러한 이중적 지위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인권이라는 가치가 군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함.

●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군 조직 특성상 평등 주제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제안

- 무력 충돌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군조직의 특성상 조직에서 위계 질서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평등을 강조하는 인권을 군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이 문제는 조직 작동원리로서 위계와 인간의 존엄에서의 평등이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연결할 것을 제안함.

10) 경찰 분야 인권교육가 역량강화 과정

● 자치 경찰의 역할과 책무 인식,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시민의 인권 보장

- 생활 밀착형 인권 옹호자로서 자치 경찰의 역할과 책무를 인식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돕도록 하자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 자치 경찰 제도 도입을 통한 생활 밀착형 인권 옹호자로서 경찰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사회적 소수자 수사 규칙의 이해와 실무에 적용 관련 내용 필요

- 인권 수사 규칙 내용 소개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인권 수사 규칙(장애인, 이주민 통역권 포함)의 이해와 이러한 수사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인권침해 내용 소개 등 교육 내용이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함.

● 동료 인권 지킴이로서 역할을 이야기하는 동료 프로그램의 실질화

-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망 사건 이후 도입된 동료 프로그램을 실질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동료 프로그램은 동료 감시자가 아닌 동료 인권 지킴이가 되는 것을 의미함.

● 집회, 결사의 자유 및 생명, 복리, 재산권 보호라는 경찰의 임무 강조

-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 강조 및 사회계약론을 통해 경찰의 임무는 인민의 생명, 복리, 재산권 보호에 있다는 것 강조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음.

● 경찰의 인권을 보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교육 시간 필요

- 교육 중 트라우마에 고통받는 경찰을 위한 인권 보호 방안 토의 시간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함.



● 인권침해 사례를 찾고, 원인과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필요

- 인권침해 가해자로서의 경찰과 피해자로서의 경찰 사례 찾기 등의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교안이 좀 더 많으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11)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

● 우등생/모범생 이분법을 넘어 학생의 잠재력을 볼 수 있게 하는 교육 내용 제안

- 우등생/모범생 이분법에 대해 말대꾸의 역할 등을 소개하여 자기 주장하는 학생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안함.

● 모두가 안전한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 교육 내용 제안

- 모두가 안전한 교실 만들기로, 교실에서 비가시화된, 배제된 학생들 찾기, 현재 모습, 낙인의 원인, 해결방안 모색, 이주 배경,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현황 검토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 시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12) 지방의회 의원 인권리더십 과정

● 주민 참여 관련 해외 사례 소개

- 주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실험에 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할 것을 제안함. 스웨덴, 핀란드 등 해외 시민교육센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실시하는 강좌 내용, 시간, 교육 기관 등을 소개하고 지자체가 인문학, 어학, 철학, 예술 등을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설계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는 교육 내용 구성을 제시함. 시민 학습과 민주주의, 시민 학습과 인권과의 연계점 찾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을 냄.

다. 연구심의단 적합성 조사 주요 내용

1) 지방정부 인권조사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인권조사 매뉴얼 관련 학습시간 확대

- 학습 시간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단순한 조사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단계별 유의 사항과 각각의 현장에서 고충을 나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별로 매뉴얼과 다르거나 변형된 형태로 조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 조사계획 수립 교육 방법에 대한 제안

- '인권조사실습 1 - 조사계획 수립' 교과목 구성에 동의하지만, 실제 어떤 형식으로 교육이 가능할지 고민스럽다고 밝히면서 진행 방식을 실제 조사 과정과 같이 조사관이 조사 진행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 후 심의를 받도록 진행하는 걸 제안함. 2인 1조 형태로 15~20개의 사례를 미리 준비하여 조별로 사건을 선택하도록 하여 사건별 조사를 진행하고 기록하고, 조원 2명이 상의하여 맡은 사건에 관한 조사 진행(교육과정 중 조별로 발표하거나 논의 가능), 3~4개 조를 한 모둠으로 하고 '인권조사실습 2 -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교과목에서 모둠 내 토론을 거쳐 조별로 조사 결과보고서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함.

● 조사 결과보고서 피드백 방식에 대한 제안

- 조사 결과보고서 피드백은 위원회(보호관 회의) 심의 과정처럼 조별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른 참가자와 전문가가 질의하고 응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사 결과보고서의 보완할 점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안함. 활용 질문에 인권적 권리구제의 의미와 역할 활용 질문을 적용해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조사계획 시 인권침해 구조적 원인과 문제 파악 교육내용 구성

- 조사계획 수립 시 인권침해 발생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생략되면 개별사건에 대한 구제로 제한되고, 인권침해에 따른 권고 사건에 대한 내용도 소극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2) 지방정부 인권교육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인권교육 기획, 공유 및 피드백 관련 학습 시간 확대

- 인권교육 담당자는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복지기관, 각종 재단 공사 등 산하 기관 및 보조금 단체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인권교육 기획자로서 학습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교육 방향 설정부터 강사 섭외를 진행하는 실습 단계가 인권교육 기획기와 인권교육 기획안 공유와 상호피드백으로 2회기만 진행되는 부분이 아쉬움. 지역별 교육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인권의 역사와 차별 내용 분리하여 구성할 필요성 제시

- ‘모든 사람’과 인권의 역사에서 차별 문제와 인권의 역사 부분을 함께 설명함. 두 부분 모두 인권 이론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정 정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모듈 명은 인권의 역사에 대해 학습할 것 같으나, 차별금지법이나 차별 사유 등에 관한 내용까지 60분 안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 제시

- 누가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가의 활용 질문 중 “층간소음으로 인한 인권적 피해에 있어 인권침해자는 누구일까”는 질문이 예시라고 하더라도 인권 보호와 실현에 대한 학습에서 적절한 질문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힘. 물론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 등 생활권 침해 예방을 위해 건축법과 분쟁 시 해결을 위한 법과 정책의 시행은 필요하고, 인권 보장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정부에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상호 간 도덕, 예의, 더 나아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responsibility) 또한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사례 추가 수정 및 보완

- 인권교육 기획하기, 인권교육 기획안 공유와 상호피드백 활용 콘텐츠에서 제시된 금천구 사례는 별도의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사례의 내용은 논문이나 발표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시정할 것을 요청함.

● 인권교육과 인접한 교육의 차이 및 유의점 제시

- 인권교육의 의미와 역할(왜 인권교육인가?)에서 인권교육, 인성교육, 권익교육, 인식개선교육, 예방교육까지 들어가면 더 좋을 것임. 인식개선교육은 소수자를 대상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고, 예방교육은 ‘무엇을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중심임. 금지 가이드라인식 교육은 무엇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과 구별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교육 연계 제안

- 한국에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되어 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17개 목표와 인권교육을 연결한다면 직무담당자별 인권교육 내용이 더 현장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학습자가 환경, 경제, 사회 전반이 인권에 기반

하여야 더 나은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제시함.

3) 지방정부 인권정책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정책업무 담당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과정

- 정책업무 담당자의 명확한 정체성 인식을 강조하는 내용의 필요성을 제시함.

● 인권영향평가와 여타 영향평가와 공통점과 차이점 제시

- 인권영향평가가 성별, 갈등, 환경, 교통 등 여타 영향평가를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목적(취지)과 비교 사례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음. 담당자들과 공무원들이 인권 행정 시스템 설계와 작동 시, 가장 헷갈리고 여타 평가들과 비교하여 평가절하하며, 도입 시 저항이 제일 큰 것이 인권영향평가일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됨. 예로, ‘인권영향평가는 여타의 영향평가들과 무엇이 같고 다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지역사회 회복력 차원의 접근

- 위기 상황과 우리 지역 인권문제 대안 모색과 관련하여 최근 시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개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코로나 등 사회재난 이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문제 대안 모색을 지역사회 회복력(Resilience)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대응이 한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함. 지역사회 회복력 점검을 위해 시민들에게 관련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한 지역공동체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임.

4)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대학 내 인권침해 예방과 학생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모듈 구성

-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역량강화 과정’은 인권교육원 1차연도에 운영할 대학인권센터 담당자를 위해 설계한 것이므로 학생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모듈은 개발하지 않음. 그러나 대학 인권센터의 역할과 과제, 인권적 권리구제, 조사, 인권 교육·홍보·증진사업 사례 공유에서 대학 내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과 방법을 제시함. 특히, ‘대학 인권 교육·홍보·증진사업 사례 공유’ 모듈에서 대학 내 인권문화 확산에 대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반영해 간접적으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역량강화 과정’은 인권교육원 1차연도에 운영할 대학인권센터 담당

자를 위해 설계한 것이므로 학생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모듈은 개발하지 않음. 그러나 대학 인권센터의 역할과 과제, 인권적 권리구제, 조사, 인권 교육·홍보·증진사업 사례 공유에서 대학 내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과 방법을 제시함. 특히, ‘대학 인권 교육·홍보·증진사업 사례 공유’ 모듈에서 대학 내 인권문화 확산에 대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반영해 간접적으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 대학과 인권센터의 역할은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고 지향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 대학(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역할, 인권기구로서 대학인권센터의 역할 모색 부분은 대학 담당자로서 생각하는 대학 인권기구의 역할과 목표, 문제점 혹은 역할 모델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충돌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눈 후 올바른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 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다고 밝힘.

● 대학인권센터의 역할과 방향성 보다 실무 위주의 교육내용 구성 필요

- 대학인권센터 운영과 업무 담당자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대학은 다양한 설립 형태(국립, 사립 등)와 규모 및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른 편차가 상당함. 2022년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 되긴 하였으나 설치 및 운영형태가 각각 다르고, 업무 담당자의 처우는 크게 열악하여 과반수 이상이 2년 계약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임. 이러한 상황에서 늘 부족한 예산 여건과 당장 접수되는 피해 신고 사건처리에도 급급한 마당에 대학인권기구의 지역사회 내 역할이나 인권증진 사업계획 및 인권연구 등을 진행할 여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임. 대학 내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교육하게 될 프로그램인데 내용이 과도하게 거시적이고 이상적이면 현업에 반영이 어려워 학습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밝힘.
- 기본적으로 대학인권센터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인 만큼 기본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현장에서 직접 대입이 가능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함.
- 현직 담당자로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그간 담당했던 성희롱·성폭력 분야에서 주제를 확장하여 인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 2)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규정 마련, 조사 기법과 절차, 위원회 운영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 3) 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업데이트(예방 사업 등)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2박 3일의

프로그램 운영안에서 상대적으로 대학 현장의 업무와 직접적이지 않은 정보들을 다루는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인권의 이해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실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세팅하는 것도 제안함.

● 성희롱·성폭력과 인권을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내용 필요

- 성희롱, 특히 스토킹 등 대학생 교제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조사, 판단의 내용도 언급 필요.

● 사전 수요조사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구성

- 대학별 인권센터 운영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사전 수요조사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제안을 함.

● 교육과정 참여 전·후 인식 변화 확인과 과정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 필요

- 담당자로서 그리는 대학인권센터의 모습을 확인하고 교육 전·후의 본인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을 제시함. 모두 교육을 진행함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공통 질문이 필요함.

시작 전 공통 질문(예시):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대학인권센터의 모습,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 인권센터는 어떤 기구인가?,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 인권센터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 인권센터의 필요성과 본인은 어떠한 관점에서 대학 내 '인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을 제안함.

- 교육을 마무리할 때 각자가 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본인이 교육전 후의 인식 혹은 지식의 차이점과 이후 적용 방안 등을 나누는 것을 제안함.

●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질문 구성

- 인권의 이해 모듈의 활용 질문을 대학 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예시로 넣어 대학 담당자로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질문 구성을 제시함.

예시: 1) 시험을 실시하는 데 있어 장애 학생의 편의제공(시간 추가, 자료 대체 등)과 같이 비장애학생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일부 주장이 있을 때 이것을 인권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2) 학생이 대상자로 포함되는 규정을 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었지만, 규정의 정당성과 구조적 완결성을 내세우는 대학 본부의 주장에서 보장되지 못한 인권은 무엇인지?

● 조사뿐 아니라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 과정으로 확대 필요

- 대학에서의 인권조사 절차의 이해, 대학에서의 인권조사 방법의 이해는 해당 부분인 '인권



조사'에서 조사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 예를 들어 '조사의 정의 혹은 특징'들이 들어간 부분은 매우 좋다고 평가함.

- 추가로 현장 담당자로서 항상 대학인권센터 조사 과정 A-Z까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강의 혹은 사례 분석을 한다면 총 네 영역, '신청·접수-조사-위원회 진행-종결(결정문 작성 및 사후 처리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참가자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임.

● 기존 인권교육에 대한 점검 및 지역사회와 연결 방안 찾기 필요

- 대학 인권 교육·홍보·증진사업 사례 공유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이 속한 대학인권센터에서 혹은 학내에서 시행 중인 인권교육의 비교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또한 현재 대학에서 진행 중인 인권교육이나 이를 표방한 여러 형태의 사례들(캠페인, 공모전 등)을 공유하고 이것을 학내외로 어떻게 연계해 나갈지에 대한 토의하는 방식을 제안함.

● 교육 주제 추가

- 대학생들의 좌절과 갈등, AI와 공존하는 인간과 미래에 대한 교육을 추가 제안함.

5) 「기업과 인권」 업무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모듈 명과 학습목표의 일치

- 모듈 명과 학습목표의 일치할 것을 권함.

● 참여형 강의의 경우 적정 시간으로 조정

- 참여형 강의의 경우 60분 부족하여 적정한 시간 분배를 요청함.

● 인권영향평가와 구제에 대한 내용 필요

- 기관 운영에 관한 인권영향평가와 구제조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야 함.

●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해 후 인권 이슈 찾기 진행

- 세부 인권 이슈를 찾기 이전에 공공기관의 인권적 관점의 존재 이유부터 파악할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반복되는 내용 재구성

- 유사 내용이 반복되어 인권의 이해 영역에서 다소 사례나열식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음.
「기업과 인권」 부분에서도 중복되는 지점이 보여서 순서 조정을 제안함.

● 인권경영체계 구축의 의미

- 인권 실사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인권경영체계 구축이 갖는 의미 탐색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함.

● 기본권 용어 사용 주의

- 기본권에 대한 용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사례 공유를 개별 모듈로 기획하지 않고, 교육내용 중 다루는 방식 제안

- 사례 공유의 시간이 좋지만, 각 모듈에서 연결해서 소개해주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음. 사례 공유와 Q&A는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걸 제안함.

6)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장애인 분야

● 사회복지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과 사례 중심의 교육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에서 국가의 책무 이행자로서 사회복지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쟁점 토론 사례를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사전에 현장 인권 딜레마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교육방식 제안

- 학습자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딜레마 사례를 사전 제출하도록 하고, 사례를 유형화하여 권리 협약 또는 사회권 등 인권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현장의 행정제도와 전달체계에서의 실질적 실천 방안(제도 개선, 조례 정비, 규정 보완 등) 정리하는 것도 방법을 제안함.

7)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노인 분야

● 노인 인권에서 돌봄 외 권리 역시 중요

- 노인 인권에서 돌봄이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권리, 일할 권리,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 등도 중요함.

● 규범 중심의 교육은 노인 인권을 먼 이야기로 느끼게 해 사례와 결정례로 보완 필요



- 노인인권권리협약이 없고 비엔나 국제고령화 행동계획이나 마드리드 행동계획은 원칙적인 부분이 많아서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다루면 노인 인권이 현실보다 더 멀리 느껴짐. 사례나 권고 등을 중심으로 다루는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음. 노인 분야는 권리협약이 아니라 원칙을 제시한 것들이라서 국제인권규범으로 가면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흐를 수 있을 것이라 우려스러움을 표현함.

● 돌봄권 논의에서 사람의 연결성을 다루기를 제안

- 돌봄 이야기할 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함께 다뤄주길 제안함.

● 노인 인권의 이해를 강조할 수 있도록 앞 순서로 조정 필요

- 현장 적용과 강의를 듣고 이를 실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인 내용이 인권의 의미,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에 대한 요구, 의무 기준, 인권 실천의 역할과 자세 등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시민이나 수강생들이 인권에 대한 교육을 들으면서 기본자세가 인권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와 인지, 수용성을 담보로 하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측면이 갖는 각인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함.
- 노년에 대한 이해와 노인의 인권에 대한 개념과 설명 과정은 상대적으로 뒤에 배치되어 있어서 인권의 이해 이후 바로 노인에 대한 개념으로 이어야 할 것 교육의 구성상 배치, 유용성 측면에서 앞부분에 설명이 되고 세부적인 교육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함. 이는 이후의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노인을 전제로 한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고 현장 실무자 중심이 될 것 같음.

●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워크숍형, 활동형 교육 제안

- 운영의 현장성 측면에서 워크숍 방식의 교육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지금 어르신 인권 중에 배제되거나 사회적으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노인 차별 문제 등을 학습자가 찾아보고 실태를 인식하게 하는 과제 중심, 과업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함. 현재 어르신 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이를 발표하여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을 제시함. 예를 들어 어르신 성인지 관점의 내용,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교육시설,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측면의 인권 실태, 어르신 편견과 선입견, 어르신에 대한 고정관념,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어르신 대응과 접근성 등 세부적인 논의와 고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권함. 그런 측면에서 “인권 기반 실천의 과정”은 효과적인 모듈임. 이를 워크숍 방식으로 추진하면 질의, 응답,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되어 좀 더 생각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이루어

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포함.

● 노인 인권에서 자립 측면 추가 제안

- ‘돌봄’과 인권에 대한 내용인데, 어르신 사업의 상당 부분이 돌봄으로 운영되고 정책화되어 있다 보니 이 주제어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너무 돌봄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자립’ 측면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돌봄은 보호적 측면의 성격이 크고, 그래서 이를 잘 보호하기 위해 수동적인 인권 활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자립은 온전히 사회인으로, 선배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시킬 인권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으로 가면 능동적인 실천의 인권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인권 보장을 위한 책무 주체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가를 지방정부로 변경할 것을 제안

- ‘국가책무로서 노인 인권 보장’ 부분을 ‘우리 지자체의 노인 인권 업무 점검하기’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각 참여 담당 공무원, 참여자 측면에서 현실적인 자기 지자체의 변화 과제를 숙지하고 이를 위한 개선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국가는 의견 제안 수준에서 그치는 느낌이 있고 막연하지만, 지자체는 해당 과제로 숙지하고 각자의 업무 변화로 이어지는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안함.

● 동료 간 배움을 위해 사례 공유 및 토론과 피드백 시간을 늘릴 것을 제안

- 구성원 간 사례 공유 및 토론 발표 시간, 강의자에 의한 적절한 촉진 피드백 시간을 조금 더 추가하면 상호 배움의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인권의 이해 시간을 줄이고, 쟁점 토론 시간을 확대할 것을 제안

- 인권의 이해 시간을 줄이고, 쟁점 토론의 시간 배정을 늘려 참여형, 토론형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주제별 강의 참여자의 토론 시간이 적절한지 검토를 요망함.

8)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아동 분야

● 아동 인권을 자유권 다른 권리와도 연결할 것을 제안

- 사회복지와 인권 교과목에 대한 의견으로, 아동 인권은 사회권에만 국한되지 않음.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되고 자유권 규약에 언급된 ‘출생등록, 가족 지원에 대한 권리, 탈시설을 비롯한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정치적 참여 등’도 아동의 권리임. 특별히 아동권리협약은 종전에 자유권, 사회권의 이분법적으로 나뉘지던 인권을 통합한 최초의 국제법이라는 점에 의미

가 있으며, 따라서 아동 인권의 이해에 선행되어야 할 인권 개념 구성이 사회권에 특정되는 측면은 다소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힘.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일 경우, 아동보호 체계 업무 수행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아동의 주체성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더욱 이 (아동의) 자유권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제안함. ‘인권의 역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면, 아동권리협약 이전의 국제인권규범 역사에 초점을 두는 방안이 아동권리협약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현함.

● 지방정부 인권보장체계와 아동 인권 연결 강조 필요

- 지방정부의 인권보장체계는 특별히 아동 인권의 이해와 실천에 있어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 범국가 단위의 아동 참여와 입법, 행정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삶에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무이행자이고, 대부분의 아동정책이 지방이양 사업이며, 최근 아동친화도시 등으로 지방정부 각자의 도전과 기회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함. 아동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아동인권에 관한 별도의 모듈을 추가하거나, 해당 모듈에 인권기본조례 외에도 아동·청소년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ombudsman 같은 사례와 구조 등이 다뤄지면 좋겠음.

● 아동 인권을 확장할 수 있는 학습목표 설정 제안

- ‘아동 인권침해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수정 의견으로, 전쟁과 빈곤, 노동이라는 ‘아동 인권 침해’에 주목하며 국제규범이 발전된 것도 맞지만, 학습의 주요 내용으로 ‘아동 인권이 논의된 사회적 배경과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로 제시할 때 좀 더 확장된 시각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시함. 아동학대 사건과 사망 사건이 있어야,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있어야, 출생 미등록 사례가 있어야, 아동 인권 규범이 발전된 무책임한 관행을 상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음을 밝힘.
- ‘아동 인권 패러다임을 적용’은 ‘아동 권리접근법을 통해’로 기술 수정 제안함. 앞서 인권의 개념에서 ‘당사자의 자력화’를 다루었던 만큼, 아동 권리접근법에 기초하도록 안내한다면, 아동권리 실현에 목적을 두어 문제를 분석하고 의무 이행자의 책무를 이행하는 방안임을 숙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활용 질문 수정 검토 의견

- 쟁점 토론 주제로 제시된 문장이 반인권적인 측면이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설정하신 취지는 이해하지만, 질문이 너무 직관적이지 않을까 우려를 표함. <예: 1) 훈육을 위한 제한적 처

별은 필요한가? 2) 청소년범죄 처벌 연령을 낮추면 범죄 청소년과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가? 3) 더 어린 연령의 아동·청소년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현재 18세) 4) 아이들의 학습에 경쟁은 도움이 되는가? 5) 이주 아동도 의무교육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용을 보장받아야 하는가? 6)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은 반드시 필요한가?》 추가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교육 대상일 경우, 선거권, 학습, 이주 아동 교육,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현저히 부족할 수 있으므로 출생등록, 탈가정청소년, 아동보호체계, 학대 피해아동 대응, 입양, 저소득가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 차별과 지원 등을 주제를 다루는 등으로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함.

9) 군인권교육가(군인권교관) 역량강화 과정

-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스브레이킹 활용 질문 추가·보완 의견
 - 아이스브레이킹도 참여자가 야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목하는 것도 좋겠음. 야전 교육 참여자가 다수이므로 학습과 연습의 병행 차원이면서 참여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과정 학습자의 참여 동기에 따라 인권교관 역할 내용 조정 필요
 - 인권교관의 역할에서 사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관 참여자들이 자의적 참여일 경우와 타의에 따른 참여를 고려한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힘. 학습자 특성, 참여 방법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이해 토론 마무리 정리 보완 필요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이해 토론을 진행한 후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추가적인 내용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군 인권 사례분석 훈련-제한의 원칙은 군인권교육에서 필요한 내용
 - 군 인권 사례분석 훈련-제한의 원칙은 현장성, 실제성을 고려한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인권교육 구조 설계와 질문 설계 병합, 개인별 시연 및 피드백 추가 방안
 - 인권교육의 구조 설계와 질문 설계를 병합하고 개인별 시연 및 피드백 시간을 추가하는 방향을 제안함. 참여 방법론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구조 설계까지 기본과정에서 다루기엔 인

권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교관에게는 어렵고 부담으로 느껴질 것 같다는 의견임.

● 군 인권교육 여건상 온라인 인권교육 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움

- 촉진기술(러닝 퍼실리테이션)과 인권교육 방법론 등은 개별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하겠지만, 교관들이 야전에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기술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기술이 교관에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인권교육 개발 방법론도 심화 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교관 참여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 줄 것임. 학습자 훈련 난이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10) 경찰 분야 인권교육가 역량강화 과정

● 3일 차에 집중된 사례토론을 분산할 것을 제안

- 경찰 인권강사의 보수교육으로 매우 체계적임. 다만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분석과 결정례 사례토론 방법이 유사해 보이고 사례토론이 3일 차에 편중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분석을 2일 차로 이동하는 등 사례토론을 분산할 필요성을 제기함.

● 경찰 현장강사 폐지로 명칭 변경 필요

- 경찰 현장강사는 폐지 예정으로 현장강사라는 명칭만 인권강사, 인권교육강사 등으로 변경할 것을 권함.

11)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

● 과정이 분절적이기에 유기적인 구성 필요

- 학교관리자의 교내 인권 문제 대응능력은 매우 중요함. 17시간에 달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계속된 고민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개발된 과정은 각 교과목이 분절적이라고 평가함. 예를 들면 마지막 날 인권리더십 실천 전략의 과정을 위해 첫날부터 과제를 제시하고 모둠활동 등을 통해 집단지성의 지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교과목들의 연결성을 어느 정도 구성하는 것을 제시함. 또는 인권리더십 실천 전략 3차시를 2차시 정도로 줄이고 첫날과 둘째 날 마지막 차시를 관련 활동 시간으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임. 이때 명사 특강은 첫날에만 3차시로 운영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표함.

● 현장 탐방 보다 학교 현장과 관련된 사례 공유가 적합하다는 의견

- 민주인권기념관 현장 탐방/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의 현장이 민주인권기념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힘. 교육원 예정 부지인 용인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학교 현장과 관련된 사회적 인권상황에 잘 대응한 현장 사례를 나누는 게 운영의 실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함. 예로, 초등의 경우 늘 권리 보장이 잘되고 있는 학교관리자 초청 또는 해당 학교 방문 등을 제안함.

● 과정 초반에 학교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공유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 제안

- 학교관리자의 입장에서 인권 경영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앞부분에 배치된다면 동기유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초등과 중등 과정 구분 필요

- 학교 현장은 초등과 중등이 매우 다르기에 나눌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학점제 연수와 다른 과정 시간 배정

- 보통 학점제 연수 차시가 1학점 기준 15차시인데, 17차시라는 전체 시간이 애매하다고 밝힘.

● 교육 운영에 대한 제안

- 서울 또는 수도권 학교관리자 대상 연수 운영이라면 숙박형보다는 매주 3차시씩 5주간의 운영으로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내실 있게 하는 방향을 제안함.

12) 지방의회 의원 인권리더십 과정

● 과정 구성 및 내용 적절

- 과정 설계 및 메타데이터 내용 적정하다고 평가함.

라. 교육내용 구성(메타데이터) 반영사항

1) 지방정부 인권조사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인권은 사적 관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 추가 의견 반영

- 인권의 개념과 구조 안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 과정 공통인 인권의 이해 과목 내 관련 모듈을 구체화하였으며, 2) 여타 모듈의 메타데이터 구성 시에도 사적 관계의 문

제를 인권 문제로 오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면서 모듈과 기본교재 내용을 개발함.

-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인권 사건으로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의 대학인권센터와 마찬가지로 논의의 정리가 필요함(앞의 페이지 적시할 것).

● 국가인권보장체계에서 지자체 인권적 권리구제 업무의 역할과 의미 설명

- 인권보장체계로서의 국가와 지방정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누가 인권을 실현하는가' 모듈, 지방정부의 인권보장체계를 담은 모듈, 인권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모듈 등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개하도록 개발함.

● 기타

- 국가의 인권보장체계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주민참여 등의 내용 역시 해당 모듈 내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시함.
- 이외 전문가 자문단의 인권 찾기, 인권 개념 층위 조정, 다양한 활용 콘텐츠 제시 등 제안 내용은 메타데이터에 반영하여 교육 운영상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연구심의단 제안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 시 참조할 사항으로 기록하되, 조사계획 수립 시 인권침해 발생 원인을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메타데이터에 반영하도록 함.

2) 지방정부 인권교육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담당자의 교육 내용 분석과 정리 역량에 인권의 개념과 구조 이해는 필수

- 내용적 해석 및 정리 역량은 교육과정의 훈련 프로그램에 관련 모듈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인권의 이해 교과목의 모듈을 통해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정확하게 탑재할 때 길러질 수 있는 역량이라는 점에서 과정 설계에서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인권 주체성과 참여(Engagement)와 인성의 틀 구분

- 연구심의단 의견 중 중간소음을 예시로 한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음.
- 인권교육의 취지가 상호 간 도적이거나 예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님. 여기에 그치는 것은 인성의 패러다임이라는 취지이고, 인권의 패러다임에서는 여기서 나아가 관련한 국가체계의 역할을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시민성의 역할이 필요함.

- 이에 인권의 이해 교과목 중 인권적 시민성인 앙가주망(engagement)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모듈을 설계함. 다만 예의와 인성을 인권에서 있어 개인이 가지는 인권적 사명이라고 호명하는 것은 개념의 착란을 가져올 수 있어 교재에서 이러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였음.

● 기타

- 학습자 분석에 기반한 인권교육 과정 목표 설정과 운영 강조 메타데이터 반영
- 금천구 사례와 관련한 정보 등 수정 반영
- 인권교육과 인접 교육의 차이 및 유의점 제시 부분은 메타데이터에 반영
- SDGs와 관련해서는 인권 찾기 모듈에 연계하여 제시함.

3) 지방정부 인권정책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인권영향평가의 의미와 역할 강조

- 타 영향평가와의 변별점은 무엇보다 행정 전반의 본래 목적이 인권 달성이며, 이를 위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점검과 진단의 프로세스로 운영되어야 함. 지방정부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모듈에 대한 기본교재에서 이러한 내용을 강조함.

● 공무원의 위치성, 시민과의 관계 등

- 관련 모듈 기본교재에 공무원의 인권적 위치성-시민과의 관계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의무 실행자이고, 반대로 국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인권의 주체-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시함.
-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앙가주망(참여하는 시민 주체성)에 대한 교재 내용을 제시하여 시민의 인권 주체성 및 참여의 의미를 부각함. 이는 인권도시에 대한 교육 내용에서도 시민의 주체성 등을 해외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음.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지역사회 회복력 차원의 접근법 등 반영

- 연구심의단이 제시한 지역사회 회복력(Resilience) 차원에서의 접근법, 관련해 학습자들에게 질문하는 방식 등을 메타데이터에 반영함.



4)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대학 및 대학인권센터의 역할과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의 필요성

- 대학인권센터의 현황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 구성 필요에 대해서 현재 대학인권센터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인권업무에 대한 정리가 안 된 부분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음. 업무 혼선으로 인한 업무 하중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인권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을 정리하기 위한 교육 내용이 필요함.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은 당장 실무교육을 원하는 학습자에게 효과가 없을 것이기에, 대학인권센터의 지향점을 이야기하고, 이를 못 하게 만드는 조건과 원인은 무엇인지 찾아내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함. 특히, '대학(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역할', '인권기구로서 대학인권센터의 역할 모색'에서 대학인권센터가 주어진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국가, 지자체, 학교, 업무자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안하는 논의 시간을 만듦. 이에 더해 교육가(기획자 및 교수자)에게 교육에서 나온 논의점을 정리하여 관련 부서 및 부처에 공유하도록 적어두어 환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

- 대학인권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하지 않은 속에서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로 인해, 대학인권센터 담당자들이 당장 업무에 투입되어 실무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큼.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인권센터 교육담당자들과 논의하여 현재는 대학인권센터 모듈은 현장에 있는 담당자가 신규 담당자가 다수이기에 현재 모듈은 신규자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고, 후에 대학인권센터 심화 과정을 만들거나 인권조사관, 정책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로 함. 이후 심화 과정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등 현재 인권센터에서 하는 업무에서 인권에 대한 고민을 심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한 인권 업무를 접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아직 논의가 심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두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방향성을 고민하여 정리 필요함. 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방법 관련 부분은 '대학에서의 인권조사 절차의 이해', '대학에서의 인권조사 방법의 이해'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을 인권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확장할 수 있는 모듈 추가 개발 필요

- 성희롱·성폭력을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확장하는 부분은 교육과정 참관에서 학습자, 적합성 조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내용으로 모듈을 추가 개발할 필요가 있음.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정밀한 기획과 설계, 분야 통합적인 토론, 논의와 검토를 거쳐 개발되어야 하는 주제로 향후 연구 혹은 프로젝트를 통해 내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 향후 추가 모듈 개발 및 교육 내용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

- 현재 교육과정은 신규 대학인권센터 담당자를 학습자로 설정하여 구성한 과정으로 대학생들의 좌절과 갈등, AI와 공존하는 인간과 미래에 대한 교육은 모듈로 개발하거나 특강 주제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5) 「기업과 인권」 업무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 「기업과 인권」의 교육목표

- 「기업과 인권」의 교육목표는 기업의 인권경영 체계구축뿐 아니라 구축을 통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장을 목표로 함. 본 교육과정의 목표를 ‘인권경영 체계구축 역량을 배운다’로 수정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역량을 갖춘다는 목표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교육구조와 교과목의 연계성

- 교육구조에서 ‘인권의 적용과 훈련’, ‘직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을 「기업과 인권」에 맞춰 ‘기업과 인권」의 적용과 훈련’, ‘인권경영의 의미와 역할’로 변경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교육구조의 경우 과정별 교과목의 특성을 구분한 것으로 과정 특성을 반영한 구분은 아니어서 현행 유지함.

● 인권의 이해와 「기업과 인권」의 이해 교육 내용 모두 구성

- ‘인권의 이해’ 교과를 「기업과 인권」의 이해’로 변경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인권의 이해’ 교과는 공통 모듈로 구성된 교과로 범용으로 사용됨. ‘인권의 이해’ 교과에 이어지는 「기업과 인권」의 이해’ 교과에서 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인권의 이해를 포괄할 수 있음.

● 우리 기관의 인권적 사명과 존재 이유 찾기

- 우리 기관의 인권적 사명과 존재 이유는 우리 기관 인권 이슈 찾기에서 기관의 인권적 사명과 존재 이유를 알기 위한 것이므로 제안 내용을 반영함.

●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포괄하여 과정 설계



- 본 교육과정은 기업과 공기업을 구분하여 설계하지 않았음. 「기업과 인권」의 등장 배경과 의미 모듈의 활용 질문에 공기업을 존재 이유를 묻는 말을 넣으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업의 목적, 존재 이유에 포괄될 수 있음.

● 교육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유기적일 수 있도록 구성

- 「기업과 인권」의 등장 배경과 의미 모듈의 배경은 「기업과 인권」이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고, 「기업과 인권 실행 가이드라인」 모듈의 제정 배경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이 규범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내용상으로는 중복되지 않음.

● '기본권' 용어 사용에 유의

- 기본권 용어 사용에 주의하라는 수정 의견에 따라 모듈명에 들어가 있던 '기본권'은 '인권'으로 수정함.

● 교육 시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모듈별로 적절한 시간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활동형이 60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운영에 있어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 유의 사항에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추가로 넣음.

● 사업과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를 분리하지 않고 인권 이슈 도출로 교육 내용 구성

- 사업 인권영향평가 이외에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라는 수정 의견이 있었음.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와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기업의 주요 인권 이슈를 도출해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평가지침이 변경되어 기관운영과 사업을 나누지 않고 주요 인권 이슈를 도출해 인권영향평가하는 것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함.

● 사례 공유 모듈의 필요성

- 사례 공유 모듈을 별도의 모듈로 뺀 것은 해당 모듈이 단순 사례소개가 아니라 「기업과 인권」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현장에서 실무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자의 질문을 받는 모듈로 다른 모듈에 나눠서 넣을 수 있지 않음.

6)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장애인 분야

- 학습자가 사전에 현장의 인권 딜레마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교육방식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산출물 중 하나인 기본교재의 ‘사례로 보는 장애인권리협약’ 모듈을 통해 추가 보완함. 특히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 제공,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장애인의 노동 및 고용, 포용적 교육, 사법 접근성과 법 앞의 평등 등 현장의 사례를 유형화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인권 관점을 기준으로 학습자가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함.

- 본 연구에서 작성된 모듈이 장애인을, 장애를 중심으로만 이해하거나 장애 유형과 상관없는 단일집단으로 보는 관점에 기반하지 않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인권적 관점에 기반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교차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은 충족된 것으로 보임. 특히 접근성과 관련해서도 사례를 통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신체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조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교차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음. 다만 향후 장애 여성,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등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 그룹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모듈 개발이 필요함.

7)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노인 분야

● 노인 정체성 획일화에 대한 우려 반영: 노년기로 표현 조정

- 전문가 자문단 의견과 같이 노인의 특성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문제점이 있어 가급적 ‘노년기’라는 표현으로 완화함.

● 노년기 존엄한 삶에 필요한 전반적인 인권

- 노년기 역시 존엄한 삶의 영위에 필요한 다양한 인권의 내용이 있다는 출발선을 확보할 수 있는 만다라트 활동을 구성함.
- 쟁점 토론에서도 자기 결정권이나 노동 등 현재 노인 인권정책 현장의 다양한 이슈를 가져와 인권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제시함.

● 돌봄을 소재로 인권 내용과 주체의 연결성 확보

- 돌봄을 주요 화두로 선정한 것은 이를 통해 전반적인 인권의 연결성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임. 이는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존엄의 상호의존성에서 당연함.

● 사례와 결정례로 현장 밀접성 높이기

- 노인인권원칙은 현장에서 다고 멀게 느껴질 수 있어 사례와 결정례를 통해 그 한계를 극복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해당 모듈 메타데이터 유의 사항에 반영함.

● 기타

- 자립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현재 관련 모듈의 기본교재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자립의 지향성을 담고 있음. 참고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첫 번째 항목이 'independence'인데 국가인권위원회 문헌에서는 독립으로 번역함.
-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은 모듈형으로 과정 기획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교과목의 분량이나 순서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어, 인권의 이해 모듈 수 조정이나 모듈 배치 순서에 대한 의견은 과정 운영 시 반영될 수 있음.

8)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아동 분야

● 모듈별 시간 탄력적 운영 안내

- 모듈별로 적절한 시간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활동형이 60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운영에 있어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 유의 사항에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추가함.

● 사회권의 이해 교과목 삭제와 사회복지와 인권 교과목 확장

- '인권의 이해' 교과에 이어 '사회권의 이해' 교과가 오는 것은 아동 인권을 '사회권'에 국한하여 이해하게 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사회권의 이해' 교과를 없애고, 사회복지와 인권 교과를 확장함. 사회복지와 인권 교과의 하위 모듈은 '사회복지의 인권적 의미', '사회복지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사회복지 실현에 있어서의 쟁점 사항',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원칙'으로 구성함.

● 지방정부 인권보장체계 연계

- 지방정부에서의 아동인권보장체계 연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회복지와 지방정부' 모듈을 추가함. 해당 모듈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에서의 아동인권보장체계가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해당 모듈이 사회복지 공통 모듈이기 때문에 별도의 아동인권보장체계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 사항에 노인, 장애인, 아동, 이주민, 노숙인 등 다양한 사회적약자, 소수자의 개별 정책을 담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음.

● 기타

-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장이나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음.

9) 군인권교육가(군인권교관) 역량강화 과정

- 아이스브레이킹 활용 질문에 군과 관련한 내용의 질문을 추가함.
- 모듈 조합을 통해 교육 내용을 구성하더라도 실제 과정 기획 및 운영 시 학습자 분석을 진행하여 반영하여야 함.
- 군 인권교육가 역량강화 과정은 군인권교관 중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설계하여 심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론 위주로 구성하여 반영함.

10) 경찰 분야 인권교육가 역량강화 과정

●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포함한 경찰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 강조

- 경찰직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에서 경찰의 인권 보장에서의 역할과 경찰 역사를 통해 본 민주주의와 인권에서 집회결사에 있어 경찰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함.

● 교육과정 운영 기간 조정

- 현장 강사가 가지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본 과정에서 제시한 5일 프로그램은 한계적일 수 있음. 그러나 이번 연구 시 수행된 경찰내부강사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 현장에서는 이보다 짧은 교육도 참여하기 눈치 보인다는 반응이 컸음. 각급 현장 상황이 다르겠으나 이미 경찰 연수원에서 동일 학습자를 대상으로 2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현재 제시된 5일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구성함. 다만,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교육 기간에 대한 학습자 수요를 살필 필요는 있음.

●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를 구별하는 분석과 결정례 사례토론 방법 구성

- 후반부 과정 중, '8-1 권리제한과 인권침해 분석'에서 법 집행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과잉금지원칙을 확인, 인권의 제한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가운데, '9-1 결정례 사례토론 방법'을 통해 실제 사례를 분석, 결정례의 의의와 한계를 찾아보는 활동이므로 프로그램의 배치는 현재처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함. 다만, 8-1, 9-1 프로그램 모두 토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발언의 기회가 일부 학습자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진행자는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음.

● 시연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설계

- 본 과정은 일반적 역량 강화가 아닌 '강사'로서의 역량 강화라는 목적이 뚜렷함. 이에 자문의견처럼 '프로그램 시작 단계에서 미리 강의안을 받아 시연하고 마무리에 보완 시연하는 구성'도 의미가 있겠으나 학습자가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운영은 자칫 위화감과 불필요한 경쟁심을 부추길 수 있음. 그러므로 현재 제시된 것처럼 본 과정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1-2 경찰 현장 강사의 의미와 역할'을 통해 학습자 각자의 고민과 방향성을 점검한 후, 마지막 프로그램인 '13-1 과정 소감 나누기'에서 '강사'로서의 자신의 성장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더라도 본 과정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함.

● 향후 추가 모듈 개발 및 교육 내용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

-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내용은 향후 모듈을 추가하거나 교육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의 경우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 접점이 많아 유관 기관과 협력이 중요한 요소임. 경찰 내부에서도 특히, 노숙인의 경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현재 관련 기관과 협력과 매뉴얼 등이 구축되지 않아 현장에 있는 담당자 개인이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 부분은 다른 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듈을 추가하거나 기존 모듈의 교육 내용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강의 마무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경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하므로 향후 과제로 남겨두도록 함.
- 사회적 소수자 수사 규칙의 이해와 실무 적용 모듈 향후 추가 개발이 필요함.
- 경찰 및 경찰 인권교육가와 협의하여 동료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하고, 필요시 추가 개발 고려할 필요가 있음.

11)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

● 현장 탐방 모듈의 필요성

- 현장 탐방과 관련해서 민주인권기념관과 자유의 길 체험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곳임. 국가권력과 관련된 남영동 대공본실로 전시물도 있지만, 대다수는 우리나라 인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됨. 또한 이번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오픈을 준비하면서(2024년), 새로운 해설과 도슨트(Docent) 등이 새롭게 준비될 예정임.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에게 학생인권과 관련된 체험학습도 의미가 있겠지만, 본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큰 테마와 잘 맞는 체험학습임. 또한 권력을 오남용으로 인권 유린의 역사 현장으로 한눈에 살펴보기에는 좋은 전시구성을 갖추고 있음. 민주인권기념관에는 노동인권 관련 전시물도 있어, 테마를 정해 진행할 수 있음. 특히 자유의 길 체험학습은 노동인권과 관련되어 도슨트가 마련되어 있음.

● 모듈을 초등과 중등 그룹으로 나누기보다 유의점 안내하는 방향으로 정리

- 학교관리자 그룹을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는 것은 단일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으나, 초등과 중등의 간격보다, 도시와 지역의 간격이 더 큼. 교육 현장이 다르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분절해서 단일한 학습 집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 문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초등과 중등 분반을 운영하여, 학교 운영 관련 토의 영역에서는 같은 집단끼리 구성하도록 유의 사항에 안내하도록 메타데이터를 수정하고자 함.

● 교육 시간 구성

- 학점제와 맞지 않은 교육 시간 구성에 대해 인권교육원 과정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연수학점제와 통합되는 과정은 아님. 또한 최근에는 학점제보다는 시간이수제로 교사연수체계도 변경되는 교육청도 있고 다양한 연수방식과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 교육부 학점제를 따라 제공해야 하는 이유보다는 지역에서 참여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2박 3일로 17시간으로 구성된 시수이며, 이러한 시수 운영은 교육원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제공되어야 함.

● 학생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허물 수 있는 내용은 교사 인권교육 구성 시 반영

-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 안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넘어서 학습자의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인권적 가치와 지향이 잘 드러나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함. 하지만 학교 리더십 과정은 학교장, 교감으로 학습 대상이 선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수업 상황이나 교실 운영의 사례를 가져오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름. 제안 내용은 일반교사 대상 인권 프로그램 개발 시 반영한다면 인권교육프로그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

● 모두가 안전한 교실·학교 만들기는 인권보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 도출하기와 결합

- 모두가 안전한 교실,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이기도 함. 제안 내용은 학교장, 교사, 학생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고 현실에서도 필요한

교육내용임. 현재 개발된 모듈 중에서는 인권보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 도출하기와 결합하여 진행해 볼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교육활동을 학교에서 실행하고자 할 때 현실맥락에서 집단 토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보다 세심한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12) 지방의회 의원 인권리더십 과정

- 적합성 조사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그대로 확정함.
- 다만, 공통 모듈로 구성되는 과목이 많은 과정인 만큼 앞서 공통 모듈에 해당하는 의견 등이 반영될 것임.

IV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운영 중장기 로드맵

IV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운영 중장기 로드맵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의 역할과 기능

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전과 인권교육원 운영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비전과 과제들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 운영체제의 주요 맥락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교육과정 개발 로드맵이 필요함. 이는 내외부에서 갖는 인권교육의 요구와 필요를 점검하여 앞으로 대한민국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인권교육을 선도할 인권교육원의 방향을 정리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은 인권기구로서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 인권에 대해 알리고 교육을 제공하는 활동
 - 인권을 수호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촉진하는 활동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를 장려하는 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비전과 사명 |

-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사명: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

|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인권교육 추진 근거 |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 ⑥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 ⑦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나. 인권교육원 역할과 기능 점검

1) 관련 인터뷰 조사결과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의 운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앞의 최근 3년간 운영과정 분석 및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 파악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인권교육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4> 인권교육원 역할과 기능 점검을 위한 관계자 인터뷰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인권교육원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	· 인권 전문가 역량지원, 인권교육 연구기관, 네트워킹 플랫폼
	· 교육원에서 표준교안을 설계하여 타 기관이 인권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군, 경찰이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방관했다고 생각).
	· 인권 전문가 양성, 인권교육의 허브(네트워킹 역할), 인권교육 연구기관
	· 교육원은 허브의 역할을 하여 모든 인권교육의 프로그램, 콘텐츠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배포

구분	주요 내용
	<p>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전문가 양성, ‘허브 앤 허브(Herb & Hub)’, ‘공간, 사람, 콘텐츠를 잇다’를 통하는 방향 •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연수기관 • 현재 연수원 같은 직원교육과정은 없더라도 과정 및 모듈 개발 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 있음.
인권교육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원이 직접 교육하는 것 외에도 교육설계를 어떻게 하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기획운영자들이 스스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등 • 문제의식 - 제일 취약한 것이 교육프로그램 기획역량임. 현재는 과정은 강사에게 맡기는 프로그램 없는 특강의 연속일 뿐.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정 자체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하지 못함. • 시설관리, 교육운영(직접교육), 네트워크 및 타 협력 부서, 연구 및 강사 교육, 행정지원, 콘텐츠 개발의 경우 전문인력, 운영 행정인력으로 구상해서 역할 수행 • 전문가양성, 네트워크와 플랫폼 역할, 협력 업무 • 인권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 인권전문가는 인권교육 전문가일 수도 있고 인권 옹호자일 수도 있음. 당분간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위축 없이 지속할 필요가 있음.
교육원의 역량 강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권자인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 법원 판사,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직원 등 • 단, 위 대상군의 직무를 인권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공공영역-학교-사회복지-일반시민사회 4개 영역 • (영역마다) 인권업무 담당자, 관리자, 범인권강사 역할 하는 사람 • 자체강사양성(시장에서는 관심 없는데 해야 하는 영역). 서로가 매칭되는 지점에서 대상 정리 • 단, 예산 등의 고려할 때 몇 몇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민간 기관에 이관하고(필요시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교육대상을 추가하여 계속 확대해가야 함. •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 법 집행 공무원, 학교영역에서 학교장,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사회과 교사), 법집행 공무원은 군, 사법기관, 경찰, 특사경 등 • 강사양성과정은 위촉한 강사를 없앤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200-300명 수준에서 향후 3-5년 간 위촉강사를 계속 증가시킬 것 • 인권의 가치를 본인의 전문역량으로 만들어서 사회 곳곳에서 인권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국가인권위원회 위촉강사, 지자체 양성 강사, 인권관련 의무교육 강사 등) •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집단(공무원과 사회복지 영역의 관리자급), 인권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할 때 표준교안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식 • 양성과정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할 때, 협업이라면 기초과정은 관련 기관에 이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심화과정 운영 • 교육운영 기관이 콘텐츠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구결과를 통한 프로그램 제공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업무분장의 기준이 뭐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없기에 높은 평가점수를 줄 수 없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협업 개념은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다른 부분은 상대방이 하라는 식의 분업 개념임. • 장기적으로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인권위는 더이상 관여하지 않을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국 협업 기관에 주동성을 넘겨주되, 역량 강화와 같은 심화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하게 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과의 협업은 다른 연수원이나 교육원과 기관 대 기관으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 인권교육원 역할 기능 모델안 제시

- 위 인터뷰 조사 결과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교육원 역할 기능 모델을 도출함.



COPYRIGHT © 2023 (사)인권정책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그림 25] 인권교육원 역할과 기능 모델

1) 인권사회 실현을 위한 인권전문가 양성기관

● 인권적 영향이 증대한 업무 영역에 대한 인권역량 지원 필요성 증대

- 교사,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많은 업무 자체의 인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그룹에 대하여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대한 과정을 협업 또는 자체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각 영역과의 다양한 층위의 협업으로 이들에 대한 역량 지원을 유지하면서, 자체 내부 인권교육 역량 축적 정도에 따라 그 정도와 방식을 조정할 것임.

● 인권업무자 영역의 확대에 따른 인적 역량 지원 필요

- 직접적으로 인권업무로 명명된 업무 담당자 영역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은 각 조직의 인권적 역할 수행 즉 조직 내 인권의 가치 복원과 실현에 있어 기초 및 촉매의 역할을 수행
- 한편, 인권의 제도화는 이루어진 반면, 그 제도의 인권적 역할과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규명 및 합의되지 않은 상황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기존 제도와 인권제도의 변별점이 확보되지 않는 한계를 맞닥뜨리면서 제도의 무용론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음.
- 인권제도의 역할 미정립은 결국 관련 인적 역량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상호 영향을 주면서 제도의 힘을 잃게 하고 일하는 사람의 업무환경도 열악해짐.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제도의 인권적 역할과 가치를 고민하고 그에 맞는 인적 역량을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협력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 인권 증진에 있어 필수적인 임무일 것임.
- 특히 이들의 경우 별도의 자체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이외 단위에서의 과정 운영 조건이 존재하기 어렵기도 하고, 각 제도를 인권의 가치와 지향에서 그 의미를 재구성 또는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과정을 끌어가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만이 해낼 수 있는 미션임.

● 리더 그룹에 대한 역량 지원을 통한 인권적 사회변화 역할 모델

- 인권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세계인권선언 제28조1.)로의 변화라는 점에서 볼 때 각 단위에서의 인권적 목소리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만큼 각 단위의 주요 의사결정 등 조직 운영에 있어 핵심적 위치에 있는 리더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될 수밖에 없음.

- 시민사회와 실무단위의 인권적 요청을 제대로 읽어내고 이를 제도화하고 조직의 인권적 전환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원이 그 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인권교육가 역량 지원을 통한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 인권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요청이 확대되면서 각 현장에서의 인권교육 진행을 담당할 적절한 인권교육가의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현재도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과정이 이러한 요청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책인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인권교육원 설립 후 한층 더 강화된 역할이 기대될 수밖에 없음.
- 한국 사회 인권교육 지형의 선진화를 위해 한층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역할과 기능임.

2)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권교육 협력 지원기관**

- 인권교육과 관련한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가 모이고 다시 확산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이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에 기대하는 역할임.
- 또한 사람이 만나고 연결되어 그 역량이 증폭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필요한데, 인권교육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모이는 인적 역량의 연결을 통하여 이러한 역할 수행을 통한 한국 사회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임.
- 조직의 특수성상 외부 교육가보다는 내부 교육가에 의한 인권교육 진행이 적합한 경우가 적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관련한 동력들이 정도의 차이를 두고 진전되고 있음. 인권교육원은 이러한 동력의 촉발, 확대와 유지에 대한 협업 파트너로서 역할, 임무를 가지고 운영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3) **인권교육 전문화를 위한 인권교육 연구기관**

- 인권에 대한 교육을 만들어내려면 각 영역을 인권과 접목시킬 방향성(기준이 되는 인권적 철학)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며, 현장과의 호흡을 통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를 교육내용으로 가공하는 작업까지의 공정을 수행해야 함.
- 따라서 인권교육원은 주요 인권교육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된 한국 사회 인권교육 지형도를 분석하여 인권교육원이 지원 필요성과 방법 등을 도출해 교육원 운영계획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는 결국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교재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작업으로 이어질 것임.

- 또한 대면교육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사이버 인권교육체계 개발과 운영 역시 인권교육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 기존 사이버 인권교육과정과 콘텐츠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과 보완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새로운 인권 아젠더에 맞는 콘텐츠 개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4) 교육체계: 인권교육 주류화를 위한 거버넌스

● 국가 수준, 지역 수준, 기관/단체 수준에서 인권교육 역할분담 체제

- 기존의 공공/학교/시민의 인권교육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금의 인권상황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국가 수준, 지역 수준, 기관/단체 수준의 체계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수준의 인권교육 거버넌스는 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제의 정비를 비롯한 인권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시적 차원의 기능을 수행함. 또한 지역수준 인권교육 거버넌스는 국가수준의 교육방향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권실현을 위한 교육전략과 함께 인권교육 협의와 연구기능을 담당함. 기관/단체 수준의 인권교육 거버넌스는 직무별, 대상별, 분야별 특수성을 가진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권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과 실행 기능을 담당함.

가) 국가 수준

- 인권의 주류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마련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수준, 국가수준, 지역수준, 기관/단체 수준에서 편성해야 할 인권교육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과 방향 제시
- 협력단위: 정부부처_행정·입법·사법 기관, UN 등 국내외 인권교육 기관

나) 지역 수준

- 지역의 인권현안을 바탕으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컨설팅, 인권교육 지원 및 질 관리 등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 제시
- 협력단위: 광역지자체, 인권교육협의체, 시도교육청, 인권교육지역사무소, 대학 및 연구기관, 대학인권센터 등

다) 기관/단체 수준

- 시민, 공공, 학교 영역 등 직무별, 대상별,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인권교육의 내용과 지침을 해당 기관의 실정과 실태에 맞게 제시

- 협력단위: 기초지자체, 평생교육센터, 직무영역 교육원, 시민단체, 기업 일반 등

라. 기타

1) 조직 및 예산

가) 인권교육원 진행 교육과정 예상 규모

- 3개 영역, 8개 교육편성체계, 총 107개 교육과정 운영(집합교육 81개, 사이버교육 26개)
- 집합교육, 총 운영횟수 209회, 평균 인원 50명 참여, 1차연도 연인원 31,350명
- 상시활용 교육공간 4개 소요
- 방문체험교육 활성화, 확대 시 교육참여 인원 대폭 증가 예상

(국가인권위원회, 2021b)

나) 인권교육원 역할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체계

(1) 인권교육 연구본부

- 주제별 인권교육 연구팀 편성, 교수진과 연구팀의 관계 설정 필요.
※ 교수진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따라 연구팀 편성 결정

(2) 인권교육 운영본부

- 국가/지역/기관단체 또는 주제별로 과(부서) 편성 시 3개 이상의 과(부서) 편성, 과정 분류 후 과정별 2인 한팀으로 담당자 구성

(3) 인권교육 지원본부

- 사이버 교육 시스템 관리, 회계 출납, 기술 지원, 차량 지원 등
- 이외 본부에 인권교육정책과 편성, 인권교육원과 협력 관계 구축 필요 : 해당 교육 영역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발굴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권고하는 협업

다. 예산과 운영

(1) 예산 산출 기준

- 운영 교육과정 종류 및 운영 규모에 비례해 담당 인원(교육 기획, 운영, 교수자, 차량 운영

등)의 규모와 예산이 함께 산출

(2) 팀 단위의 과정 운영

- 설계한 과정을 전체 흐름 속에서 학습자와 호흡하면서 운영할 때 학습효과도 채워질 뿐만 아니라, 과정 운영 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과정별 1인 담당체계로는 역부족이며 팀 단위 운영체계를 구상해야 함.

2) 관련 규정 정비 등

가) 기존의 학교/공공/시민이라는 분류 체계 재편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인권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준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국가수준/지역수준/기관 및 단체 수준으로 교육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정비 필요

- 세계인권교육훈련선언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현재 인권교육 운영규정을 재정비할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은 ‘인권교육’을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 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 제1호).
- 이 내용과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논의를 참조하여 향후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① 첫 번째 문장: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문제점) 유엔의 정의를 주로 참고하였지만,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고 비문⁴⁰⁾이며, ‘품성’이라는 애매한 용어가 포함된 데다, ‘보편적 인권문화’ 개념이 빠져 있다. 특히 ‘품성’ 개념은 사실 유엔 정의에서 ‘태도(attitude)’를 고려한 듯한데, 이미 ‘태도’라는 용어가 있으므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적 맥락에서 권위주의적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다.
- ② 두 번째 문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문제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이해능력을 키움으로써 피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 듯하나, 이 문장만을 두고 보면, 구제 요청이 없이 ‘극복’한다는 의미로만 읽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③ 세 번째 문장: 다른 사람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 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 활동
 ⇨(문제점) 인권의 가치는 나와 남 모두 동등하게 인권의 주체라는 사실인데, 타인의 인권보호만 강조되고 있다(이성택, 2023)⁴¹⁾.

40)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라는 표현은 제4차 행동계획 상 “learning about human rights and acquiring skills”의 번역인 듯한데, 영어 문장은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는 점이 명확한데, 번역어는 ‘이해를 습득하고’와 ‘지식을 습득하고’로 읽히므로 비문임. 게다가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은 습득 대상이 아니라 ‘공유’(제3차 행동계획) 또는 학습(learning) 대상임. 습득(acquiring) 대상은 기술임.

41) ‘인권교육원 운영로드맵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 인권교육원 로드맵 논의를 위한 간담회 발제 자료.

2 모듈형 교육과정 체계의 완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개선 방향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점검과 방향 설정

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창립 이후 인권교육 과정 운영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음.
- 국가기관으로서 한국 사회 인권교육을 견인하는 첫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그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더 적합한 인권교육 모델을 제시하여 본연의 인권증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책임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교육 실행을 지원해야 하는 책임까지 지고 있음.
-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하드웨어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원 설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하드웨어에 장착될 소프트웨어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체계적 개발에 대한 준비 역시 시급하고도 중요함.
-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적으로 그간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과제를 도출하고 있는데, 다음의 표가 그 주요 내용임.

〈표 4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공간 부재로 안정적 교육운영 미흡 - 일회성 특강 형식의 인권교육 다수 - 단기간 교육으로 인권교육 내실성 제고 미흡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원 설립을 통한 안정적 교육운영 기반 확보 - 단기 및 중장기 교육운영 가능 - 인권교육 대상 및 교육과정 확대 가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 전문적인 인권교육 수행 미흡 -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 중심의 교육 - 직무를 고려한 심화된 교육운영 미흡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 및 인력 확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형, 지식 전달 중심 교육

과제	· 강의형, 토론형, 체험형 인권교육 과정 개발 및 적용 - 인권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확대
평가	· 비대면 상황, 기술변화를 고려한 교육기반 미흡
과제	· 대면-비대면 인권교육 수행 기반 확보 - 대면-비대면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평가	· 인권 실천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미흡
과제	· 현장에 근거한 인권 현안 파악 및 교육내용 반영 - 인권 현안 관계자 참여 확대 및 개선 실천방안 공동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2021b)

나) 인권교육원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방향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앞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방향

- **권리로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며 목적임을 인식
- **인권교육의 매력성과 현장성**
 - 인권침해 경험 등 학습자의 경험과 참여로부터 출발
 - 인권과 관련된 상황의 매력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
- **참여적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
 - 참여적 학습의 프로그램 적극 개발 및 실행
 - 현장체험 학습과 활동중심 방법 활용
 - 학습자의 의사결정 참여 적극 보장
- **정서, 인지, 행동의 통합적 인권교육 지향**
 - 문화예술적 체험을 통한 공감적 정서 발달
 - 인권 딜레마 토론을 통한 인지적 판단 능력 함양
 - 인권 친화적 행동 및 태도 발달
- **사회적 약자의 관점과 사회구조적 인식**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우선 관점의 채택
 - 공동체 전체를 보는 사회구조적 조망과 인식 함양
-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을 통한 교육 실현
- 수평적, 상호 존중의 의사소통 환경 조성
- **인권 친화적 사회변화 지향**
- 사회구조와 문화, 체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 함양
- 인권 친화적 사회를 위한 실천과제

(국가인권위원회, 2021b)

- 한편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 연구과정에서 분석한 국내외 인권교육 문헌이나 전문가 자문단 자문, 관계자 인터뷰와 주요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와도 일치함.

● 명확하고 균형 있는 과정 교육목표 설정

- 국가인권기구의 인권교육원이라는 위상에 맞는 과정 목표 설정이 중요함.
- 각 분야의 인권적 가치를 읽어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인권교육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현실에 갇힌 실무형 과정으로 기획되지 않도록 균형선이 필요함.

● 사회구조적 전망 역량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필요

- 인권의 문제를 사회제도와 정책의 흐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역시 공동체 전체를 보는 사회구조적 조망과 인식 함양으로부터 비롯됨.

● '학습'이라는 개념에 맞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인권교육과정 구성

- 기존의 특강 중심의 경우 학습자가 스스로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하기에는 역부족임. 일정 정도의 특강은 필요하나, 학습자의 내재화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으로서의 균형선이 필요함.
- 학습자 스스로 인권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육 시간과 공간 운영: 지식전달 위주 심지어 계몽적 모드의 강의로 흐를 경우 학습자가 대상화되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인권교육'다운 교육 과정으로 기획, 운영되어야 함.

● 인권 현장과 연계되는 인권교육 구성

- 인권이 지식 또는 이상으로만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 이슈에 대한 탐색을 과정 안에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교육 콘텐츠와 교육 효과의 확장성을 도모하여야 함.

●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활동 프로그램 연계

- 기존의 특강 중심 인권교육 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도구의 도움을 받아 학습자가 스스로 또는 동료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인권적 각성과 사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교육의 모델일 것임.
- 이번 개발한 프로그램에도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어 5종의 모듈과 기본교재를 제공함.

나. 인권교육원 운영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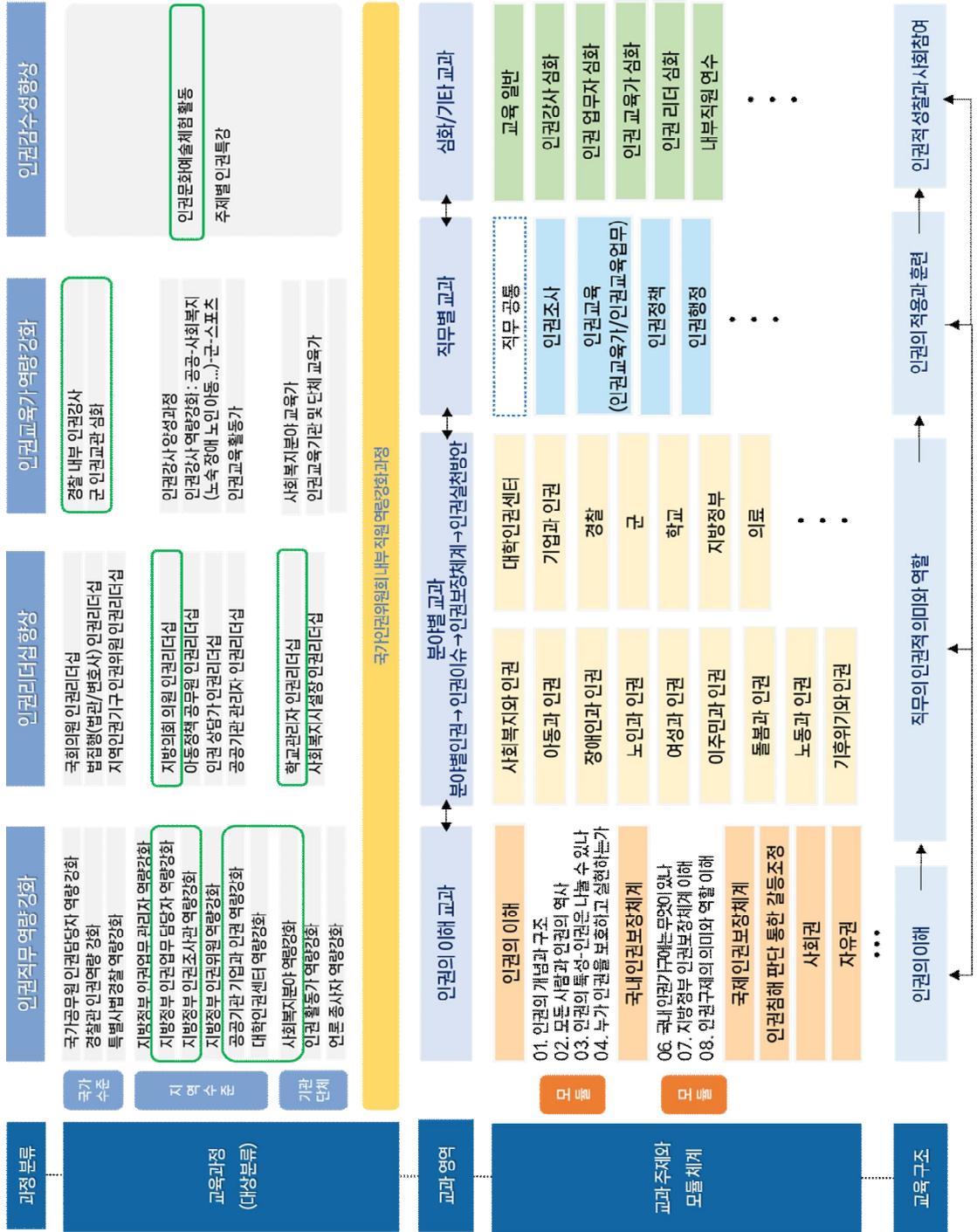
※ 초록색 묶음 박스는 이 연구에서 과정 개발이 진행된 부분 표시

[그림 26] 인권교육원 운영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1) 현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산출 과정

- 위 그림은 인권교육원 운영 교육과정과 모듈 체계의 기본적인 구성을 도식화한 것임. 그림의 상부 구조는 과정의 분류체계이며 하부 구조는 교과와 모듈체계에 해당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듈형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작업의 진행 방식으로 주요 과정별 필수 교과목과 모듈을 산출하고, 이들의 집합을 다시 공통과 분야별로 분류하는 프로세스를 선택함.
- 이는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과정이 주제와 교과의 체계구조 위에 세팅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작업 방식이었고, 8개월이라는 연구 개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략이었음.
- 이를 위해 첫 번째 단계로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운영 목표와 세부 교과목을 분석하였음.
-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육과정 교육목표 진술을 구체화하여 정리한 후 자문단의 자문을 거치고, 최종 개발이 확정된 12개 과정에 대한 필수 주제와 교과목 산출 목록을 구성함.
- 이 목록을 바탕으로 모듈 구성안을 마련하고 각 분야 관계자 인터뷰 결과를 반영해 모듈 구성을 조정한 후 모듈별 메타데이터를 개발함.
- 구성된 메타데이터에 대해 분야별 연구심의단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보완 작업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필수 기본교재 원고를 작성함.



※ 초록색 묶음 박스는 이 연구에서 과정 개발이 진행된 부분 표시

[그림 27] 인권리더십 역량 모델링 리우과정 프레임워크

2) 현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가이드

가) 교육과정 구성체계

과정 분류	인권직무 역량 강화	인권리더십 향상	인권교육가 역량 강화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과정 (대상분류)	국가 수준	국회의원 인권리더십 법집행(법관/변호사) 인권리더십 지역인권기구 인권위원회 인권리더십	경찰 내부 인권강사 군 인권교관 심화		
	지역 수준	지방정보 인권업무 관리자 역량강화 지방정부 인권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지방정부 인권조사관 역량강화 지방정부 인권위원 역량강화 공공기관 기업과 인권 역량강화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지방의회 의원 인권리더십 아동성폭행 공무원 인권리더십 인권 상담가 인권리더십 공공기관 관리자 인권리더십	인권강사 양성과정 인권강사 역량강화: 공공-사회복지 (노숙 장애 노인 아동...)·군-스포츠 인권교육 활동가	인권문화예술체험 활동 주제별 인권특강
	기관 단체	사회복지분야 역량강화 인권 활동가 역량강화 연론 증하자 역량강화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 사회복지시설장 인권리더십	사회복지분야 교육가 인권교육기관 및 단체 교육가	

※ 초록색 묶음 박스는 이 연구에서 과정개발이 진행된 부분 표시

[그림 28] 인권교육원 운영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_교육과정 구성체계

(1) 대분류 체계-인권적 영향력 범위 기준

- 인권교육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협업과 분담체계를 고려해 국가, 지역, 기관 및 단체 등 학습자의 인권적 영향력 범위와 분야를 기준으로 한 대분류 체계를 구성함. 이 경우 예를 들어 「기업과 인권」의 경우에도 전국단위 영향을 주는 철도, 수도, 전기 관련 공공기관과 지역단위 관련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지방정부 및 지역인권사무소 등과의 협업 하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차이가 있음.

● 국가 수준

- 국가수준의 인권교육 거버넌스는 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제의 정비를 비롯한 인권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시적 차원의 기능을 수행함.

● 지역 수준

- 지역 수준 인권교육 거버넌스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역 대학, 지역 소재 공공기관, 각종 분야별 지역협의체 등이 해당하며, 국가 수준의 교육방향을 중심으로 인권 현장인 지역에서의 인권 실현을 위한 교육전략과 함께 인권교육 협의와 연구 기능(대학, 지방정부 인재개발원 등)을 담당함.

● 기관 및 단체 수준

- 기관/단체 수준의 인권교육 거버넌스는 직무별, 대상별, 분야별 특수성을 가진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권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과 실행 기능을 담당함.

(2) 중분류 체계-과정 성격(참여자) 기준

● **인권직무 역량 강화**

- 앞에서 제시한 인권교육원의 역할 기능 모델 첫 번째에서 제시한 인권전문가 양성기관을 보면 여기의 인권전문가는 대부분 그 업무가 인권적 관련성을 가지는 인권옹호자 위치가 강한 학습자군임.
- 여기에는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인권'이란 업무명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업무의 명명 자체에는 인권이 드러나지 않지만, 업무의 본질이 인권 실현인 국가와 지방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영역 직무자인 학습자가 포함됨. 이들에 대한 과정이 인권직무자 역량 강화 과정임.

● **인권리더십 향상**

- 각 조직에서의 인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이러한 직무자 중에서도 특히 리더 그룹에 대한 인권역량 지원과정을 별도로 설계하여 인권리더십 과정으로 설계함.

● **인권교육 역량 강화**

- 인권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요청이 확대되면서 각 현장에서의 인권교육 진행을 담당할 적실한 인권교육가의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됨. 이에 인권교육원 과정체계에 이들에 대한 역량 강화 과정이 배치됨.
- 다만 각 인권교육 현장마다의 특성과 인권교육에 대한 수용도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외부 인권교육 전문가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있음. 이에 각 분야별 내부 인권교육 전문가 역량을 지원하는 목적의 과정체계를 배치함.

● **인권감수성 향상-대상 특정 없음**

- 이의 학습자 특성과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체계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배치함.
- 여기에는 누구나 교육참여자라 될 수 있는 주제별 특강, 현재 인권사무소별로 운영 중인 체험관 프로그램 등과 같은 체험형 및 인권영화 상영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콘텐츠 연계 교육 활동이 배치됨.
- 인권교육원 출범은 한국 사회 인권교육 지형의 다음 지평을 열어간다는 기대와 책임을 부여

받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인권교육 틀과 다른 새로운 인권교육 패러다임을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수용성과 교육효과를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인권교육원 설계 역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형 과정을 개발하여 배치함.

1. 영화로 참여하는 인권교육 17
2. 도서로 참여하는 인권교육 18
3. 당사자와 대화하는 인권교육 19
4. 연극으로 참여하는 인권교육 20
5. 놀이와 게임을 활용한 인권교육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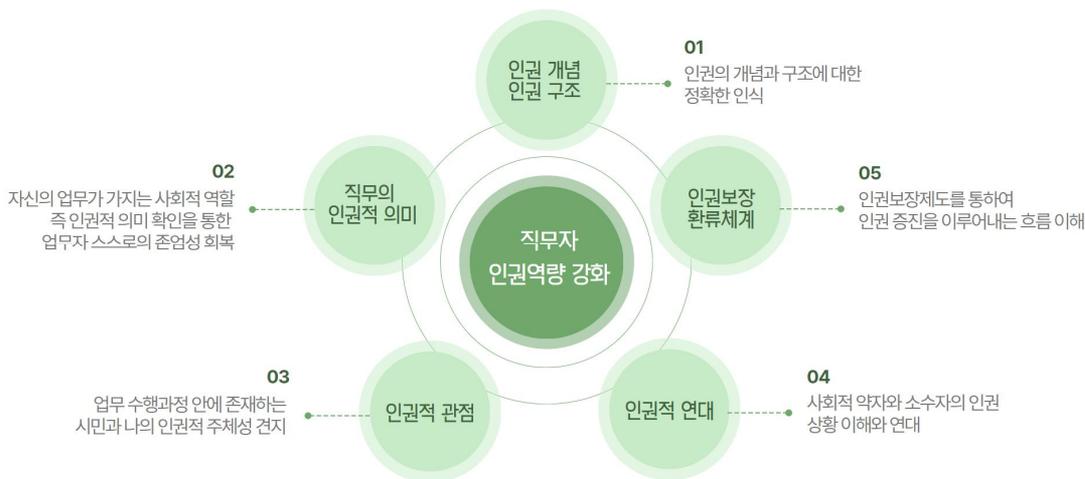
※ 제2권 [1년 차 주요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페이지 표시임

나) 교과영역 및 교육구조 구성체계



[그림 29] 인권교육원 운영 모듈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_교과영역과 교육구조 구성체계

(1) 과정 구성 기본 구조



(김은희 외, 2022: 92, 그림 재구성)

[그림 30] 인권교육 내용 구성 기본 구조

● 각 교육과정은 선행 연구인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2022)에서 제시한 인권교육 내용 구성 기본 구조에 기반해 다음과 같이 과정별 주제와 교과목의 구조를 전개함.

(2) 기본 구조에 대한 교과 및 모듈 구성체계

● 기본 구조 1.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인권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 모든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인권은 국가와 관계로부터의 출발이라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과정을 설계함.
- 이에 전 과정에 인권의 이해 관련 교과목을 배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의 이해 교과목과 관련 모듈을 구성해, 과정 기획 및 운영자는 이를 참조하여 상황과 조건에 맞게 모듈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음.
- 물론 과정 운영자와 교수자의 역량에 따라 이 부분을 반드시 별도의 내용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교과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 전개는 필수적임.
- 다음은 해당하는 모듈 예시임.

1. 인권의 개념과 구조	7
2. ‘모든 사람’과 인권의 역사	8
3. 인권의 특성-인권은 나눌 수 있나	9
4. 누가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가	10
5. 국제 인권보장체계에는 무엇이 있나	11
6. 국내 인권기구에는 무엇이 있나	12
7. 지방정부 인권보장체계 이해	13
8. 인권적 권리구제의 의미와 역할	14
9. 인권 찾기 1 : 판단기준으로서의 인권 알기	15

※ 제2권 [1년 차 주요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페이지 표시

● 기본 구조 2. 직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

○ 시민으로서, 직무자로서 인권적 역할 이해

- 세계인권선언 제29조 1.에 입각해 시민으로서, 시민이자 직무자로서 각자의 인권적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함.
- 모든 일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든 직무자가 그 인권적 의미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전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구성함.
- 이를 통해 스스로 자신과 시민 모두에게 인권적 업무 공간과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과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함.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모듈 예시임.

7. 지방정부 인권보장체계 이해	13
8. 인권적 권리구제의 의미와 역할	14
4-1. 인권교육의 의미와 역할-왜 인권교육인가	39
4-1. 대학(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역할	68
4-2. 인권기구로서 대학인권센터의 역할 모색	69
3-1. 「기업과 인권」의 등장 배경과 개념	83
3-2.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이해하기	84
3-1. 사회복지의 인권적 의미	97
3-2. 사회복지와 지방정부	98
3-3. 사회복지 관련 사회권의 쟁점	99

3-4.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	101
1-2. 군인권교관의 의미와 역할	156
2-1. 군대의 존재 이유와 군인인권보장(이론)	157
2-2. 군대의 존재 이유와 군인인권보장(토론)	158
1-2. 경찰 인권교육가의 의미와 역할	187
3-1. 경찰직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1	188
3-2. 경찰직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2	189
4-1. 경찰 역사를 통해 본 민주주의와 인권	190

※ 제2권 [1년 차 주요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페이지 표시

● 기본 구조 3. 인권적 관점 훈련

● 학습자의 태도·가치관·관점 등에 인권적 변화의 계기 제공

- 삶과 업무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도와 정책적 틀에서 분석하여 인권적 개선방안까지 모색해 보는 교과과정을 통해 인권적 관점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인권감수성은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한 문해력

조효제 교수는 “인권침해를 일회성·우연성·비정상성·무작위성으로 파악하는 관례적 접근은 인권사안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보고 단편적 해결책만을 제시하게 한다”(조효제, 2016: 117)고 설명하면서, “인권을 구조와 조건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구조적 인권침해에 관한 문해능력을 키우고 이에 합당한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조효제, 2016: 119)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인류에게 필요한 인권감수성과 실천을 이와 같이 구조적 인권문해력으로 해석할 때 인권의 문제를 개인의 선의와 노력인 인성의 차원과 구별하고 궁극적인 인권증진 사회로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

● <참고>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관련성 및 실천적 내용]

“이전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훈련내용은 피훈련자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권기준 및 실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문가 집단은 인권이 무엇인지 뿐만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 상황에서 이러한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내용은 특정 직업으로 인하여 접할 수 있는 인권쟁점 등을 바탕으로 해당 전문가 집단의 기능이 무엇이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전문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인권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 206).

- 현장 인권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적으로 직시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현장에서도 인권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함. 이와 관련된 모듈로는 다음과 같은 목록이 구성되어 있음.

5-2. 인권 찾기 2 : 사례 분석 토의	26
7-2. 판단기준으로서의 인권 찾기	30
8-2. 인권침해 여부 분석 토의	33
8-3. 인권침해 여부 의견 작성	34
9-1. 조사결과보고서 분석과 공유	35
5-1. 인권교육 기획하기	41
3-2. 인권가버너스 운영 사례 공유와 토의	52
4-1.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해 (인권정책 담당자)가 알아야 할 사항	53
4-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해 (인권정책 담당자)가 알아야 할 사항	54
6-2. 인권구제 사례 분석 및 실습	72
3-3. 「기업과 인권」 사례 속 인권 찾기	85
4-3. 우리 기관 인권 이슈 찾기	88
4-4. 장애인 인권 쟁점토론(모둠토론)	107
4-4. 노인 인권 쟁점토의	127
5-1. 아동인권 쟁점토론1	147
5-2. 아동인권 쟁점토론2	148
5-1. 군 인권사례 분석 훈련-인권찾기	164
5-2. 군 인권사례 분석 훈련-제한의 기준	165
5-3. 군 인권 결정례 활용 훈련	166
7-1. 경찰인권행동강령 해설과 사례토론1	194
7-2. 경찰인권행동강령 해설과 사례토론2	195
8-1.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분석	196
4-3.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217

※ 제2권 [1년 차 주요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페이지 표시

● 기본 구조 4.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이해

○ 사회적 현안이 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문제 직시와 이해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직시하되, 당사자를 인권의 주체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의 기획이 필요함.
- 이는 인권의 개념에서 ‘모든 사람’의 지향, 진정한 의미의 ‘존엄’이란 공동체 내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이 지켜질 때 달성될 수 있다는 ‘존엄’과 ‘연대’의 축과 밀접하게 연계됨. 이와 관련해서는 앞의 연구심의단에 제시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지역사회 회복력 차원의 접근”이 유용한 키워드가 될 것임.

3. 당사자와 대화하는 인권교육	19
7-1. [인권특강] 위기상황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61
7-2. 위기상황과 우리 지역 인권문제 대안 모색	62
4-2. 장애 패러다임의 전환	104
4-3. 인권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변화	105
4-2.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이해(이론)	161
4-3.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이해(토론)	162
4-1. 노년기 인권의 이해	122
4-2. 노인 인권 보장의 원칙	123
4-3. 노인 인권보장의 선사례	125
4-3.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	145
5-1. 경찰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1	191
5-2. 경찰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2	192

※ 제2권 [1년 차 주요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페이지 표시

● 기본 구조 5. 제도적 변화를 통한 인권 증진의 환류체계

○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낸 인권적 노력과 이를 통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의 발전에 대한 신념을 공유할 수 있는 인권 증진 환류체계

- 실제 인권의 역사를 통한 인류 사회의 인권적 발전 사례를 공유해 인권적 진전의 가능성과 믿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들어 사회 각 분야별로 관련한 다양한 인권 제도와 정책이 확산되어 있음. 도출된 개선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통해 그 실질적 역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주어, 인권증진의 환류체계 순환을 촉진하는 인권옹호자로서의 실천력을 함양할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이 연구결과물 중 하나인 12개 과정별 모듈에는 다음과 예시와 같이 인권보장 체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계획 수립 등을 구성하여 배치함.

7. 지방정부 인권보장체계 이해	13
8. 인권적 권리구제의 의미와 역할	14
10-1. 실천계획 기반 과정 평가	36
8-1. 실천계획 수립	49
8-1. 실천계획 수립	63
8-1. 대학에서의 인권 실천계획 세우기	77
6-1. 내 업무에 장애인권리협약 적용하기	112
6-1.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로 노인 인권보장 업무 점검하기	133
6-1. 내 업무에 아동권리협약 적용하기	150
2-3. 군 인권보장체계 이해	159
6-1. 위기상황과 우리 지역 인권문제 대안 모색	233
7-1. 실천계획 수립	234

※ 제2권 [1년 차 주요 교육과정 및 메타데이터] 페이지 표시

다. 과정 및 모듈 개발 로드맵

1) 과정 및 모듈, 기본교재 개발 현황

- 이번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원 1년 차에 운영할 필수과정 12개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정을 교과목 및 모듈 구성을 통하여 제시함.
- 나아가 이 12개 과정 모듈의 구체적 내용과 운영 방향을 알 수 있도록 각 모듈의 메타데이터를 구성하여 제시함.

- 즉 현재까지 12개 과정 구성표, 중복 모듈 제외 총 157개의 모듈과 모듈별 메타데이터가 개발된 것임. 이 연구보고서 제2권에 그 결과물을 별도로 제시함.
- 또한 이 중 그 활용도와 콘텐츠 개발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공통 교재로 인권의 이해와 문화 예술체험활동 부분,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기업과 인권」 업무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과정,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의 기본 모듈 총 50종에 대하여는 기본교재를 구성하여 이 연구보고서 제3권에 그 결과물을 별도로 제시함.
- 또한 50종의 모듈이 과정으로 조합된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위 4개 과정에 대한 기본교재와 공통교재까지 총 5권의 기본교재 샘플을 제작함.



[그림 31] 기본교재 5종 샘플 표지

2) 지속적인 교육과정 표준화 작업 진행

- 이번 모듈 개발을 통해 인권교육에 포함될 기본 내용 및 과정 표준화가 시작되었음.
- 이후 개발되는 교육과정과 모듈 역시 이러한 표준화 작업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될 것임.
- 개발된 모듈의 업데이트와 필요한 모듈의 추가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 과정은 제공하는 기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면서 연속성 있게 발전될 것임.
- 또한 개발된 모듈형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기반해 2024년 계획된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 현장 교수자와 학습자에 의한 검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가면서 교육과정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음.

3) 이후 교육과정 개발 계획

가) 개발 교육과정 선정 기준

- 앞에서 제시한 인권교육원의 역할 기능상 수행하여야 할 과정 분야, 교육과정의 대분류와 중분류 기준, 현재 인권상황에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과정 개발의 순차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구성원의 인권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미션 역시 인권교육원의 역할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유엔 칼리지(United Nations System Staff College, UNSSC)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

나) 우선 개발 교육과정 및 교재 분야 안

(1) 인권교육가 교육과정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정 중 가장 비중 있는 운영 분야로서, 한국 사회 인권교육 지형의 선진화를 위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교육과정임.
- 인권교육 현장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데, 한결같이 지적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인권교육가의 역량 부족과 적실한 인권교육 교재의 부재임.
- 인권교육원의 개원 전에 이 과정 운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밀도 있는 점검을 통해 과정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인권교육가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교육과정은 기본과정 1, 2와 전문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교육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재화하여야 하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기본과정 1>에서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해당 역량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목과 모듈에 대한 개발이 시급할 것임.
-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인권의 이해 관련 공통 모듈 9종을 접목하면서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인권교육가가 함양해야 할 역량을 기준으로 분석해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인권리더십 교육과정

- 각 조직이 가지는 본래의 인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자의 인권 역량을 지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특히, 사회 각계 인권 취약계층과의 접점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 현재 한국 사회 인권적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분야, 인권적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인권 행정 지원에 있어 관련 규범과 예산에 대한 중요한 권한을 지닌 지방의회 분야 리더십 교육 과정은 한국 사회 인권상황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 2023년 진행된 사회복지분야 및 학교관리자, 지방의원 인권리더십 과정의 성과를 분석해 인권리더십 과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을 준비해야 함.

(3)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직원 역량 강화 과정

-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가인권기구 업무 담당자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적임.
- 다만 현재 개발되거나 개발될 다수의 교육과정 내 교과목과 모듈을 조합하면 내부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 대부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조사, 정책, 교육의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필요한 교과목과 모듈을 추가하는 개발 과정이 필요함.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조사관학교, 정책 학교 과정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과정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임.

(4)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으로서 역할에 맞게 각 분야별 새로운 인권 의제나 인권적 관점의 증진을 견인할 교육과정과 교재를 준비해야 함.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엔 각 조약위원회 일반논평이 체계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그 핵심적인 관점 등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관련 교육과정 프로그램에서 각 일반논평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 의제와 관점을 소개하고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및 관련 일반논평의 주요 내용을 국내에 소개하여 확산을 돕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교육과정이 담당할 역할임.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⁴²⁾

가. 비전과 전략

● 비전

- 좋은 인재개발, 따뜻한 인재원

● 미션

-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공무원 양성

● 전략

- 미래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 혁신
- 포스트코로나시대, 효과적 교육방식 도입
-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역할 제고 및 협력 강화
- 교육품질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 강화 및 공공 HRD 허브 역할 강화

나. 역할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선도기고나(Public Hub)로서 교육훈련, 연구개발, 교류협력, 교육인프라 마련의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함.

다. 교육과정 운영 개요

구분	과정명	교육 기간	기당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총인원
	총계 : 991개 과정				7,007,528명
	집합교육 합계 : 70개 과정			183회	7,258명

4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3)

구분	과정명		교육 기간	기당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총인원	
기본 교육	소계 : 12개 과정				32회	4,119명	
	국장급과정	고위정책과정	45주	69명	1회	69명	
		신임국장과정	3일	약20명	5회	80명	
	과장급과정	신임과장과정	4일	약40명	12회	500명	
	국·과장급	개방형직위 임용자과정	3일	20명	1회	20명	
	5급과정	신임관리자과정(공채)	17주	320명	1회	320명	
		신임관리자과정(경채)	9주	50명	1회	50명	
		5급승진관리자과정	6주	360명	5회	1,800명	
	6급이하 과정	7급신규자과정	5주	250명/150명	2회	400명	
		7급신규자과정 (지역인재 수습직원)	5주	160명	1회	160명	
		9급신규자과정	4주	300명	1회	300명	
		9급신규자과정 (지역인재 수습직원)	4주	380명	1회	380명	
		행정실무자과정	3주	40명	1회	40명	
	국정철 학·공직 가치교 육	소계 : 5개 과정				8회	220명
		공직가치 심화과정	공직가치실천과정	2일	30명	2회	60명
국정 시책과정		적극행정실천과정	2일	30명	1회	30명	
		규제혁신실천과정	2일	30명	2회	60명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역량향상과정	3일	20명	1회	20명	
		인공지능의 이해·실습과정	2일	25명	2회	50명	
공직리 더십 교육	소계 : 2개 과정				28회	770명	
	역량향상 과정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4일	30명	12회	360명	
		(고공단후보자 역량레벨업)	2일	10명	2회	20명	
		과장후보자과정	3일	30명	12회	360명	
		(과장후보자 역량레벨업)	2일	15명	2회	30명	
글로벌 교육	소계 : 12개 과정				18회	465명	
	글로벌 기본교육 과정	국제업무기본과정	5일	30명	1회	30명	
		국제업무심화과정	5일	30명	1회	30명	

구분	과정명		교육 기간	기당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총인원	
		국제정세이해과정	5일	30명	1회	30명	
		국제정세이해 지역심화과정(중국)	2일	20명	1회	20명	
		국제정세이해 지역심화과정(동남아)	2일	20명	1회	20명	
	글로벌 전문교육 과정	국제회의과정	5일	30명	1회	30명	
		국제협상과정	5일	20명	1회	20명	
		글로벌개발컨설팅과정	5일	20명	1회	20명	
	장기국회 훈련자 과정	영어권 장기국외훈련자과정	3주	30~ 35명	3회	100명	
	외국공무원 과정	말레이시아 공무원과정	6주	20명	3회	60명	
		이집트 국가인력개발원 교육역량향상과정	19일	15명/ 50명	2회	65명	
베트남 미래지도자 역량향상과정		12일	20명	2회	40명		
소계 : 39개 과정					97회	1,954명	
직무·전 문성 교육	공동 직무 역량	정책기획역량향상과정	3일	25명	4회	100명	
		빅데이터 활용 미래예측 대응과정	3일	25명	3회	75명	
		공공갈등관리역량향상과정	5일	25명	1회	25명	
		인문융합역량향상과정	3일	25명	1회	25명	
		심리학적 기제를 활용한 소통 역량향상과정	5일	25명	1회	25명	
		교육운영역량향상과정	3일	30명	1회	30명	
		강의역량향상과정	3일	30명	2회	60명	
	D.N.A 아카데미(14)	입 문	4차 산업혁명 트렌드의 이해	2일	18명	5회	90명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이해	2일	25명	3회	75명
			3D 프린팅과 친해지기	3일	18명	2회	36명
			스마트 라이프 따라하기	1일	25명	2회	50명
			메타버스의 이해와 활용	2일	18명	5회	90명
			드론 기술의 이해와 활용	3일	18명	3회	54명
			디지털 리더러시 이해하기	3일	18명	5회	90명
일	엑셀로 배우는 초급 데이터 분석	2일	18명	3회	54명		

구분	과정명		교육 기간	기당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총인원	
	반	앱으로 배우는 스마트센서	2일	25명	2회	50명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2일	25명	2회	50명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2일	18명	3회	54명	
	전문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파이썬)	3일	18명	1회	18명	
		인공지능 프로그래밍(파이썬)	3일	18명	1회	18명	
		빅데이터 분석기반의 정책수립	3일	18명	2회	36명	
	정보화 직무 공통 (9)	입문	사무자동화(OA) 활용	3일	18명	3회	54명
			파이썬 이해하기	3일	18명	3회	54명
		일반	정보화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3일	18명	3회	54명
			파이썬 실무 활용	3일	18명	6회	108명
			엑셀 VBA 기초 코딩	3일	18명	4회	72명
			반복되는 업무의 자동화(RPA)	2일	18명	2회	36명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PowerBI)	2일	18명	2회	36명
		전문	정보화사업 대가 산정	3일	18명	2회	36명
			SQL 실무 활용	3일	18명	1회	18명
	정보 보안 (8)	입문	정보보호와 친해지기	2일	18명	2회	36명
			생활속의 IoT 보안	2일	25명	2회	50명
		일반	개인정보보호 실무	2일	25명	3회	75명
			정보보안 정책 실무	2일	18명	2회	36명
			TOP/P 네트워크 이해	2일	18명	2회	36명
		전문	네트워크 해킹 및 보안	3일	18명	2회	36명
시스템 해킹 및 보안			3일	18명	2회	36명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보안			3일	20명	2회	40명	
이러닝 합계 : 921개 과정						7,000,000명	
이러닝	이러닝(921개)		연중	-	연중	7,000,000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3 : 22 표 재구성)

라. 주요 과정별 교육대상 및 교육 계획

1) 기본교육과정

- 기본교육은 총 12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12개 학습대상그룹 총 4119명의 학습자에 대해 32회의 집합과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교육으로 실시함.

가)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 교육체계

- 교육체계는 4학기제(45주)를 기본으로 운영함.

	1학기 (1.27.~3.31./10주)	2학기 (4.3.~7.7./14주)	3학기 (7.10.~9.1./8주)	4학기 (9.4.~11.29./13주)
학기 체계	성찰과 다짐	국가정책조망	내적 역량 개발	국제정세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정운영 안내 소통/교류 강화 공직가치, 리더십 현장체험학습 인문융합(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비전 정책전문역량 포럼 과제 연구 현장체험학습 인문융합(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역량 강화 북 세미나 과제 집중 연구 현장체험학습 인문융합(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단체 테마형 현장학습 미래전략아카데미 교육발전 워크숍 인문융합(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공헌활동, 정책소통 훈련, 자기개발학습, 어학, 과제연구 및 자료수집, 동호회, 독서 등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3 : 31)

● 교육과정

- 기본교육의 교육과정은 직급별 5개 과정(대분류)을 12개 과정으로 세분하여 해당 과정에 따른 교육기간, 기당 인원, 횟수와 총 교육인원, 교육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 공직가치(10%), 국정비전(20%), 리더십(20%), 글로벌(20%), 인문융합(30%) 등 5대 모듈로 균형적 교과를 편성함.

< 표 46 > 기본교육의 교육 과정

구분	과정명(중분류)	과정명
기본 교육	국장급과정	고위정책과정
		신임국장과정
	과장급과정	신임과장과정
	국·과장급과정	개방형직위 임용자과정
	5급과정	신임관리자과정(공채)

구분	과정명(중분류)	과정명
		신임관리자과정(경채)
		5급승진관리자과정
	6급이하과정	7급신규자과정
		7급신규자과정(지역인재 수습직원)
		9급신규자과정
		9급신규자과정(지역인재 수습직원)
		행정실무자과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3 : 24, 표 재구성)

나) 과정별 교육대상

● 12개 과정별 교육대상과 총 교육인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47〉 기본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과정명	교육대상	총인원
고위정책과정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국장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1급	69명
신임국장과정	고공단 역량평가 통과자 또는 국장 보직 2년 이내자	80명
신임과장과정	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 또는 과장 보직 1년 이내자	500명
개방형직위 임용자과정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공무원	20명
신임관리자과정(공채)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합격자로서 신규임용예정자	320명
신임관리자과정(경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합격자로서 신규임용 예정자	50명
5급승진관리자과정	중앙행정기관 5급 승진임용 예정자	1,800명
7급신규자과정	중앙행정기관 6·7급 신규 임용(예정)자	400명
7급신규자과정 (지역인재 수습직원)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합격자	160명
9급신규자과정	중앙행정기관 9급 신규 임용(예정)자	300명
9급신규자과정 (지역인재 수습직원)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합격자	380명
행정실무자과정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40명
계		4,119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3 : 24, 표 재구성)

다) 12개 과정별 교육계획

- 과정별 교육기간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45주까지 다양하며 기당 인원의 경우 국과장급 과 신입관리자과정(경채), 행정실무자과정은 20명에서 70명까지 소수로 실시되며 나머지는 200-300명 단위의 대규모로 진행됨. 교육규모는 과정별 집합교육과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방식의 차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2023년은 6급 이하 신규 채용된 공무원들의 직무역량 향상 및 공무원 직무 적응 지원을 위해 교육기간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함. 7급지역인재과정의 교육기간을 4주에서 5주로, 9급 신규자과정을 3주에서 4주로 확대함으로써 급수별 교육기간을 통일함.

〈표 48〉 기본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계획

과정명	교육기간	기당인원	횟수	총인원
고위정책과정	45주	69명	1회	69명
신임국장과정	3일	약 20명	5회	80명
신임과장과정	4일	약 40명	12회	500명
개방형직위 임용자과정	3일	20명	1회	20명
신임관리자과정(공채)	17주	320명	1회	320명
신임관리자과정(경채)	9주	50명	1회	50명
5급승진관리자과정	6주	360명	5회	1,800명
7급신규자과정	5주	250명/150명	2회	400명
7급신규자과정(지역인재 수습직원)	5주	160명	1회	160명
9급신규자과정	4주	300명	1회	300명
9급신규자과정(지역인재 수습직원)	4주	380명	1회	380명
행정실무자과정	3주	40명	1회	40명
계			32회	4119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3 : 18, 표 재구성)

라) 교육방식 및 학습방식

● 집합교육 및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병행) 교육

- 기본교육 전체 12개 과정 중 국장급과정(고위정책과정, 신임국장과정), 과장급과정(신임과장과정), 국·과장급과정(개방형직위 임용자과정), 6급이하 과정 중 행정실무자과정을 포함해 5개 과정이 집합교육으로 진행함.
- 기본교육 전체 12개 과정 중 5급과정(신임관리자과정-공채, 신임관리자과정-경채, 5급승

진관리자과정), 6급이하과정 중 행정실무자과정을 제외한 7급신규자과정, 7급신규자과정(지역인재 수습직원), 9급신규자과정, 9급신규자과정(지역인재 수습직원), 총 7개 과정이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교육병행)으로 진행함.

- 신입관리자(공채)의 경우 오프라인교육 11주와 온라인 교육6주로, 신입관리자과정(경채)는 오프라인교육 6주와 온라인교육 3주로 진행함.
- 5급승진관리자과정은 오프라인교육 3주와 온라인교육 3주로, 7급신규자과정과 7급신규자과정(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오프라인 교육 3주와 온라인교육 2주로 각각 진행함.
- 9급신규자과정과 9급신규자과정(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오프라인교육 2주와 온라인교육 2주로 진행함.

● 학습방식

- 학습은 분임 단위의 학습활동 중심으로 5개 분임 및 모둠을 운영하며 분임별 과제연구 및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함(3학기 1회).
- 매 학기별 정책 현장학습을 강화함.

2) 공직리더십 교육

- 공직리더십 교육은 총 2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2개 학습대상그룹 총770명의 학습자에 대해 28회의 집합교육으로 실시함.

가) 교육과정

- 공직리더십 교육의 교육과정은 한 개의 역량향상과정을 2개 과정으로 세분하여 해당 과정에 따른 교육기간, 기당 교육인원, 교육횟수와 총 교육인원, 교육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표 49〉 공직리더십 교육의 교육 과정

구분	과정명(중분류)	과정명
공직 리더십 교육	역량향상과정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고공단후보자 역량레벨업과정)
		과장후보자과정 (과장후보자 역량레벨업과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3 : 19, 표 재구성)

나)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 과정별 교육대상과 총 교육인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50〉 기본교육의 과정별 교육대상

과정명	교육대상	총인원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고공단 역량레벨업과정)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중 희망자)	360명 (20명)
과장후보자과정 (과장후보자 역량레벨업과정)	중앙행정기관 과장 후보자 (중앙행정기관 과장 후보자 중 희망자)	360명 (30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3 : 19, 표 재구성)

다) 교육과정별 교육계획

- 과정별 교육기간은 짧게는 각각 4일과 3일로 진행되며 고공단 역량레벨업과정과 과장후보자 역량레벨업과정의 경우 2일로 진행됨. 교육규모는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후보자와 중앙행정기관 과장 후보자의 경우 각각 360명이며,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중 희망자와 중앙행정기관 과장 후보자 중 희망자는 각각 20명임.

과정명	교육기간	기당인원	횟수	총인원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고공단 역량레벨업과정)	4일 (2일)	30명 (10명)	12회 (2회)	360명 (20명)
과장후보자과정 (과장후보자 역량레벨업과정)	3일 (2일)	30명 (15명)	12회 (2회)	360명 (30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3 : 19, 표 재구성)

라) 교육방식

● 집합교육

- 공직리더십 교육은 전체 2개 과정이며 모두 집합교육으로 진행함.

4) 국정비전·공직가치교육

- 국정비전·공직가치교육은 총 5개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의 학습대상그룹 총 220명의 학습자에 대해 8회의 집합교육으로 실시함.

가) 교육과정

- 국정비전·공직가치교육의 교육과정은 공직가치심화과정과 국정시책과정을 5개 과정으로

세분하여 해당 과정에 따른 교육기간, 기당 교육인원, 교육횟수와 총 교육인원, 교육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표 51〉 국정비전·공직가치교육의 교육 과정

구분	과정명(중분류)	과정명
국정비전·공직 가치교육	공직가치 심화과정	공직가치실천과정
	국정시책과정	적극행정실천과정
		규제혁신실천과정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역량향상과정
		인공지능의 이해·실습과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3 : 18, 표 재구성)

나)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 과정별 교육대상과 총 교육인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52〉 국정비전·공직가치교육의 과정별 교육대상

과정명	교육대상	총인원
공직가치실천과정	(공무원) 4급 이하, (공공기관) 차장급 이하	60명
적극행정실천과정	적극행정 담당 또는 적극행정에 관심있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차장급 이하 직원	30명
규제혁신실천과정	규제담당 또는 규제혁신에 관심있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차장급 이하 직원	60명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역량향상과정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정책담당 공무원	20명
인공지능의 이해·실습과정	(공무원) 4급 이하, (공공기관) 차장급 이하	50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3 : 18, 표 재구성)

다) 교육과정별 교육계획

- 과정별 교육기간은 2일 또는 3일로 진행되며,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역량향상과정을 제외한 4개의 과정은 2일로 진행됨. 교육규모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역량향상과정의 학습자 그룹인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정책담당 공무원 20명, 인공지능의 이해·실습과정의 학습자 그룹인 (공무원) 4급 이하, (공공기관) 차장급 이하 2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당 교육인원은 30명임.

〈표 53〉 국정비전·공직가치교육의 과정별 교육계획

과정명	교육기간	기당인원	횟수	총인원
공직가치실천과정	2일	30명	2회	60명
적극행정실천과정	2일	30명	1회	30명
규제혁신실천과정	2일	30명	2회	60명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역량향상과정	3일	20명	1회	20명
인공지능의 이해·실습과정	2일	25명	2회	50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3 : 18, 표 재구성)

라) 교육방식

● 집합교육

- 국정비전·공직가치교육은 전체 5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모두 집합교육으로 진행함.

4) 글로벌교육

가) 교육과정

- 글로벌교육의 교육과정은 글로벌기본교육과정, 글로벌전문교육과정, 장기국외훈련자과정, 외국공무원과정을 12개 과정으로 세분하여 해당 과정에 따른 교육기간, 기당 교육인원, 교육횟수와 총 교육인원, 교육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표 54〉 글로벌교육의 교육과정

구분	과정명(중분류)	과정명
글로벌 교육	글로벌 기본 교육 과정	국제업무기본과정
		국제업무심화과정
		국제정세이해과정
		국제정세이해과정 지역심화과정(중국)
		국제정세이해과정 지역심화과정(동남아)
	글로벌전문교육과정	국제회의과정
		국제협상과정
		글로벌개발컨설팅과정
	장기국외훈련자과정	영어권장기국외훈련자과정

구분	과정명(중분류)	과정명
	외국공무원과정	말레이시아 공무원과정
		이집트 국가인력개발원교육역량향상과정
		베트남 미래지도자 역량향상과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3 : 20, 표 재구성)

나)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 글로벌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대상과 총 교육인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55〉 글로벌교육의 과정별 교육대상

과정명	교육대상	총인원
국제업무기본과정	국제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30명
국제업무심화과정	국제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30명
국제정세이해과정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30명
국제정세이해 지역심화과정(중국)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20명
국제정세이해 지역심화과정(동남아)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20명
국제회의과정	국제회의·국외출장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30명
국제협상과정	통상·협상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20명
글로벌개발컨설팅과정	국제개발협력 또는 개도국 정책자문 담당, 국제기구 파견예정인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20명
영어권 장기국외훈련자과정	영어권 장기국외훈련 파견 공무원	100명
말레이시아 공무원과정	말레이시아 공무원 (고위/중견/실무급)	60명
이집트 국가인력개발원 교육역량향상과정	이집트 국가인력개발원 고위급 공무원	65명
베트남 미래지도자 역량향상과정	베트남 고위공무원	40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3 : 20, 표 재구성)

다) 교육과정별 교육계획

- 과정별 교육기간은 짧게는 2일에서 6주까지, 교육횟수는 1회에서 3회로 진행함. 기수당 인원은 15명에서 50명으로 구성함.

〈표 56〉 글로벌교육의 과정별 교육계획

과정명	교육기간	기당인원	횟수	총인원
국제업무기본과정	5일	30명	1회	30명
국제업무심화과정	5일	30명	1회	30명
국제정세이해과정	5일	30명	1회	30명
국제정세이해 지역심화과정(중국)	2일	20명	1회	20명
국제정세이해 지역심화과정(동남아)	2일	20명	1회	20명
국제회의과정	5일	30명	1회	30명
국제협상과정	5일	20명	1회	20명
글로벌개발컨설팅과정	5일	20명	1회	20명
영어권 장기국외훈련자과정	3주	30~35명	3회	100명
말레이시아 공무원과정	6주	20명	3회	60명
이집트 국가인력개발원교육역량향상과정	19일	15명/50명	2회	65명
베트남 미래지도자역량향상과정	12일	20명	2회	40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3 : 20, 표 재구성)

라) 교육방식

● 집합교육

- 글로벌교육은 전체 12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병행) 교육으로 실시되는 장기국외훈련자과정의 영어권장기국외훈련자과정과 외국공무원과정의 말레이시아 공무원과정을 제외한 10개 교육과정은 모두 집합교육으로 진행함.

4) 직무·전문성교육 과정

- 해당 내용 없음.

2 국회의정연수원⁴³⁾

- 국회의정연수원은 3개의 교육과정(의원참여과정, 보좌직원과정, 전직원참여과정), 기타교육,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가. 교육과정

1) 의원참여과정⁴⁴⁾

- 의원참여과정에는 국회 최고위 과정, 의원활동 맞춤형 과정, 의원 외국어과정이 포함되며 각 과정은 목적에 따라 대상이 특정되고 있음.

가) 국회 최고위 과정

- **과정의 목적과 특성** | 국회의원과 국내 학자의 지식 및 정보 교육의 장으로서 특성을 가짐.
- **교육 대상** | 국회의원 및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
- **시기** |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 **운영** | 각 분야 전문가 강의(5개 강의), 과정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수여
- **내용** | 각 분야별 지식과 분야 관련 정보 등

나) 의원활동 맞춤형 과정

- **과정의 목적과 특성** |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맞춤형 과정
- **대상** | 국회의원
- **시기** | 연중 상시
- **운영** | 맞춤형(내용, 시간, 장소, 수준) 교육 실시
- **내용** | 국회운영, 국정감사, 국정조사, 법안심사, 예산 및 결산 심사 등

다) 의원 외국어과정

- **과정의 목적과 특성** |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에서 글로벌한 의정활동을 위한 효과적 준비
- **대상** | 국회의원

43) <https://training.assembly.go.kr:448/train/main/main.do>

44) <https://training.assembly.go.kr:448/train/main/contents.do?menuNo=1700105>

- 시기 | 1월 ~ 11월(수시신청과 진행)
- 운영 | 온라인, 오프라인 학원 및 전화와 화상 외국어 신청 수강 후 교육비 환급 신청(교육비의 70% 지원)

2) 보좌직원과정⁴⁵⁾

가) 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과정 - 기본과정

- 대상 | - 및 입법보조원 포함한 보좌직원
- 방식 1 | 사이버교육(연중상시)
 - 수강방법 : 의정연수원 홈페이지 '동영상 강의'
 - 교과목 :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국회조직과 기능 소개 및 설명, 입법과정과 회의운영 방법, 법제실 활용하는 방법
- 방식 2 | 실시간 온라인 교육(연 1회)

나) 전문과정

- 과정의 목적 및 특성 | 보좌직원과 관련 전문가 강의
- 교과목 | 예산안 심사, 결산심사, 법제, 국정감사 등

다) 보좌직원과정의 교육과정 및 연간일정

< 표 57 > 보좌직원과정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⁴⁶⁾

구분	교육과정명	교과목	진행시기
기본	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과정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국회조직과 기능소개, 입법과정과 회의운영방법, 법제실 활용하기 등	연중
전문	국회법과정	예산안심사, 결산심사, 법제, 국정감사 등	1월
	미디어글쓰기과정		2월
	질의서작성 실무과정		3월
	결산심사과정		4월

45) <https://training.assembly.go.kr:448/train/main/contents.do?menuNo=1700113>

46) <https://training.assembly.go.kr:448/train/main/contents.do?menuNo=1700116> 내용 재구성

구분	교육과정명	교과목	진행시기
	자료요구 노하우과정		5월
	인사청문회과정		6월
	국정감사과정		7월
	예산안심사과정		8월
	법제과정		9월
	정치자금법 및 회계실무과정		12월

3) 전직원참여과정⁴⁷⁾

- 전직원참여과정은 의정아카데미, 전문교육,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 의정아카데미

- **과정의 목적 및 특성** | 국회 전 직원의 입법지원 능력 강화를 위한 교양 강좌
- **대상** | 국회 전 직원
- **시기** |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연 2회)
- **운영** | 각 분야 전문가 강의 3회,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교육 이수 점수 부여

나) 전문교육

- 전문교육은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과정과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차별화 되어 운영되고 있고 사이버교육과의 연계한 운영을 꾀하고 있음.

〈표 58〉 전문교육의 일반과정과 심화과정⁴⁸⁾

구분	교육과정	진행시기
일반(6)	행정실무	2월
	국가재정과 조세의 이해	2월
	스피치 역량 강화	3월
	회계실무	4월
	법제실무	5월
	국회법	12월

47) <https://training.assembly.go.kr:448/train/main/contents.do?menuNo=1700120>

48) <https://training.assembly.go.kr:448/train/main/contents.do?menuNo=1700123> 표 재구성

구분	교육과정	진행시기
심화(4)	결산 검토	3월
	법률안 검토	5월
	예산안 검토	6월
	위원회 운영	7월

다) 정보화교육

- 정보화교육은 중급과 고급의 수준별로 나누어 교육과정이 구성됨.
- 중급은 총 5개의 과정이 운영되며, 한글 2010 보고서 기획 및 작성, 정책소통을 위한 SNS 활용,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PT 디자인, 업무로 바로 쓰는 엑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PC 활용팁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 고급은 6개의 과정으로 운영되며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홍보,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공공빅데이터 활용, 한글 2010 보고서 편집 기술, 엑셀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홍보로 구성되어 있음.

라) 외국어교육

- 외국어 교육은 대상에 따라 직원 맞춤형 외국어 과정과 직원 외국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직원 맞춤형 외국어 과정은 차관급 이상 또는 주재관 선발자를 대상으로 하며 온·오프라인 학원 및 전화 및 화상 신청 수강 후 교육비 환급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직원 외국어 과정은 모든 외국어가 가능하며 국회 공무원(소속기관, 보좌직원 포함) 및 공무원(무기계약)을 대상으로 함. 대상자 중 우선순위를 고려한 선착순 선발과 온·오프라인 학원 및 전화 및 화상 신청 수강 후 교육비 환급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출석율 70% 이상 수강 시 교육비 70% 지원).

나. 기타교육⁴⁹⁾

1) 전직원 대상 교육 및 콘텐츠 정보 제공의 예

가) 성희롱예방교육

49) <https://training.assembly.go.kr:448/train/mnbyEdc/edcSchdl/listAsmSfm.do>

- 대상 | 전직원
- 기간 | 2023년 7월 중
- 교육방식 | 집합교육

나) EBS 온라인콘텐츠 구독

- 대상 | 전직원
- 신청기간 | 2023년 9월 22일 ~ 10월 13일

2) 특정 대상 집단 교육과정의 예

- 신입실무자과정(9급), 신입실무자과정(8급), 신입관리자(입법고시)과정 등 특정 대상 집단 관련 교육과정의 사례는 최근에 작성된 것이 없음.

다. 사이버교육⁵⁰⁾

1) e-러닝과정

가) 국회사이버교육센터

- 대상 | 국회 공무원(소속기관, 보좌직원 포함)
- 시기 | 국회 사이버교육센터 회원 가입 후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월 최대 2과목 수강 가능)
- 교과목 | 전문교육, 기타교육, 법정 의무교육

나)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 대상 | 국회 공무원(소속기관, 보좌직원 포함)
- 시기 | 연중 상시
- 교과목 |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에 회원가입 후 수시과정 중 지정과정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띄어쓰기, 표준언어예절, 공문서 바로쓰기(새)

2) 독서 교육과정

- 대상 | 국회 공무원(소속기관, 보좌직원 포함), 인턴을 제외한 무기계약노동자

50) <https://training.assembly.go.kr:448/train/main/contents.do?menuNo=1700009>

- 시기 | 매월 1일 ~ 말일

3) 사이버대학 과정

가) 사이버대학 위탁교육과정

- 기관 | 21개 사이버대학(원격대학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한 사이버대학 신입과 편입학)
- 대상 | 국회 공무원(소속기관, 보좌직원 포함)
- 신청시기 | 1학기 : 12월 ~ 1월, 2학기 : 6월 ~ 7월

나) 사이버 시간제등록과정

- 기관 | 21개 사이버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시간제 개설과목 선택 등록 수강
- 대상 | 국회사무처 공무원(보좌직원 포함)
- 신청시기 | 1학기 : 12월 ~ 1월, 2학기 : 6월 ~ 7월

3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은 2024년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함.

가. 교육의 기본방향

- 교육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계획 수립
- 직무 전문성 강화
 - 사법보좌관 준비과정 신설, 가족관계등록 전문역량 인증과정 신설
- 적극적 교육 참여 기회 보장
 - 교육과정 일괄·예비 신청 제도 도입, 육아자 교육우선 제도 도입
- 가정과 직장에서의 원만한 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 젠더와 화목한 가정 신설, 동기와 함께하는 교육과정 신설
-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 소수 직렬 교육 접근성의 지속적인 확대
 - 전산 및 사서직 신규임용후보자과정 신설
- 연간 5개 글로벌 연수과정을 통해 우리 등기·등록시스템 해외 전파
 - 5개 등기 및 등록 역량 강화 글로벌 연구과정 시행

나. 교육과정 및 과정별 교육계획

1) 교육과정 및 과정별 교육계획 개요

-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0개과정, 156회로 실시되며 총 교육인원은 13,522명임. 연수교육은 총 22개 과정, 32회로 진행되며 총 교육인원은 1,242명임. 직무교육은 기본교육 5개 과정과 전문교육 29개 과정을 포함해 34개 과정, 63회로 교육이 실시하며 총 교육인원은 6,870명임. 특별교육은 44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61회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총 5,410명이 교육에 참여함.

- 교육방법은 대면집합교육 134회, 비대면교육 15회,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교육 7회로 진행함.

2) 연수교육

- 연수교육은 총 22개 과정, 32회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인원은 총 1,242명임.

〈표 59〉 연수교육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교육계획

교육과정	교육 기간	직급별 대상인원						횟수	계
		1-3	4	5	6·7	8·9	기타		
리더십연수	국장	3일	30						30
	신임과장	4일/4 일		50/ 50				2회	100
	중견과장	4일/4 일		50/ 50				2회	100
	사무관 승진자	4일/4 일			80/8 0			2회	160
형사과장연수		2일		50					
사법행정담당직위연수		2일					10		
감사담당관연수		3일			80				80
후견감독담당자연수		3일			50				50
내부강사양성연수		4일			30				30
회계직 담당자 연수	5,6,7급	4일			80			2회	160
	8,9급	4일				80			
직원힐링연수		3일			20			5회	100
		3일			20				
		3일			20				
		3일			20				
		3일			20				
가족힐링연수		3일			25			2회	50
		3일			25				
퇴직예정자 (정년) 미래설계 연수	1차	5일		57				2회	151
		5일		94					
	2차	3일		57			2회	151	

교육과정	교육기간	직급별 대상인원						횟수	계	
		1-3	4	5	6·7	8·9	기타			
	3일	94								
한·일등기관 등 상호연수	일본	10일			5		5	2회	20	
	한국	9일			5		5			
코이카 글로벌 연수과정	몽골 국가등록제도·디지털 역량 강화	미정	미정						5회	
	다국가(벨리즈 등) 등기·등록 제도·디지털 역량 강화	미정	미정							
	페루 등기·등록 역량 강화	미정	미정							
	다국가(우즈베키스탄 등) 등기·등록 제도·디지털 역량 강화	미정	미정							
	동티모르 등기·등록 역량 강화	미정	미정							
소계							32회	1,242		

(법원공무원교육원, 2023 :1- 2, 표 재구성)

3) 직무교육

- 직무교육은 기본교육 5개 과정과 전문교육 29개 과정을 포함해 34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63회 교육을 실시하며, 총 교육인원은 6,870명임.

가) 직무교육의 기본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기간	직급별 대상인원				횟수	계
		5	6·7	8·9	기타		
5급 신규임용후보자과정	16주	10					10
7급 승진 후보자과정	1주			200			200
	1주			200			200
	1주			200			200

교육과정	교육기간	직급별 대상인원				횟수	계
		5	6·7	8·9	기타		
	1주			200			200
	1주			200			200
	1주			200			200
9급 신규 임용후보자과정	8주			300			300
전산직 신규임용후보자과정	3주			50			50
사서직 신규임용후보자과정	3주			10			10
소계						10회	1,570

(법원공무원교육원, 2023 : 3, 표 재구성)

나) 직무교육의 전문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기간	직급별 대상인원				횟수	계
		5	6·7	8·9	기타		
민사참여관 과정	5,6,7급	4일	100			3회	300
		3일	100				
		4일	100				
민사송무과정	8,9급	3일		100		3회	300
		4일		100			
		3일		100			
민법 및 요건 사실과정	5,6,7급	4일	100			3회	300
		3일	100				
		4일	100				
	8,9급	3일		100			100
형사참여관 과정	5,6,7급	4일	100			2회	200
		3일	100				
형사송무과정	8,9급	3일		100			100
민사집행과정	5,6,7급	3일	100			3회	300
		3일	100				
		3일	100				

교육과정		교육 기간	직급별 대상인원				횟수	계
			5	6·7	8·9	기타		
	8,9급	3일			100		2회	200
		3일			100			
민사신청과정	5,6,7급	4일	100				2회	200
		3일	100					
	8,9급	3일			100		4회	400
		3일			100			
		3일			100			
		4일			100			
공탁과정	5,6,7급	4일	100				2회	200
		3일	100					
	8,9급	3일			100		2회	200
		3일			100			
도산과정	5,6,7급	4일	100				2회	200
		3일	100					
	8,9급	3일			100		2회	200
		3일			100			
회생위원과정	5급	4일	100					
부동산등기 과정	5,6,7급	3일	100				3회	300
		4일	100					
		4일	100					
	8,9급	3일			100		2회	200
		3일			100			
상업법인등기 과정	5,6,7급	4일	100				2회	200
		3일	100					
	8,9급	3일			100			100
가족관계 등록과정	5,6,7급	4일	100				2회	200
		3일	100					
	8,9급	3일			100			100
가사참여관과정	5,6,7급	4일	100					100
가사조사관과정	5,6,7급	4일	100					100

교육과정	교육 기간	직급별 대상인원				횟수	계
		5	6·7	8·9	기타		
성년후견과정	5,6,7급	4일	100			2회	200
	8,9급	3일			100		
가사조사실무과정	5,6,7급	4일	100명				100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조사실무과정	5,6,7급	4일	100명			2회	200
		4일	100명				
가사실무과정	8,9급	3일			100		100
사서직법률실무과정		4일	100				100
소계						53회	5,300

(법원공무원교육원, 2023 : 3-5, 표 재구성)

4) 특별교육

- 특별교육은 44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61회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인원은 총 5,410명임.

교육과정	교육 기간	직급별 대상인원						횟수	계
		4	5	6	7	8·9	기타		
사법보좌관 준비과정	제1과정	5일		50				4회	200
		5일		50					
	제2과정	5일		50					
		5일		50					
민사집행 전문역량 인증과정	2주		30					30	
부동산·상업·법인등기 전문역량 인증과정	2주		30					30	
가족관계등록 전문역량 인증과정	2주		30					30	
사무관특별승진 임용후보자과정	4주			50				50	
신규임용자 과정	가사조사관	22주					20		20
	속기직	5일					30		30
	사서직	5일					10		10
	전산직· 통계직	5일					20		20

교육과정		교육 기간	직급별 대상인원						횟수	계
			4	5	6	7	8·9	기타		
	법원보안 관리대	5일						80		80
법원실무 연수과정	등기·도산	4일						100	2회	200
	공탁·집행	4일						100		
기술직실무과정		4일						50		50
속기·관리직실무과정		4일						50		50
법원보안관리대실무과정		4일						50		50
가족관계 등록관서 공무원과정	초급	5일						100	총 7회 (초급 5회, 중급 2회)	100
		5일						100		100
		5일						100		100
		5일						100		100
		5일						100		100
	중급	5일						100		100
		5일						100		100
가족관계등록 찾아가는 강의실		1일						50	4회	200
		1일						50		
		1일						50		
		1일						50		
속성과정	공탁관등 속성과정 (5~9급)	1일			100				2회	200
		1일			100					
	경매참여사무관 등 속성과정 (5~9급)	1일			100				2회	200
		1일			100					
증인지원관과정		4일						50		50
국가소송수행자과정		3일						20		20
민사조정실무과정(5,6,7급)		3일		50					2회	100
		3일		50						
집행관	신규과정	3일						70	2회	140
		3일						70		
	실무과정	3일						50		50
	사무원	3일						80	2회	160

교육과정		교육 기간	직급별 대상인원						횟수	계
			4	5	6	7	8·9	기타		
	과정	3일						80		
	연찬과정	3일						20		20
군사법원서기과정		2일						40		40
마음살림과정		2일	50						2회	100
		2일	50							
데이터기반 문제해결 및 보고서 작성능력 향상과정		2일	130							130
인문학 교양과정		2일	100						2회	200
		2일	100							
젠더와 화목한 가정		2일	50							50
골라듣는 자유강좌	민사송무	미정	200						11회	2,200
	민법 및 요건사실	미정	200							
	형상송무	미정	200							
	부동산집행	미정	200							
	채권집행	미정	200							
	민사신청	미정	200							
	공탁	미정	200							
	도산	미정	200							
	부동산등기	미정	200							
	상업등기	미정	200							
	가족관계 등록	미정	200							
소계								61회	5,410	

(법원공무원교육원, 2023 : 3-5, 표 재구성)

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⁵¹⁾

가. 교육체계

● 양성평등교육

- 브랜드과정 개발로 교육효과성 제고
-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 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역량 증대
- 모바일 콘텐츠를 통한 대국민 의식 확산
- 정책기획, 집행 대상 성평등 혁신역량 배양

● 교육운영

- 콘텐츠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 학습자 대상별 맞춤형 교육
- 공감사례를 통한 체감형 교육
- 소통하는 교육훈련의 장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구비

● 개설과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의 개설과정은 성인지정책교육, 전문강사교육, 폭력예방교육의 범주에서 아래의 7개 과정이 개설 운영됨.

- 성인지역량향상교육과정
- 양성평등정책교육
- 성별영향평가교육과정
- 성인지예결산 및 통계교육
- 전문강사 양성교육과정
- 강사 역량강화교육

51) <https://demsnew.kigepe.or.kr/front/contents/view.act?pageCode=P010101>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교육과정

나. 주요 교육범주와 교육과정 소개

1) 성인지정책교육⁵²⁾

가) 성인지력향상교육

● 교육목표

- 공무원 및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성평등 의식 강화를 통해 정책수립 과정의 성평등 실천역량 강화.
- 사회적 가치로서의 성평등 의식을 개인과 조직, 직무차원에서 이해함으로써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

● 교육대상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공무원, 정책관련 이해관계자 등

● 교육과정명

- 인문과학으로 이해하는 성인지 감수성
- 생활 속에서 이해하는 성인지 감수성
- 관리자를 위한 슬기로운 공직생활
- 법무부 양성평등교육
- 국방부 특화교육
- (기관특화) 성인지력향상 및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나) 성주류화제도교육

● 교육목표

- 성주류화제도의 필요성과 영향력을 이해함으로써 공무원의 성평등정책 기획 및 실행역량 강화.

52) <https://demsnew.kigepe.or.kr/front/contents/view.act?pageCode=P010201>

- 성인지관점에 기반한 지역정책 실현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성평등 정책 업무 실무 능력 제고.

● 교육대상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공무원,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등

● 교육과정명

- 2023 '모두'를 위한 성인지정책
- 성인지통계로 보는 돌봄, 일자리
- (기관특화) 지역사회와 성평등정책 실천/여성친화도시 이해과정

다) 업무담당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 교육과정 목표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과 결산제도 업무담당자의 정책 개선과 제도추진 역량 강화.
- 정책영역별 성별 관련성 이해와 우수사례 공유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수행 전문성 제고.

● 교육대상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과 결산 업무 담당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등.

● 교육과정명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관리자, 총괄실무담당자 교육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업무담당자교육
-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전문교육

2) 전문강사교육⁵³⁾

가)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요

● 신규위촉

53) <https://demsnew.kigepe.or.kr/front/contents/view.act?pageCode=P010301>

- 서류전형기반 신청 → 교육과정 이수 → 단계별 심사 → 전문강사 위촉

● 재위촉

- 교육대상자 발표 → 보수(역량 강화)과정 이수 → 재위촉 요건 평가 → 전문강사 재위촉

나)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교육과정 목표

-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에서 성폭력예방/성매매예방/성희롱예방/가정폭력예방 통합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강의력을 갖춘 전문강사 양성 신규위촉

● 교육과정명 및 교육기간

- 신규 통합과정(150시간)
- 재위촉 보수과정 (14시간)

● 과정별 교육대상

- 신규 통합과정 - 위촉경력 없는 자(서류전형)
- 재위촉 보수과정 - 통합교육 전문강사

다) 양성평등교육·성별영향평가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교육과정 목표

-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사회분야별 양성평등 의식향상을 통해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평등 문화조성에 필요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강사 양성.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및 성인지 예산제도 실시 강화에 따른 정부 성인지정책 추진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 양성.

● 교육과정명 및 교육기간

- 신규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80시간)
- 재위촉 보수과정(14시간)

● 과정별 교육대상

- 신규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위촉경력 없는 자
- 재위촉 보수과정 - 양성평등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전문강사

라) 강사 역량 강화 과정

● 교육과정 목표

- 전문강사 강의역량 강화 특화과정 운영을 통한 대상별 교수법 특성화 도모.
- 성희롱예방 등 폭력예방교육 일반강사 대상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통한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 교육과정명 및 교육기간

- 강사 역량 강화 과정(1일 7시간)

● 교육대상

- 전문강사 및 일반강사

3) 폭력예방교육⁵⁴⁾

- 폭력예방교육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으로 진행되며, 전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됨. 과정별로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식은 다음과 같음.

가) 사업개요

- 공공기관 폭력예방 방지조치(성희롱·성폭력)에 따른 고충상담원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 강화 및 폭력예방 업무의 실효성 확보.
-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으로 기관 내 고충상담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나) 전문과정

● 교육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지정 고충상담원

● 모집방법 및 시기

54) <https://demsnew.kigepe.or.kr/front/contents/view.act?pageCode=P010401>

- 여성가족부 공문 시행 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센터'에 온라인 신청.
- 연 3회(3월, 6월, 9월) 모집 실시

● 교육시간

- 2일, 14시간

다) 심화과정

● 교육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지정 고충상담원(고충상담원 교육 전문과정 이수자)

● 모집방법 및 시기

- 여성가족부 공문 시행 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센터'에 온라인 신청.
- 연 3회(3월, 6월, 9월) 모집 실시

● 교육시간

- 1일, 14시간(선수 사이버학습 7시간) + 비대면 혹은 대면 교육 1일

첨부

첨부 1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대비 모듈화 과정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정이 계속 조정되고 있어서 2023년 교육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운영 현황을 정리했음. 구분에서 '추진'과 '필요'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추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과 관련해 받은 문서 등에 그 필요성 등이 언급되었으나 2023년에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과정
-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문서 등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연구진이 연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정

구분	전문교육과정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인권강사과정	법정의무교육
	인권직무과정	인권리더십과정	교육전문가과정			
국가 수준	①국가공무원 인권담당 역량 과정		④군 인권교관 심화 과정⑨			
	②경찰 인권역량 과정		⑤경찰 내부 인권강사 인권역량 과정⑩	⑥군 영관급 인권감수성 과정	⑦위촉 인권강사 군 분야 인권역량 과정	
	③특사경 인권역량 과정					
추진				④군인권감수성 과정(수사, 의료)		
필요	※UN권고_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역량 강화	※국회의원 ※법관/변호사				
지역 수준	⑧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관리자 인권역량 과정	⑭지역인권기구 인권위원회 인권리더십 과정	⑳노인 인권 교육전문가	㉒공공기관 「기업과 인권」 담당 인권감수성 과정		
	⑨지방정부 인권업무 담당자 인권역량 과정①②	⑮지방의회 의원 인권리더십 과정②	㉑인권교육활동가 인권역량 과정			

구분	전문교육과정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인권강사과정	법정의무교육
	인권직무과정	인권리더십과 정	교육전문가과 정			
	⑩지방정부 인권조사관 인권역량 과정③	⑩아동정책 공무원 인권리더십 과정				
	⑪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인권역량 과정④	⑪인권상담가 인권리더십 과정				
	⑫공공기관 「기업과 인권」 담당자 인권역량 과정⑤	⑫공공기관 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				
	⑬초중고 사회과 교원 인권역량	⑬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①				
추진	⑥사회복지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과정 (장애인⑥/노인⑦ /아동⑧)					
필요		※ 대학 및 연구기관				
기관 / 단체	⑳인권상담가 인권역량 과정	⑳사회복지 시설장 인권리더십 과정	㉑사회복지 분야 교육가 과정 (장애인/노인/ 아동)	㉒보건의료 분야 노인 인권 인권감수성과 정	㉓인권강사 양성 과정	㉔노숙인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㉕인권옹호자 인권역량 과정		㉖인권활동가 교육가 과정		㉗위촉 인권강사 역량 강화 과정	
추진	㉘연론종사자 역량강화 과정		㉙노숙인 분야 인권교육가 과정			
			㉚스포츠 인권교육가 과정			
필요		※ 평생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첨부 2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교과목 유형 분석표

구분	교과군	교과목 명	유사내용	비고
교육일반	교육운영	교육안내 및 마음열기	감수성, 마중물 학습	
	평가 및 설문	평가 의견	평가 및 설문	
	현장탐방	현장 탐방	인권 현장 체험	
	문화형형	문화콘텐츠로 만나는 인권		
	인권특강	2023 인권 이슈	인권 현안 특강/주제 특강	기후 위기와 인권
인권의 개념과 구조	인권의 이해	인권의 이해	인권의 이해 및 권고사례	
	인권의 정보와 지식 일반	차별금지의 이해	인권 차별의 이해	
		세계인권선언		
		인권감수성과 인권문해력	인권감수성 깨우기	
		유엔인권메커니즘		
		인권과 국가		
		생활속 인권발견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의 가치		
분야별 인권이해와 인권적 직무 전문성 개발	아동과 인권	아동 인권의 이해		
	인권이슈/현황	아동 최상의 이익: 이론과 실천		
		아동학대의 이해		

구분	교과군	교과목 명	유사내용	비고
		유아 성인지 감수성		
	인권보장체계	한국의 아동 인권 보장 제도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이론과 사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아동인권보호의 원칙		
	성소수자와 인권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인권행정과 인권	인권 행정의 이해		
	인권이슈/현황	인권친화 행정의 이해		
		혐오차별 대응 및 평등		
		지자체 인권행정 현황과 사례	지자체 아동보호 사례	
	인권보장체계	인권관련 조례 제·개정 사례 공유 및 토론		
		인권관련 조례 제·개정 과제 공유 및 토론		
	인권실천 방안 탐색	인권조직 문화 만들기		
	인권리더십	지자체 인권행정과 리더의 역할(사례중심)		
		인권위원의 역할		
		지자체 인권위원회 활동사례 공유 및 활동 과제 토론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의 이해		
	인권이슈/현황	사회복지시설 인권현황과 사례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 시설 운영		
		돌봄 현장의 인권이슈		

구분	교과군	교과목 명	유사내용	비고
		돌봄 노동자의 노동인권		
		인권침해 및 차별 판단과 심사 훈련		
	인권보장체계	지자체 돌봄 체계와 인권정책		
		돌봄 노동인권 조례 실제와 사례		
	인권실천 방안 탐색	집단지성으로 설계하는 인권친화적 사회복지시설 딜레마 해소방안		
		사회복지 현장의 갈등 사례와 인권친화적 해결 방안		
		사회복지 인권교육 현장의 질문과 답변들		
	인권리더십	최고관리자가 알아야 할 인권경영의 이해		
	경찰과 인권	인권친화적 경찰문화의 이해		
	인권실천 방안 탐색	인권친화적 직무실천방안 토론		
	학교와 인권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해		
		청소년 노동 인권의 이해		
	인권실천 방안 탐색	인권가치가 존중되는 학교를 위한 액션플랜		
	인권리더십	인권리더십 실천 전략		
	군대와 인권	군인권의 이해		
	인권이슈/현황	군대 내 직장 갑질		
		인권과 지휘권의 행사		
		인권활동가가 생각하는 군인권교육		
		인권교육가가 들여다 본 군인권교육 실태		
		군인권교육 실제와 Q&A		

구분	교과군	교과목 명	유사내용	비고
		군대에 관한 Q&A		
		군인권교육 현황 Q&A		
	인권보장체계	군인권 증진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		
		국방부 인권정책 소개		
	인권실천 방안 탐색	군대와 인권(토론)		
		직무별 인권실천 훈련		
	「기업과 인권」	「기업과 인권」		
	인권이슈/현황	기업이 알아야할 인권		
		「기업과 인권」 및 국제적 동향		
		유엔의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 공유		
	인권실천 방안 탐색	인권경영 현장 우수사례		
		인권경영보고서 작성 지침		
		인권경영보고서 작성지침 해설		
		인권경영평가 가이드라인 해설		
		인권경영평가 가이드라인 작성 실습		
		기업인권 실사 소개		
		기업인권 실사 훈련		
		인권경영 매뉴얼 실천		
	노인과 인권	노인인권의 이해		
	인권이슈/현황	노인 인권 이슈		

구분	교과군	교과목 명	유사내용	비고
		돌봄과 인권		
		보건의료 이슈와 진단		
		건강권 이해: 국제인권조약과 헌법 관점에서		
		한국 사회 의료 구조와 인권보장		
		노인환자의 돌봄		
		노인환자의 인권이슈		
	노동과 인권	노동인권 이해와 실제		
	인권사례	노동인권 수업 사례		
	언론과 인권	언론과 인권		
	인권이슈/현황	인권보도상 수상 기자들과의 만남		
		언론인권 가이드라인 설명		
		권고사례		
	대학인권센터	인권기구의 역할과 의의를 바탕으로 대학인권센터 역할 모색		
	스포츠와 인권	스포츠 인권의 이해		
		스포츠 인권 확산방안		
		인권친화적 스포츠 현장 만들기		
	노숙인 인권	노숙인인권현안 이해		
노숙인 인권보호 사례 및 실천				
인권침해 사례 이해	분야별 인권침해 사례	지자체 인권침해·차별 사례 공유 및 토론		
		교육현장 인권침해 사례		

구분	교과군	교과목 명	유사내용	비고		
		학생인권 침해 사례 토론				
		노동관련 인권침해 사례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공유 및 토론	경찰 인권침해 사례 분석과 토론	경찰 인권침해 사례		
		국가기관 인권침해 사례공유 및 토론				
		학생인권 침해 사례 토론				
		교육현장 인권침해 사례				
		인권위 결정례로 보는 인권실태				
		결정례로 본 인권침해 및 차별				
		군관련 인권위 결정례 토론 및 발표	군관련 인권위 결정례 토론 및 해설			
		노인 요양시설 인권침해사례				
		노숙인 인권보호 사례 및 실천				
		지자체 아동인권보호 사례				
		스포츠 인권 및 스포츠 현장 침해 사례와 구제 절차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사례분석	사례연구 “대학 내 괴롭힘 사건”		
				사례연구 “성희롱·성폭력 사건”		
사례연구 “인권침해 사건”						
사례토론	인권교육이슈 발제					
	인권교육이슈 토의					
	지역 인권현안 대응					
	사회문제를 인권관점으로 바라보기					

구분	교과군	교과목 명	유사내용	비고
	선사례공유	현안문제와 사회운동 경험 나누기		
		연대를 위한 활동 나누기		
		인권교육활동가의 지역 현안 발표		
인권침해 조사활동	인권조사 및 구제	인권조사 업무의 이해		
		기본권 심사의 이해		
		기획조사 및 실태조사 원칙과 방법	인권조사의 기술(이론 및 실전)	
		인권상담 및 조사방법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		
	인권상담	인권상담의 이해		
		상담기법의 이해 및 실습		
		위원회 상담 및 결정례 알아보기		
		지자체 인권상담 유형과 사례 토론	인권상담사례	
		인권친화적 상담방안 토론		
		집단지성으로 설계하는 인권친화적 상담사례토론		
인권교육	인권교육 일반	인권교육의 이해		
		인권교육의 의미와 원칙	지자체 인권교육원칙과 방법(실습 및 토론)	
		인권강사란 누구인가		
		인권교육 기획과 준비		
		분야별 인권강의 활동소개		
		분야별 인권교육의 현안 및 대응		

구분	교과군	교과목 명	유사내용	비고
		인권교육 업무 워크숍		
	인권교육 교수법	인권교육 방법론		
		교육대상 분석 및 강의 기법	강의교수법	
		군인권교육 설계의 핵심		
		탐나는 인권교안 만들기(실습)	인권친화적 교안 작성	
		TED(참여자 강연회)		
		교안 발표 및 피드백	교안 발표 및 동료 피드백	
		인권교육활동가의 강의 역량 제고방안		
		모듬활동		
		열린토의		
		장병 핵심인권강의 특강(VOD)		
		부대 인권교육 노하우		
		인권친화적 원격교육의 방법과 실제		
		콘텐츠 활용법	분야관련 인권 콘텐츠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콘텐츠 활용법			

참고문헌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 구정화 외(2020). 초·중등 인권교육 내용체계 및 개정교육과정 적용방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2023). 2023 교육운영계획.
- 국가인권위원회(202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결과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2022).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21a).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 콘텐츠 FACT BOOK.
- 국가인권위원회(2021b). 인권교육원 설립 방향과 공간구성안. 인권교육원 설립추진위원회 보고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18).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 국가인권위원회(2004). 국가인권기구 안내서.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총괄과(2023.06.29. 보도자료). “군인권보호관 출범 1년, 진정사건 30% 증가 처리건수 74% 증가”.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운영과(2023). 2023년 인권교육 운영 기본계획(안).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운영과(2022). 2022년 인권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
- 국민권익위원회(2023).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보호 방안. 의안번호 제 2023-429호. 의결일: 2023. 5. 30.
- 김병주 외(2021). 학교 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은희 외(2022).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 김은희 외(2021). 인권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 김은희 외(2020).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 노석준 외(2016). 인권교육원 설립에 따른 교육체계 개발 연구용역.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 법원공무원교육원(2023). 2024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계획.
- 백미순 외(2016). 언론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 이명희 외(2022). 지역 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 이성택(2023). '인권교육원 운영로드맵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 인권교육원 로드맵 논의를 위한 간담회 발제 자료(비공식 자료).
- 하미승 외(2006). 인권교육원 설립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 한국국방연구원(2021). 군인권실태조사결과(2022. 군분야 위촉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자료집).
-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2013).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Northeast Asian School Systems: Resource Material.
- Feige, M., Günther, M. Hildebrand, B., et al.(2016). Materialien für die Bildungsarbeit mit Jugendlichen und Erwachsenen.Berlin : 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2018).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국가인권위원회 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2006).
- Philipp, S. & Starl, K. (Hrsg.)(2017). Focusing on Human Rights at Local and Regional Level. ETC Graz.

인터넷 자료

-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education/training/infographic-wphre.pdf>.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2005-현재), 이미지). 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training.assembly.go.kr:448/train/main/main.do>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training.assembly.go.kr:448/train/main/contents.do?menuNo=1700105/>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training.assembly.go.kr:448/train/main/contents.do?menuNo=1700123/>

-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최종검색일 : 2023.12.04.
<https://training.assembly.go.kr:448/train/main/contents.do?menuNo=1700116/>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training.assembly.go.kr:448/train/main/contents.do?menuNo=1700120/>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www.inklusion-als-menschenrecht.de/>(독일국가인권연구소 ‘인권으로서의 포용’
 사이버인권교육 사이트).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menschenrechtsschule.at/>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5058500004>(연합뉴스_경찰 “권한 남용 막자”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www.kird.re.kr/businessInformation/education/>(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홈페
 이지).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www.etc-graz.eu/aktivitaten/bildung/>
 (유럽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 및 연구센터 홈페이지).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rwi.lu.se/what-we-do/academic-activities/>
 (라울발렌베리연구소 홈페이지).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rwi.lu.se/hr-education-belar/>
 (라울발렌베리연구소 홈페이지). 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rwi.lu.se/human_rights_institutions/
 (라울발렌베리연구소 홈페이지).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www.humanrights.dk/our-work/human-rights-education/>
 (덴마크인권연구소).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equitas.org/>(에퀴타스 홈페이지).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equitas.org/learn/international-human-rights-training-program/#/>
 (에퀴타스 홈페이지).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demsnew.kigepe.or.kr/front/contents/view.act?pageCode=P01010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최종검색일 : 2023.12.04.
- <https://demsnew.kigepe.or.kr/front/contents/view.act?pageCode=P01020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최종검색일 : 2023.12.04.

<https://demsnew.kigepe.or.kr/front/contents/view.act?pageCode=P01030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최종검색일 : 2023.12.04.

<https://demsnew.kigepe.or.kr/front/contents/view.act?pageCode=P01040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최종검색일 : 2023.12.04.

<https://www.coe.int/en/web/help/courses/>
(유럽평의회 HELP홈페이지).최종검색일 : 2023.12.04.

16809e2a3d (coe.int)(HELP, 인권으로서 노동권 사이트).최종검색일 : 2023.12.04.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4389&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인권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최종검색일 : 2023.12.04.

인권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연구

인 쇄 일 2023년 12월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홈 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연구 기관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주식회사 에듀니티랩

표지디자인 양준영

ISBN : 979-11-7214-003-8 94370

ISBN : 979-11-7214-002-1 94370(전3권)

표지는 서로 다른 색깔의 끈을 엮어서 만든 전통 매듭끈 모양을 레퍼런스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 낸다는 취지를 담은 작품입니다.